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폐기요청 의견서 - 2
(국립대 공투위)
- 【참고자료 2】 교과부의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안) - 73
- 【참고자료 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135
(학장 임명제 및 대학교원 특별채용 등 규정)
- 【참고자료 4】 서울대학교 법인화 토론회 자료집 - 143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

【참고자료 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폐기요청 의견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폐기요청 의견서

2010. 10.

국립대법인과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대학생연합)

차 례

I. 드리는 글	1
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추진경과	4
I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주요내용	5
IV.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의 문제점	7
V. 우리의 요구	18
V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조항별 분석	19
V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안 비교표	38
VI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법안 전문	58
IX. 국립대공투위,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모음	65
X.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폐기 부결 청원서	71

I. 드리는 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말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회계법 도입을 천명한지 4개월여 만에 법안이 입법예고 되고 11월 말경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월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4월 16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국립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총액으로 출연하고(제4조), 재정운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제8조)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정부 출연금 등으로 세입으로 하는 교비회계를 두고(제10조),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 건축시설적립금, 장학적립금, 연구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적립할 수 있으며(제22조), 발전기금을 설립해 차입과 수익사업(제24조, 제26조, 제28조에서 제30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법안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 학생, 직원 단체로 구성된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국립대공투위)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로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며, 대학구성원들의 반발로 우선멈춤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사전단계이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또 다른 관치를 내재한 법이며, 외부자본 유치 등으로 대학을 상업화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안은 대학 구성원들이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축소한다고 지적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고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며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확정안에는 이 내용을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국립대학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또한 법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입법예고안 4조4항)도 빼버렸습니다. 대학이 재정확보의 자구책으로 제안했던 국유재산 사용료역시 교비회계가 아닌 국고회계에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재원확충의 수단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립대학은 현실적으로 학생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저렴한 등록금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등록금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의 자녀는 고등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안에는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제30조)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이 발전기금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즉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회계 문란으로 인한 안정성 저해로 심각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발전기금이 외부 전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사업을 발전기금이 계약 당사자로 나서 직접 운영하거나, BTO 방식의 대규모 복합 물 건설 등과 같은 사업뿐이어서 대학 구성원들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에만 존재하던 적립금 제도를 국립대에도 도입한 것(제22조)역시 등록금 인상요인입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것이 분명하며, 정부 출연금을 적립할 수 없는 이상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 될 것이다. 이는 등록금 폭등을 예고하고, 다시 적립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차입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이법은 졸속적인 법안추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제출된 법안 제안이유에는 분명히 `국립대학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기성회계를 통합하거나 폐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안제안이유와 법안내용이 다른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 대로라면 기성회계와 기성회

계 직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됩니다.

회계통합 부분은 법안 도입의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국고회계와 비 국고회계 이중 구조는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대학 법인화를 주장했던 학자들 역시 단골 메뉴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기성회계와 기성회계 직원을 존치시킨 채 법안을 추진했다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등록금 인상을 통한 국립대학 자체 운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법을 국회에 제출해 다루라는 것은 민의를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국립대 공투위는 국민을 기망하고 국립대학의 재정책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립대학을 진정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회계를 폐지하되 이를 정부가 보존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한 후 국고지원은 총액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이후 총장선출, 재정운영, 인사 및 조직 문제는 대학 구성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 체제를 보장하면 됩니다. 대학 운영에 대한 평가 역시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개입은 이들 문제를 도입한 이후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0.

국립대법인과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립대학교수외연협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국대학생연합)**

Ⅱ.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추진경과

-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 : '87.
-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입법예고 및 도입 유보 : '97.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황우여 의원) : '02.11.
- 국립대학 재정부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이주호 의원) : '05.5.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 '08.3.20.
 - “여건이 되는 대학 국립대법인화 추진(08.6), 그렇지 않은 대학회계통합 및 일원화 추진 (12.30)발표
- 교과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17대국회 처리 요청: '08.5.2 ~3.
-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재정회계법 논의: '08.5.13
 -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7대국회에서 사실 상 폐기
- 정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발표 : '08.5.28.
- 공문을 통해 시안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수렴 : '08.5.28. ~6.13.
- ‘국립대공투위’ 교과부 간담회(6회) 개최 : '08.5.~7월말.
 - 국립대법인화 추진중단, 안정적 재정지원, 교육정책 추진 시 대학구성원단체와 정례 협의 등 기본적인 전제와 국립대학발전방안을 협의 하고자 진행되었으나 안정적 재정 지원 방안과 법인화 중단 등에 대한 입장차로 협의가 중단됨.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공청회 개최 : '08.6.26.
- 공투위 교과부 차관 간담회 : '08.7.30.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추진계획 확정발표 : '08.9.24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안 입법예고 : '08.10.10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정부안 확정(국무회의 통과) : '08.11.18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정부안 국회 이송 : '08.11.21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 : '08.11.24
- 한나라당 김선동의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발의 : '08.12.26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 : '09. 1. 8.
- 2009. 2. 24일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국회 공청회를 실시하려하다가 23일 교과위 간사회의에서 잠정 보류하기로 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재정회계법 공청회 : '09. 4. 16.

Ⅲ.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주요내용

1. 국가의 지원(안 제4조)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국립대학에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과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교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국립대학에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를 두도록 하고,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하도록 함.

4. 예산의 편성 및 의결(안 제12조)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5.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안 제22조)

국립대학의 장이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건축시설적립금, 장학적립금, 연구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6. 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안 제23조)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7. 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가.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전기금은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계정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발전기금의 계정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도록 함.

8. 차입금 및 수익사업(안 제29조 및 제30조)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1> 교비회계 도입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의 변화

내용	현행 회계제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재정지원방식	품목별 재정지원	총액재정지원방식
회계성격	국고 : 일반회계, 기성회 : 비국고회계	대학자체 독립회계(교비회계)
회계연도	국고 : 1.1~12.31 기성회계:3.1~이듬해 2월말	3.1~이듬해 2월말 또는 대학이 선정한 기간
회계제도	정부회계와 기성회계로 2원화되어 회계와 재정성과간의 연계성 미흡	대학회계(교비회계)로 일원화: 회계운영과 대학활동 성과가 명확히 연계됨
회계방식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통합범위	일반회계, 기성회비회계, 산협단회계 등 각각의 회계단위로 분리 수익사업회계 없음	① 통합회계 ② 발전기금을 법인화하여 별도회계로 처리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비학위과정, 어학원, 특허권 등의 수입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전액 국고에 귀속	사용료는 국고귀속, 수수료 수입은 교비회계 사용 가능
자체 재정확보	자체 재정확보 수단이 거의 없음	수익사업의 전개,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수입 등을 통해 자체적인 재정 확보가능
재산활용	국유재산법에 의해 제약됨	재산소유권 확보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예산편성 및 결산권	국고 : 국회 기성회계 : 기성회이사회	재정위원회
예산집행잔액	국고 : 국가반납, 기성회비 : 이월사용	전부를 이월사용가능
발전기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적용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예결산 공개	대학신문에 공개	학교홈페이지, 대학신문에 공개
외부회계감사	없음	공인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의 감사

IV.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문제점

가. 교육재정의 일반적 조건

○ 그동안 대학 교육정책 및 대학재정 관련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재정회계제도의 준거로 충족성, 형평성, 효율성, 자율성, 안정성, 책무성을 들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회계법의 적합성을 확인하려면 이러한 제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

○ 먼저 충족성 측면에서 볼 때 재정회계법은 상당한 맹점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다. 이 말은 역으로 ‘재정지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대학구성원들이 재정지원의 문제를 말할 때 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이를 위해 물가상승률과 국가재정규모 증가율을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내용조차 삭제되었고 강제력을 가지는 ‘지원한다’도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화 되었다. 이는 결국 재정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다. 과거 황우여의원이 제기한 국립대학 재정운영특별법의 경우는 내국 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당시에도 국립대발전을 지원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형평성 측면에서는 기본교육경비보장제도(foundation plan)를 위한 산식(formular)이 제시되어 모든 국립대학들이 정부가 상정하는 재정지원의 최소경비가 나와야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이라는 주먹구구 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한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역사나 여건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조차 없어 정부의 재정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불충분한 재원은 각 대학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이 자명 한 바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예상되어 학생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 효율성 측면에서는 총액지원은 원칙으로 배분하고 국비와 기성회계 등의 통합회계로 중복편성 등이 해소되면서 일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한계가 있어 충분히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액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총액예산의 배분은 세입예산정도가 최소 경비가 될 것이고 시설비등은 사실상 특정한 목적형경비로 배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체제가 1년 단위가 전부인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장·단기 발전계획이나 재정운영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한정된 재원으로 전략적인 투자는 힘들다고 볼수 있다.

○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조금 확대된다. 하지만 그 수준이 기존의 기성회비에서 수업료와 대학 내의 자체수입을 합한 금액이 전부이다. 각 대학이 자체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측면에서 자율성은 확대되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예산배분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있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은 집행금액의 규모를 제외하면 사실상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안정성 측면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할 것 인지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총액은 목적성 경비로 오로지 정부관단에 의해 지원규모와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며 만약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 국립대의 경우는 등록금 인상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려 할 것이다.

○ 책무성은 상당히 강화된다. 통합회계로 대학 재정 전체에 대한 분명한 세입과 세출결산이 이뤄지고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학은 수익사업 수익금, 연구비, 발전기금 등 기타세입도 자체수입으로 포함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하게 회계처리 되어 오던 국비회계, 소비조합회계, 발전기금 회계 등이 하나의 공통적인 회계 시스템으로 묶어짐에 따라 대학전체에 대한 종합재무정보가 제공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이해가능한 회계보고서가 공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별 프로그램별 성과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대학의 책무성은 한층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재정회계법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자율성과 효율성은 조금 향상되고 책무성은 상당히 강화되는 수준이며 안정성이나 충족성, 형평성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나. 의견수렴내용과 다른 법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약 3개월여 기간 동안 국립대학 구성원들과 5차례 걸친 간담회를 비롯, 병원관계자 간담회, 예산담당자 설명회, 공청회 1회 등을 진행했다. 대부분 나온 의견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우려와 교과부의 통제 대학자치의 침해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일부는 입법예고에까지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견 수렴된 내용은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의견수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을 들러리화 했다.

○ 대학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을 임의 규정화 한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까지 없애버려 재정지원 축소를 현실화 했다.

특히, 이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05년 국회 최순영의원이 실시한 각 대학의 의견 수렴에서도 85%의 대학에서 반대 또는 시기상조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대학구성원들 역시 16대와 17대 국회에 이 법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 또한 이법은 이미 2005년 5월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재정운영특별법으로

외화 된 바 있어, 동년 11월 17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문제점을 제시한바 있는데 1) 재정위원회에 대학의 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 2) 재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 3) 재정위원회가 대학발전 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에 대한 심의의 의미, 4) 대학회계제도의 운용상 국회와의 관계문제, 그리고 기타 시설 및 물품관리 등을 거론하면서 5) 최종적으로 관련단체 대학구성원 등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법률의 제정은 단순히 행정의 편의주의로 접근해 만들 것이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법의 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국립대학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안 발표 후 석 달여 만에 법이 입법추진이 되었고 더욱이 의견수렴내용조차 삭제한 채 안을 확정했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법이다.

다. 구체적 문제점 검토

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법인화 징검다리법이다.

○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이 국립대 법인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회계법안이 07년 5월 정부가 발의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재정회계법 속의 재정위원회를 법인의 이사회로만 바꾸면 대부분의 내용이 국립대학의 법인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법인화의 핵심이 재정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립대 구성원들의 재정회계법은 법인화 법이다 라는 인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구분	국립대학 법인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안의 목적 	<p>·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학문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입법취지와 법안내용이 동떨어진 기형적인 법이다.

○ 11.18일 확정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안이유에는 “...국립대학 재정·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비회계를 두도록...” 이라고 적시했다.

○ 이처럼 회계의 통합이 재정회계법 제정의 사실상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고회계와 기성회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문구가 법안 어디에도 적시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때문에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교비회계로 통합하기로 한 기성회계는 여전히 존치되는 것으로 봐야하며, 기성회계로 운영되는 기성회 직원역시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기성회계가 존치하지 않는다면 기성회직원의 신분보장은 없는 것임)

3.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법이다.

○ 재정회계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현실화 한 점이다. 08. 5월 재정회계법 시안 발표 후 국립대 구성원들은 이 법이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를 인정해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고 법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확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고만 적시함으로써 우려를 현실화 했다. 이는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5월 시안)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10월 입법예고안)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가상승률, 국가재정 규모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11월 정부확정안)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총액 또는 목적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법예고안 4조3항)도 삭제해 지자체의 국립대학 지원근거조차 없애 버렸다. 이는 지자체와 국립대학의 연계방안을 없애버린 것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없애버린 것에 다름없다.

○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역대 추진된 여타의 법안과 비교해 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핵심이 재정지원의 안정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 하기는 커녕 노골적으로 재정축소를 천명한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에 정면도전한 것에 다름없다.

< 재정지원 관련 역대 법안 비교>

구분	적용회계	국고지원
국립대학특별회계법 '97 교육부(안)	•국립대학특별회계 •회계기간 미규정	•인건비와 이에 수반되는 법정부담금 및 강사료, 시설비(전전년도 자체수입 결산액의 1/2), 자체수입으로 총당 어려운 대학운영비부족액, 대규모 시설비, 장기차입금상환액, 장학금 등 특별 총당 금액
국립대학 운영에관한 특별법(안)	'02황우여 의원(안) '03 교육부시안	•대학회계 •회계기간은 당해연도 3월 1일 ~다음해 2월 말일
		•인건비, 시간강사료, 내국세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운영비, 시설비, 그 외 교육연구 발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 •재정운영 경직과 투자제한 근거 작용 우려 이유로 관련 규정 삭제

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05.5. 이주호의원(안))		•구체적 규정은 없고, 국가는 국립대학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국립대의 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음
국립대학법인법 '05. 7. 이주호의원(안))		•인건비,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등록학생수 해당 금액, 내국세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운영비, 시설비, 그 외 교육연구 발전 위한 특정 목적의 지원비
국립대학운영체제 개선에관한특별법 '05 교육부(안))	•비법인의 경우, 대학 회계 설치 •법인의 경우, 법인회계 설치 •회계기간은 둘 다 3월1일~2월말일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연도의 국고지원금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매년 지원 (조항 신설 논의) •비법인의 경우, 인건비, 시간강사료, 운영비, 시설비 그 외 교육연구 발전 위해 특정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국고지원액은 총액으로 예산에 반영, 배분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07 정부(안))	•법인회계 설치회계기간은 3월 1일 ~ 2월 말일	•국가는 국립대학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 •기초학문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수립·시행 •학교운영 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재정지원정책에 반영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07	•법인회계설치 회계기간은 3월 1일~ 2월 말일	•정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춤 •경영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재정지원정책에 반영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08.11	•교비회계설치 기간은 3월 1일~ 2월 말일	•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당초시안에는 물가상승률과 국가재정증가율 반영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함) • 재정지원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 초기 출연금은 법시행 이전 국고납부 세입을 고려

○ 법안의 또 다른 문제는 재정지원을 축소 한 것도 모자라 대학이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조차 막아버렸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국유재산 사용료의 국고 귀속이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대학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하지만 이를 교비로 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활노력조차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린 우를 범하고 있다.

<국유재산 사용료 관련 법안 변경내용>

구분	10/10일 입법예고안	11/18일확정안
▪ 사용료 자체회계편입관련	<p>· 국유재산 사용료도 교비회계세입에 편입 대학의 재정확충유인.</p> <p>제11조 (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p> <p>②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5조 생략</p> <p>6. 사용료, 수수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p> <p>7.... 이하 생략</p>	<p>※국유재산 사용료 국고로 납입토록 하는 것으로 해 교비회계에서 삭제 조치함</p> <p>제11조 (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p> <p>②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5조 생략</p> <p>6. 수수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p> <p>7.... 이하 생략</p>

구분	10/10일 입법예고안	11/18일확정안
	③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④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④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등록금 폭탄법이다.

○ 법안에서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가능토록 해 부족한 재정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라는 의도로 보이나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는 수익을 창출이 어려워 결국 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2004년 법인화를 단행한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전후해 지방 소규모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등록금 인상이 있었으며 또한 법인화 논의시마다 국립대학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명약관화하다.

<국립대 연도별 등록금 인상현황>

연도	재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학부생기준)						
	수업료		기성회비		등록금총액		기성회비 비율(%) (기성회비/등록금총액)
	금액	인상율	금액	인상율	금액	인상율	
2000년	504	-	1,689	-	2,193	-	77.0%
2001년	529	4.9%	1,772	4.9%	2,300	4.9%	77.0%
2002년	557	5.4%	1,914	8.0%	2,471	7.4%	77.5%
2003년	585	5.0%	2,069	8.1%	2,654	7.4%	78.0%
2004년	613	4.7%	2,290	10.7%	2,903	9.4%	78.9%
2005년	639	4.2%	2,476	8.1%	3,115	7.3%	79.5%
2006년	683	7.0%	2,744	10.8%	3,426	10.0%	80.1%
2007년	718	5.0%	3,057	11.4%	3,774	10.2%	81.0%
2008년	757	4.0%	3,385	9.8%	4,142	8.7%	81.7%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고등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저 등록금을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5.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2,400여명 기성회직원들의 정리해고 법이다.

○ 2008년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입법예고안에 적시되었던 부칙3조(기성회계 폐지)와 본문 36조 (연구원등의 채용) 조항을 삭제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당장 기성회계 소속 2,400여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안정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굳이 법령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교육부 훈령으로 고용승계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으로조차 강제하지 못한 부분을 훈령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기성회직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훈령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는 또다시 기성회 직원들이 명칭만 바뀐 비법정 인원으로 분류되어 이후 대학구조조정의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기성회직 고용승계 관련>

구분	10/10일 입법예고안	11/18일확정안
<p>▪기성회통합및 기성회직 고용승계</p>	<p>· 기성회계를 폐지(수업료에 통합)하고 기성회회계 임용자는 교비회계직원으로 승계.</p> <p>제3조(기성회회계의 폐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성회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p> <p>② 이 법 시행 전의 2010년 2월 말일 기준의 기성회회계 결산잔액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귀속한다.</p> <p>③ 종전의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교비회계 등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p> <p>제36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발전기금은 발전기금회계를 재원으로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과 직원 등(이하 “연구원 등” 이라 한다) 필요한 자를 채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대표자가 연구원 등의 고용주가 된다.</p> <p>③ 국립대학의 장 및 발전기금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당해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기성회계관련 문구 법안 어디에도 없음. 기성회계가 사실상 존치하는 상황</p> <p>기성회직원 고용승계조항(부칙3조) 삭제 및 교비회계 직원사용규정(법안36조)삭제해. 기성회계 직원들의 신분불안 야기</p>

<기성회직 신분관련 역대 법안 비교>

구 분	기성회직 신분관련 내용	
국립대학특별회계법 ' 97 교육부(안)	•기성회계 직원 고용승계 미규정 * 국립대학 사무보조원에 관한 법률로 기성회직 고용규정	
국립대학 운영에관한 특별법(안)	' 02 황우여의원(안)	•기성회직원 대학회계직원 승계 및 보 수퇴직금 지급 규정
	' 03 교육부시안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문구 삭제, 고용승계만 명시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 특별법 ' 05. 5. 이주호의원(안)	•기성회직원 대학회 계직원 승계 및 보 수퇴직금 지급 규정	
국립대학법인법 ' 05. 7. 이주호의원(안)	•교직원 신분 법인 소속 전환 •기성회 직원 대학회계 직원 승계 및 보수 퇴 직금 지급 규정	
국립대학운영체제개선에관한특별법 ' 05 교육부(안)	•교직원신분 법인 소속 전환(법인) •부칙에 기성회직원 대학회계 직원으로 승계 규정(비법인)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07 정부(안)	•교직원 신분 법인 소속 전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단, 신규가입으로 함.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 08. 11	•기성회직 명문규정 없음.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교비회계직원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으나 삭제됨.	

6.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아닌 대학 통제법이다.

○ 대학에게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준다고 밝힌 것 역시 허울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총액으로 예산을 지원해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예산편성을 가진 총장의 예산 편성범위는 실제 기성회비+수업료에 불과하다. 이는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출연금은 정부가 예산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연금은 09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평가와 그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사실상 박탈당할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획일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에 따라 개별대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관련 자율성 침해>

구분	10/10일 입법예고안	11/18일확정안
예산편성권 대학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대학의 장이 전체 총액에 대해 예산편성가능토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 부여. 제13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좌동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목적에 따라 편성토록 해 예산편성의 자율성 침해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7. 학내 갈등과 논란만 부추기는 재정위원회

○ 대학운영의 투명성제고와 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보장이라는 취지의 재정위원회는 도입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과 일반직위원의 비율, 교원·직원·재학생의 비율, 학내자와 학외자의 비율위원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의 대학평의위원회(교수회, 교수협의회 포함)의 기능과 충돌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추천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선임한다.
1. 해당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5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첫째, 위원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의 비율, 교원, 직원, 재학생의 비율, 학내자와 학외자의 비율 등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으면 학내를 갈등의 나락으로 내몰 수 있다고 수차 경고했지만 반영되지 못하였다.

○ 둘째, 다른 법률과의 상충되는 지점이다. 당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의 대학평의위원회(교수회, 교수협의회 포함)의 기능과 충돌하고 있다. 대학평의위원회나 이미 국립대학 대다수 대학에서 학칙기구화 된 교수회의 기능 중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이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이들 조직의 기능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 셋째, 총장의 당연직 위원 참여 부분도 논란거리이다. 당초 시안에서 총장의 당연직 위원참가가 집행과 심의의 분리를 위반했다고 하자 수정안에서는 개별대학에 재정회계규정에 맡겨버렸다. 문제는 재정회계규정의 제정권자가 총장임을 감안할 때 총장의 당연직 위원 참가는 기정사실이다.

○ 정부 최종 안은 법률 형식상 오류를 범하고 있음. 제5항에서는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나서, 제6항에서는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5항이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고 제6항을 기준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구분해도 문제는 계속된다. 즉,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주면서 입학금 및 수업료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권만 주는 모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액수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학 예·결산을 확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 또한 국립대학에 '시안'에서는 없었던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새롭게 신설해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학간 재정 규모 차이가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시안'에서 재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했던 차입금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총장 권한을 대폭 확대한 부분 역시 재정위원회의 설치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결국 재정위원회가 위의 논란거리와 문제들을 재정리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를 가장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재정운영 자율성' 이 아니라 '교장의 자율성' 이라는 지적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8. 회계 문란의 복마전이 될 발전기금

○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법인으로 발전기금을 두는 것이다.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설치하고 이 발전기금으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기금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발전기금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될 것이다.

○ 더욱이 발전기금 재원의 하나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들고 있다. 따라서 발전기금 모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총장이 등장할 경우 교비회계나 산학 협력단 회계에서 발전기금회계로 진출토록 해 재산 불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법안' 제10조 제3항은 교비회계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고 규정해 해석하기에 따라 발전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해 교비회계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

9. 중·소 후발 국립대학 퇴출법이자 지역경제 파탄법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국립대학 회계는 정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니라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는 자체회계가 된다. 법안 17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중 이용과 이체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임. 재정회계법이 도입되면 거점 국립대학은 그나마 살아남지만 지역에 있는 군소 국립대학의 경우는 살아남기 힘들어 주변대학과 통폐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어 자체재원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들 대학의 경우 대학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점대학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학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30%라고 알려지고 있다. 중·소 국립대학은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만약 이런 대학들이 퇴출되거나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V. 우리의 요구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의 사전포석이자,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축소해 등록금 폭등을 양산하는 법입니다. 또한, 기성회 직원들의 구조조정법이며, 중소국립대학의 퇴출과 대학의 회계부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바 18대 국회는 법 제정을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 국립대 법인화든지 재정회계법이든지 가장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 정부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추진 이유를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강화’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법을 도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립대학 예산을 총액예산제로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면 될 것입니다. 운영역시 ‘대학평의회’ 등을 통해 감시감독 하고 이후 관할청 감사를 통해 점검해간다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회계가 분리되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역시 대학 구성원들의 학사 행정참여가 제도화 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는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논리를 전면에 내세운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이전에 고등교육 재정의 GDP 대비 1.5%를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 해마다 등록금의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융자를 말하지만 고리의 학자금은 오히려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더 시급한 과제는 등록금 부담 경감 법 모색하는 것입니다.

- 국립대 구성원들이 바라는 법은 서울대와 국립대를 하나로 하는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과 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육성법”,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특별법”, 대학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을 제·개정 하는 것입니다.

V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조항별 분석

제1조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 연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토의견

○ 총칙의 목적은 법 제정의 의도와 방향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음. 때문에 제1조 목적에 나타난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는 근본적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기 보다는 현재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높이기 위함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음.

○ 대학 구성원들이 이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나온 법안의 목적은 결국 재정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음. 때문에 이러한 구성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에 '국립대학 재정확보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라는 형태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건의했으나 목살된 채 정부안이 확정됨.

○ 더욱이 이 법은 07년 6월 발의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상 법인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음.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 한다 이하 "국립대학"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검토의견

○ 국립뿐 아니라 적용할 경우 공립까지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나 공립은 배제했음. 교과부는 공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

□ 검토의견:생략

제4조 국가의 지원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대학에 총액으로 출연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가장 우려했던 재정지원 축소를 확인시켜준 조항임.
- 지난 5월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시안으로 회귀함.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재정축소 우려를 문제제기하자 6.26 공청회 이후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정적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변해 왔음.
- 수정안은 물가인상률(아래표 참조, 10년 평균 3.3%)과 국가재정규모 증가율(아래표참조, 10년평균 7.3%)이 현상유지나 실효성 없음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진일보한 내용임은 부인 할수 없음. 적어도 이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

※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고등교육예산, 물가인상률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가율
° 정부예산	766,395	777,376	883,024	939,371	1,025,285	1,138,989	1,204,776	1,269,918	1,343,704	1,448,076	1,565,177	7.4
° 교육예산	181,710	174,861	179,030	197,256	215,984	225,436	249,193	265,823	279,820	291,273	310,447	5.5
-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3,006	147,588	151,258	168,061	184,559	191,479	213,544	228,755	240,213	250,234	267,649	5.8
- 고등교육	25,089	23,132	24,112	25,477	27,387	29,943	31,482	32,644	35,611	36,649	38,193	4.3
- 평생직업교육	3,010	3,163	2,783	2,813	3,198	3,387	3,498	3,714	3,271	3,485	3,513	1.6
- 교육일반	605	979	877	905	840	627	669	710	725	905	1,092	6.1
* 물가인상률	4.4	7.5	0.8	2.3	4.1	2.7	3.6	3.6	2.8	2.2	2.5	3.3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년

- 하지만 최종안은 다시 시안으로 회귀하였음. 수정안이었던 ‘물가상승률과 국가재정규모 증가율’은 날아가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역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는 결로 바뀌었음. 이는 재정지원을 충분히 할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마저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임.
- 더 큰 문제는 이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09년 국립대학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만 전년대비 3.1% 인상되었을 뿐 기본경비는 2,269억원에서 2,190억원으로 3.5% 삭감되었으며, 시설확충비 역시 3,29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무려 11.2% 정도 삭감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음.
- 또한, 시안과 수정안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 국립대학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립대학에 대하여 총액으로 또는 목적을 정하여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고 했던 4조 3항은 확정안에서는 삭제되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4조3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던 내용이지만 삭제되었음. 사실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큰 실효성은 없음. 이미 교육기본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지원근거가 있음. 실제 07년도에도 약

3,200억원 정도가 지자체에서 국립대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문제는 실효성이었음. 08년 2월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상황을 보면 평균 52.9%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 왔으며, 지자체 지원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오히려 법인화 법에서처럼 지자체 공유재산의 양여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제5조 국립대학의 의무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정안 5조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과 6조 재정과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을 합쳐놓은 내용임.
- 당초 시안에서는 ‘이행상황 평가 및 재정지원 반영’으로 나타났다가 대학통제기제라고 문제제기를 하자 이 수정안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으로 갔다가 확정안에서 위내용으로 된 것임. 국립대학의 의무라고 한 것은 국가기간의 통제를 더 명확히 한 것이라 보여 짐.
- 이미 지적했지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09년부터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위내용은 이를 의무라고 표현한 것임. ‘국가는 매년 국가 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재정지원에 반영’토록 한다는 국가 재정법 7,8조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 등의 평가를 감안한 내용으로 보여 짐.
-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국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제 2조에 해당하는 모든 대학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행재정 지원 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해 본다면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의 의무로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임.

※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이하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7.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제58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감사원은 제60조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보고서 및 기금결산검사보고서를 송부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국회에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 재정·회계기준

제6조(재정·회계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하 “재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 당초 시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수정안부터 부령으로 내렸음. 재정회계에 관한 통제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임.

제7조 재정·회계 규정

제7조(재정·회계규정)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검토의견

○ 당초 시안에서는 규칙으로 했다가 수정안부터 규정으로 바뀌었음. 확정안에서 변화는 국립대학의 장에게 권한을 훨씬 더 준 것임. 수정안에서는 제정안 역시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확정안에서는 ‘제정안’을 삭제했음. 최초 재정위원회의 선임권한이 총장에게 있고 규정까지 제정권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총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제8조 재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추천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선임한다.

1. 해당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5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검토의견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도입취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시안에서 확정안까지 논란거리는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음.
- 우선 위원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논란 거리임.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의 비율, 교원, 직원, 재학생의 비율, 학내자와 학외자의 비율 등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으면 학내를 갈등의 나락으로 내몰 수 있다고 수차 경고했지만 반영되지 못하였음.
- 둘째는 다른 법률과의 상충되는 지점임. 당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의 대학평의회(교수회, 교수협의회 포함)의 기능과 충돌하고 있음. 대학평의회나 이미 국립대학 대다수 대학에서 학칙기구화된 교수회의 기능 중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이 존치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재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이들 조직의 기능과 충돌이 발생하게 됨.
- 셋째는 총장의 당연직 위원 참여 부분임. 당초 시안에서 총장의 당연직 위원참가가 집행과 심의의 분리를 위반했다고 하자 수정안에서는 개별대학에 재정회계규정에 맡겨버림. 문제는 재정회계규정의 제정권자가 총장임을 감안할 때 총장의 당연직위원참가는 기성사실화 된다는 점임.
- 확정안은 법률 형식상 오류를 범하고 있음. 제5항에서는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나서, 제6항에서는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5항이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고 제6항을 기준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구분해도 문제는 계속됨. 즉,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주면서 입학금 및 수업료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권만 주는 모

순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입학금 및 수업료 액수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학 예·결산을 확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임.

○ 또한 국립대학에 '시안'에서는 없었던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새롭게 신설해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립대학 간 재정 규모 차이가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됨.

○ '시안'에서 재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했던 차입금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총장 권한을 대폭 확대한 부분 역시 재정위원회의 설치취지를 무색케 함.

○ 결국 재정위원회가 위의 논란거리와 문제들을 재정리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를 가장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실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아니라 '교장의 자율성'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함.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검토의견 : 생략

※참고 국가공무원법 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8]

제11조 교비회계

제10조(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수수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
7. 이월금
8.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9. 이자 수입
10. 기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수입

③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④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당초 이 조항에서는 3장 “대학재정회계”로 분류가 되었으나 수정안에는 “교비회계”로 장이 바뀌었음. 또한, 수정안에는 시안에 있던 회계의 구분조항을 삭제해 △교비회계, △ 병원회계(치과 병원회계), △ 소비조합회계 △발전기금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이 별도 법률로 남아 있음. 이 부분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향후 시행령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모법에서 언급이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병원회계는 이미 법인화되어 독립회계의 양상을 띠고 있어 대학과 전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소비조합회계는 사실상 대학구성원들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다면 후생 복지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또한 대학당국의 요구에 따라 교비회계 세입으로 잡기로 했던 국유재산 사용료는 다시 국고로 납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국유재산 사용료는 대학의 부족재원을 확충하는 유인책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자체수입으로 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제11조 수입의 세입 편입후 사용

제11조(수입의 세입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입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의견 : 생략

제1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이 조항을 두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자율로 보임. 수정안까지는 일정 부분 자율성을 보장하는 듯 했으나 확정안에서 1항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예산 편성범위를 제안하고 있음. 이는 시안으로 다시 회귀한 것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음.

○ 더욱이 제4조 2항은 예산편성 계정과목이자 범주일 뿐 국립대학의 지원목적이 될 수 없음. 국립대학의 지원 목적은 제4조 1항이 규정한 ‘국립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향상’이라고 볼 수 있음

때문에 출연금 편성도 이에 근거해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경상적 경비** :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택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관서업무비),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기획예산처, 200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2007, 29쪽)

제13조 **예비비**

제13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토의견 : 생략

제14조 **추가경정예산**

제14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검토의견 : 생략

제15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1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 검토의견 : 생략

제1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검토의견 : 생략

제17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제17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의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용어정리>

※ 예산 전용(豫算 轉用) : 국가재정법 제46조 :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간 융통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범위를 정해 각 세항 또는 목 금액은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음.

※ 예산 이용(豫算 移用) : 국가재정법 제47조 : 예산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 관, 항 간에 입법과목 간 융통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예산 이체(豫算 移替) : 국가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은 지나치게 엄격한 정부 예산의 단점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당초 시안에는 이용·이체·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자 일정부분 시정하여 이용과 이체 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음.

○ 하지만, 전용은 재정위원회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장의 예산 편법 운용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높음. 때문에 이를 매우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이 높음. 실제 사립대학 예산운용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사립대학 회계규칙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3조 1항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 학교회계규칙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관·항 사이에 이용이 가능'하고 '인건비·시

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 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용 역시 매우 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음

○ 그리고 이용과 이체가 교비회계에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수 있음. 재정회계법이 시행되면 국립대학회계는 정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니라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는 자체회계임. 때문에 이용과 이체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적시해놓은 것은 이체의 경우 국립대학 통폐합을 활성화 시키는 법적근거로 활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

제18조 **세출 예산의 이월**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 중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해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해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검토의견 : 생략

제19조 **결산**

제19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없음

제20조 **재무보고서의 작성**

제20조(재무보고서의 작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정·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는 것임. 당초 시안에는 종합재무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변경됨. 문제는 국립대학 회계는 정부회계 중심이 아니라 대학의 자체회계로 정리되고 있는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정부회계 기준에 맞추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음.

○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치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왔으면서도 정작 회계처리를 정부회계기준에 맞춘다는 것을 이 법의 취지자체가 무색함.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회계의 투명성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으려면 공인회계사의 추천권을 대학구성원이나 재정위원회가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제21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1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검토의견 : 생략

제22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2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시설적립금
2. 장학적립금
3. 연구적립금
4. 퇴직적립금
5. 그 밖에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적립금

② 적립금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당초 시안에는 없었으나 수정안에서부터 조항이 삽입됨. 이 규정으로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도 적립금을 두는 것이 가능하게 됨. 문제는 국립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은 적립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는 것임.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규모를 떠나 경쟁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고, 정부 출연금을 적립할 수 없는 이상 학생 등록금이 주재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는 등록금 폭등을 예고하고, 다시 적립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

○ 특히 적립금 종류 가운데 '건축시설 적립금'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적립 규모에 따라 정부 예산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 재산이 되는(법안 제33조 '교비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한다') 국립대학 건축시설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확충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아울러 사립대학은 그 동안 적립금을 예금·적금 등에만 예치(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920호(2007.12.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하도록 했다가 2007

년 12월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음.

○ 그러나 국립대학은 이 조항에 따라 은행, 증권, 금융 파생상품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게 됨. 그렇지만 근래 서울대학이 발전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던 것처럼 나머지 대학들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적립금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참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3조 예산 결산의 공개 등

제23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세출내역을 재정위원회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 예결산 및 재무보고서의 공시는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방향임. 이미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해 공시를 하고 있음. (사립대학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시해야 하고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공시(사립학교법 제 31조 제1항 및 시행령 14조 1항)

○ '법안'은 결산(재무보고서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하여 사립대학과 기간이 같도록 했음. 그러나 예산은 재정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즉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안을 알 수 있는 사립대학과 달리 국립대학은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후에나 예산안을 알게 될 수 있음.

제24조 발전기금의 설치

제24조(발전기금의 설치) ①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발전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발전기금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한다.

⑦ 국립대학의 장은 교직원 및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그동안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발전기금회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시킨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하지만 발전기금회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 중 서울대학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법안의 상당조항을 할애해 세부사항까지 구성한 것은 향후 수익사업 및 투자 등 대학 재정운용의 상당 부분이 발전기금회계에서 집행될 것을 염두 해 둔 것이라 판단됨.

○ 제 7항에 교직원 및 연구원등으로 발전기금 사무를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예고안' 제36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조항이 살아있다('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됨)는 전제하에 계속 유지시킨 조항이 아닌지 의문이 듦.

그렇지만 이러한 의문과 별개로 유지된 조항이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음. 발전기금은 무엇보다 대학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데, 대학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대학 교직원 및 연구원에게 발전기금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치임. 아울러 이들의 인건비가 교비회계에서 지급된다면 이 또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발전기금회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사실상 대학재정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도 사실상 배제되어 있어 논란이 됨. 물론 재정위원회의 권한 중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전기금회계는 독립법인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임. 더욱이 총장이 발전기금법인을 대표한다고 볼 때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어 문제가 됨.

○ 더욱이 재정부분을 통괄하고 있는 재정위원회조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 학교발전기금은 별도의 법인 이사회에서 관장하고, 총장이 발전기금을 대표할 수도 있음.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것과 대비됨(초·중·등교육법 제33조).

제25조 정관

제25조(정관) 발전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생략

제26조 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

제26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 발전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6. 발전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
- ② 발전기금의 용도는 그 목적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로 한다.
- 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계정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계정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발전기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 발전기금은 ‘대학의 장·중·단기적 발전계획을 추진하거나 장학기금 등의 일반적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때문에 이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발전기금 회계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 등을 시의적절하게 대학에 진출하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발전기금회계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학 재정운용의 모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1항 3호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학의 모든 회계에서 발전기금 회계로 진출이 가능토록 해 회계간의 돌려막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혹여 수익사업이 실패할 경우 엄청난 재정손실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수적임.

제27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제27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발전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생략

제28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2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발전기금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전기금의 계정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기부자에 대하여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당초 수정안에서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일정수준 이상의 기부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가 확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함. 이 조항에 대한 우려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부금 입학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현행 사립학교법은 "기본재산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 26조 2항)

제29조 차입금

제29조(차입금) ①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전기금의 차입을 승인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검토의견 :

○ 차입금을 쓴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국립대학의 재정부족이 전제된 상황임. 국립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차입을 할 경우 국고부담을 수반하기 보다는 발전기금 회계 등을 통해 처리하고자 할 것임.

○ 대학 교육연구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입금을 도입할 수는 있음. 문제는 상환에 대한 부분임. 발전기금에서 상환 할 것이라고 하지만, 발전기금의 수익이 적을 경우 결국 상환에 쓸수 있는 자금은 등록금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가의 자산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불리게 되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

○ 더욱이 초기 시안에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했으나 확정안 이를 삭제함. 심의를 거친다하더라도 총장이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사업이 무리하다고 하더라도 재정위원회가 이를 막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에 대한 전권을 총장에게 준 것에 다름 아님.

제30조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 ① 발전기금은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 검토의견

- 사립대학교와는 달리 국립대학의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익용 자산이 없는 상황임. 이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교비회계나, 산학협력단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받아 하는 방법밖에 없음.
-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계분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며, 수익사업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임. 이 때문에 국립대학의 수익사업은 초기 자본금이 드는 방법보다는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임. 기숙사, 식당 등을 위탁하거나 민가투자방식인 BTO등을 활용할 것임. 이렇게 되면 대학은 상업화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제31조 민법의 준용

제31조(「민법」의 준용) 발전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검토의견 : 생략

제32조 회계간 전입·전출

제32조(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이 조항을 근거로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는 자유로이 자금을 이동할 수 있음. 하지만 회계 간 전입·전출은 필연적으로 회계문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
-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만약 이법으로 회계간의 전·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사립대학교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임.
- 더욱이 이 조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됨. 동법 제 31조 2항은 ‘대학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 설립당시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하여 설립당시에 한해서만 교비회계에서 전출을 허용하고 있음.

제33조 재산관리

제33조(재산관리) ①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시설과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한다.

②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등 재산의 사용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본다.

□ 검토의견 : 생략

제34조 수업료 등

제34조(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학생의 부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수업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 수업료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또는 국립대학법인화법 도입 이후 가장 민감하게 대두될 문제임. 그런데도 총장이 이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학내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물론 재정위원회 심의 규정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심의'일 뿐 총장이 밀어 붙일 경우 재정위원회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더군다나 '법안' 제8조 제5항 제2호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심의 사항으로 규정했으나, 예산 및 결산은 심의·의결토록 하여 이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물론 '법안' 제8조 제6항에 '국립대 총장은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 문구일 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임.

제35조 연구경비 등의 지급

제35조(연구경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의 재원으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이 조항은 기존 기성회비에서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보존해 주겠다는 것임.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기성회비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한 각종 수당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견제 장치는 필요함.

○ 하지만, 이 문제는 2001년 감사원 감사에서 '기성회비의 용도의 사용'이라는 지적사항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의 방만함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단초가 된 부분인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은 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내용임.

○ 아울러 '공청회 시안' 이후부터 '입법예고안'(2008년 10월 10일)까지 연구경비(연구보조비)는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 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에서는 발전기금회계를 삭제해 '연구(활동) 발전'이라는 발전기금 당초 취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교비회계 부담 가중을 불러

올 수 있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생략

부칙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회계연도 구분의 특례)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 검토의견 : 생략

부칙 제3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전기금(이하 “중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으로 본다.

□ 검토의견 : 생략

부칙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발전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본다.

□ 검토의견 :

- 발전기금회계의 권리 승계내용임.

부칙 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선임한다.

□ 검토의견 :

- 시안에서는 ‘국립대학의 장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총장의 일방적인 선임 우려가 제기되는 자가 있다하여 ‘대학구성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둬. 하지만, 확정안에서는 다시 시안의 내용으로 회귀함.

부칙 제6조(출연금의 규모) 2010년에 편성하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최초 출연금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안에 들어있다가 공청회 이후 삭제됨. 하지만, 확정안에서 다시 삽입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지원이 증액은 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조항임.

V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비교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비교표

최초시안 (2008. 5. 28)	7.8 수정안 (6. 26 공청회 이후 안)	입법예고안 (2008. 10. 10)	국무회의 의결(안) (2008. 11. 18)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좌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45조의 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좌동>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45조의 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좌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지원 및 평가)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에 출연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4조(국가의 지원 및 평가)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u>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u>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국가는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에 출연한다. ③ <좌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u>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u> ②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u>인건비, 기본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u> 를 국립대학에 <u>총액으로 출연한다.</u>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국립대학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대학에 총액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③ <삭제>

<p>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삭제></p> <p>⑤ <삭제></p>	<p>는 사업과 관련된 국립대학에 대하여 총액으로 또는 목적을 정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의 국립대학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립대학에 대하여 총액으로 지원하거나 목적을 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좌동></p>	<p>-4조에 병합</p>	
		<p>제5조(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제6조(재정과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당해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p>제6조(재정과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좌동></p>	<p>제6조(재정과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당해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p>삭제 5조에 병합</p>
		<p>제7조(재정·회계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하 “재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재정·회계기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이하 “재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회계규칙)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 운영 및 제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p>	<p>제7조(회계규칙) <좌동></p>	<p>제8조(재정·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p>	<p>제7조(재정·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p>

<p>회계의 절차·운영에 관한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 회계규칙의 기재사항, 개정절차,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쳐야 한다.</p>
제2장 재정위원회	제2장 재정위원회	제2장 재정위원회	제 2장 재정위원회
<p>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재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립대학의 교직원 2. 동문 3.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4.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5.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인사 <p>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제2</p>	<p>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좌동></p> <p>② 재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2. 직원 3. 학생 4.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5.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6.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인사 <p>④ <좌동></p> <p>⑤ <좌동></p>	<p>제9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재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2. 직원 3. 학생 4.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5.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6. 기타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인사 <p>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재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추천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p>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p>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2.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p> <p>3.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p> <p>4. 제27조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p> <p>5. 제28조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p> <p>6. 제3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p> <p>7.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p> <p>⑥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칙으로 정한다.</p>	<p>1. ~2. <좌동></p> <p>3. <삭제></p> <p>3. ~4. <좌동></p> <p>6. <삭제></p> <p>5. 회계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에 관한 사항</p> <p>6.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⑥ 국립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칙으로 정한다.</p>	<p>1. 제11조에 의한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2. 제23조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p> <p>3.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p> <p>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p> <p>5. 제36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 등의 보수 및 제37조에 의한 연구보조비 등에 관한 사항</p> <p>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p> <p>7. 기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사항</p> <p>⑥ 국립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p>	<p>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p> <p>3. 제22조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p> <p>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p> <p>5. 제35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p> <p>6. 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p> <p>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p>
<p>제9조(결격사유)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p> <p>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제9조(결격사유) <좌동></p>	<p>제10조(결격사유)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p> <p>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제9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p> <p>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제3장 국립대학의 회계</p>	<p>제3장 국립대학의 회계</p>	<p>제3장 교비회계</p>	<p>제3장 교비회계</p>
<p>제10조(회계의 구분)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음 각호의 회계로 구분한다.</p> <p>1.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p> <p>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p>	<p>제10조(회계의 구분) <좌동></p>	<p>삭제</p>	<p>삭제</p>

<p>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p> <p>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p> <p>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p> <p>6. 제24조에 의한 발전기금회계</p> <p>7.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p>			
<p>제11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u>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회계규칙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 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u>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p>	<p>제12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단서조항 삭제-</u></p>	<p>제11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 (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p>	<p>제12조 (교비회계) ① <좌동></p> <p>② 교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p>	<p>제11조 (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p> <p>②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제10조(교비회계)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다.</p> <p>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p> <p>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p> <p>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p> <p>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p> <p>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p> <p>6. <u>수수료 및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물품매각 대금</u></p> <p>7.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로부터의 전입금</p> <p>8. 이자 수입</p> <p>9.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수입</p> <p>③ 교비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p> <p>④ 교비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p>	<p>다.</p> <p>1. ~5. <좌동></p> <p>6. <u>사용료, 수수료 및 물품매각 대금</u></p> <p>7. <u>이월금</u></p> <p>8.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로부터의 전입금</p> <p>9. 이자 수입</p> <p>10.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수입</p> <p>③ <좌동></p> <p>④ <좌동></p>	<p>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p> <p>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p> <p>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p> <p>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p> <p>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p> <p>6. <u>사용료, 수수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u></p> <p>7. 이월금</p> <p>8.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p> <p>9. 이자 수입</p> <p>10. 기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수입</p> <p>③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p> <p>④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p>	<p>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p> <p>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입금</p> <p>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p> <p>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p> <p>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p> <p>6. <u>수수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u></p> <p>7. 이월금</p> <p>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9. 이자 수입</p> <p>10. <u>무형 자산 및 도서매각대금</u>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수입</p> <p>③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p> <p>④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13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은 국가의 출연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p>	<p>제13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좌동></p>	<p>제13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p>	<p>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u></p> <p>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p>

<p>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p> <p>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③ <좌동></p> <p>④ <좌동></p>	<p>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p> <p>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p> <p>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제14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4조(예비비) <좌동></p>	<p>제14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p> <p>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3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p> <p>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5조(추가경정예산) <좌동></p>	<p>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 14 조 (추가 경 정 예 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교비회계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p>	<p>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좌동></p>	<p>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p>	<p>제1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p>

<p>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강사, 조교, 직원 및 제32조에 의한 연구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대학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p>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강사, 조교, 직원 및 제36조에 의한 연구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p>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p>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p>	<p>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p>
<p>제17조(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비회계의 예산을 이용·이체와 전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이체와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7조(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 <좌동></p>	<p>제1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의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p> <p>③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다.</p>	<p>제17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의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p> <p>③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p>
<p>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p>	<p>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좌동></p>	<p>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재정위원회</p>	<p>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 중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p>

<p>고이월비로, 재정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p>		<p>승인을 얻은 다음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이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p>	<p>후 다음 해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이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해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p>
<p>제19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9조(결산) 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삭제> : 제30 제2항으로 이동</p>	<p>제20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19조(결산)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21조(재무보고서의 작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정·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p>	<p>제20조(재무보고서의 작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정·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p>

		한다.	한다.
제2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교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제27조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교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1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건축시설적립금 2. 장학적립금 3. 연구적립금 4. 퇴직적립금 5. 기타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적립금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① 국립대학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시설적립금 2. 장학적립금 3. 연구적립금 4. 퇴직적립금 5. 그 밖에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적립금 ② 적립금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입학금과 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학생의 부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입학금과 수업료 등) <좌동>	조항변경 35조로 이동	
		제24조(예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 안의 신문과 인터넷에 공개	제23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p>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세출내역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4장 발전기금	제4장 발전기금	제4장 발전기금	제4장 발전기금
<p>제22조(발전기금의 설치)</p> <p>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발전기금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p>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을 대표할 수 있다.</p> <p>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한다.</p>	<p>제22조(발전기금의 설치) <좌동></p>	<p>제25조(발전기금의 설치)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②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으로 한다.</p> <p>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p>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의 <u>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을 대표할 수 있다.</u></p> <p>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한다.</p> <p>⑦ 발전기금의 능력, 주</p>	<p>제24조(발전기금의 설치)</p> <p>①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발전기금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국립대학의 장은 발전기금의 <u>당연직 이사가 된다.</u></p> <p>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한다.</p> <p>⑦ 국립대학의 장은 교직원 및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p>

<p>⑦ 발전기금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발전기금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p> <p>⑧ 국립대학의 장은 공무원인 교직원 및 제32조에 의한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발전기금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p> <p>⑧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 공무원인 교직원 및 제36조에 의한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u>당하게 할 수 있다.</u></p>
<p>제23조(정관)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제23조(정관) <좌동></p>	<p>제23조(정관)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제25조(정관) 발전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제24조(발전기금회계) ① 발전기금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산학협력단 	<p>제24조(발전기금회계) <좌동></p>	<p>제27조(발전기금회계) ① 발전기금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모집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산학협력단의 세입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p>제26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① 발전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p>의 세입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p> <p>3.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p> <p>5. 차입금</p> <p>6. 이자 수입</p> <p>7.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수입</p> <p>② 발전기금은 그 목적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기금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기금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발전기금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차입금</p> <p>5.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p> <p>6. 발전기금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p> <p>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수입</p> <p>② 발전기금회계의 세출은 그 목적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로 한다.</p> <p>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기금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기금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다.</p> <p>④ 발전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4. 차입금</p> <p>5.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p> <p>6. 발전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p> <p>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p> <p>② 발전기금의 용도는 그 목적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로 한다.</p> <p>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계정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계정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다.</p> <p>④ 발전기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5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국립대학의 장 및 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p>	<p>제25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좌동></p>	<p>제28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p>	<p>제27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발전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p>
<p>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의 기금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부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p>	<p>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좌동></p>	<p>제29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발전기금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의 기금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p> <p>② 발전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부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2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발전기금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발전기금의 계정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p> <p>② 발전기금은 기부자에 대하여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p>

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차입금)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채무자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차입금)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채무자로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좌동>	제30조(차입금) ①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전기금의 차입을 승인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차입금)①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전기금의 차입을 승인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을 사업의 관리·운영자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28조(수익사업) <좌동>	제31조(수익사업) ① 발전기금은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30조(수익사업)① 발전기금은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발전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5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5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5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29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제29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제32조(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비회계, 발전기금 회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회계의 목적 수행에	제32조(회계간 전입·전출)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

<p>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원의 일부를 다른 하나 또는 수 개의 회계에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을 수 없다.</p>	<p>포함한다)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발전기금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을 수 있다.</p>	<p>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회계의 재원의 일부를 상호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33조(재산관리) ① 교비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가재산으로 한다.</p> <p>②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본다.</p>	<p>제33조(재산관리) ① 교비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한다.</p> <p>②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발전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학으로 본다.</p>
		<p>제34조(외부자본유치) ① 국립대학의 장은 현금 등의 외부자본을 유지하여 대학의 교지 내에 대학발전에 필요한 건물 및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p> <p>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물 및 그 밖의 영구 시설물 축조에 자본을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건물 및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삭제</p>
		<p>제35조(입학금과 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 학부모·학생의 부담,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학금과 수업료</p>	<p>제34조(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 학부모·학생의 부담,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p>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수업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종합재무제표의 작성)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제10조의 각호의 회계를 종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재무제표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재무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와 발전기금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변경 21조	조항변경 20조
제31조(예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확정 후 1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제30조의 종합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의 세출내역서를 재정위원회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확정 후 1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제30조 제1항의 재무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재정위원회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조항변경 24조로 이동	조항변경 23조로 이동

	<p>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 회계를 재원으로 회계규칙 또는 발전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과 직원 등(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 필요한 자를 채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대표자가 고용주가 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종료된 연구원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p> <p>④ 국립대학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 그에 적절한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32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삭제></p> <p>③ 국립대학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 그에 적절한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36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발전기금은 발전기금회계를 재원으로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과 직원 등(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 필요한 자를 채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대표자가 연구원 등의 고용주가 된다.</p> <p>③ 국립대학의 장 및 발전기금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당해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삭제</p>
<p>제33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p>	<p>제33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 <좌동></p>	<p>제37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재정·회계규정 또는 발전기금</p>	<p>제35조(연구경비 등의 지급) ① <u>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의 재원으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u></p>

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재산관리) ① 교비 회계 및 발전기금이 취득한 시설과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한다. 다만, 발전기금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등 재산의 사용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본다.	제34조(재산관리) ① 교비 회계에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가재산으로 한다. ②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등 재산의 사용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본다.	조항변경 33조로 이동	조항변경 33조로 이동
제35조(회계운영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대학의 회계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운영기준) <삭제> :제30조 제1항에서 회계기준으로 언급	조항변경 7조로 이동	조항변경 6조로 이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좌동>	제1조(시행일) 좌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연도 구분) 2010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연도 구분) <좌동>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회계연도 구분) 2010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회계연도 구분의 특례) 제10조제4항에 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3조(기성회회계의 폐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성회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2010년 2월말일 기준의 기성	제3조(기성회회계의 폐지 등) ① <좌동> ② <좌동>	제3조(기성회회계의 폐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성회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2010년 2월 말일 기준의 기성	삭제

<p>회회계 결산잔액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귀속한다.</p> <p>③ 종전의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u>교비회계 등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한다.</u></p> <p>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인의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u>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u></p>	<p>③ <좌동></p> <p>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u>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u></p>	<p>회회계 결산잔액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귀속한다.</p> <p>③ 종전의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u>교비회계 등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u></p> <p>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u>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u></p>	
			<p>제3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전기금(이하 “종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으로 본다.</p>
<p>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이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전기금(이하 “종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성립된 발전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발전기금의 명칭은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명의로 본다.</p>	<p>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좌동></p>	<p>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이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전기금(이하 “종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성립된 발전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발전기금의 명칭은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명의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p>	<p>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이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인의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교비회계 또는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p> <p>④ 종전의 발전기금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p>		<p>의한 발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인의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교비회계 또는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p> <p>④ 종전의 발전기금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립대학의 장이 선임한다.</p>	<p>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p>	<p>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p>	<p>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선임한다.</p>
<p>제6조(국가 출연금의 규모) 이 법 시행 연도에 편성하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의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6조(국가 출연금의 규모) <삭제></p>	<p><삭제></p>	<p>제6조(출연금의 규모) 2010년에 편성하는 제10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p>

VI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전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대학에 총액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회계기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이하 “재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쳐야 한다.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추천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선임한다.

1. 해당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5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교비회계

제10조(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수수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
7. 이월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이자 수입

10. 무형 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등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수입

③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④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

의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 중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해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해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재무보고서의 작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정·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시설적립금
2. 장학적립금
3. 연구적립금
4. 퇴직적립금
5. 그 밖에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적립금

② 적립금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세출내역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

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발전기금

제24조(발전기금의 설치) ①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발전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발전기금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한다.

⑦ 국립대학의 장은 교직원 및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정관) 발전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6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 발전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6. 발전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

② 발전기금의 용도는 그 목적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계정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계정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발전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제2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발전기금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전기금의 계정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기부자에 대하여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9조(차입금) ①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전기금의 차입을 승인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수익사업) ① 발전기금은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발전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32조(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재산관리) ① 교비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발전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학으로 본다.

제34조(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 학부모·학생의 부담,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수업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경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게 대하여 교비회계의 재원으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회계연도 구분의 특례)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3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전기금(이하 “종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선임한다.

제6조(출연금의 규모) 2010년에 편성하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IX. 국립대 공투위 기자회견 및 성명서 모음

[기·자·회·견·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책무마저 포기하려는가? 국립대학 법인화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이 지난 1월 8일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민주성 담보하고, 대학발전 및 장학금 확충을 위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하지만 이 법은 국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수·직원·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국립대 법인화의 사전조치라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를 현실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시까지 “...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고 적시되었던 재정지원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수정됐다. 재정지원을 임의규정화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근거 조항 조항 역시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삭제되었다. 대학당국이 재정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던 국유재산 사용료조차 교비회계에 두지 못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대학의 재정확보 방안조차 봉쇄해놓고서 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뛰라고 하는 것에 다름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개별대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줄어든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금 인상이다. 2004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법인화전후 소규모의 지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립대의 등록금인상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결국 등록금인상의

악순환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법이 입법취지와 동떨어지게 성안되었다는 사실이다. 입법취지에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을 통합해 교비회계로 한다고 하면서도 법안 어디에도 기성회비관련 내용의 언급이 없다.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아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기성회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문제는 또 있다. 기성회비를 법안에서 삭제하다보니 교비회계로 고용승계하기로 되어있는 기성회직원들은 고용불안문제도 발생했다. 정부안대로라면 기성회직원들은 이 법시행과 동시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결국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요약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어려우니 개별대학이 수익사업이나 등록금 인상을 통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다.

지난 2. 6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이법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발 디딜틈 없이 가득채운 국립대 구성원들은 한 목소리로 재정회계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런 법이 제정된다면 국립대학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고등교육의 수준을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고등교육 책무마저 던져버리는 국립대 법인화나 재정회계법 도입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위기에 등쌀 휘는 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립대 법인화의 징검다리이자 국립대학 등록금 폭등법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전면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구성원들의 동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입법권자들 고유권한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다수가 원하는 대의정치의 표상이다. 만일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자가 있다면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25일

국회의원 안민석(민주당 교육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2008. 11.20 정부확정안 발표에 따른 공투위 성명서>

“국립대재정지원 축소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즉각 폐기하라”

-국립대재정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안에 대한 국립대 공투위의 입장 -

지난 10월10일 입법예고 된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두는 한편,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위해서 재정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중장기발전과 학생들의 장학금확충을 위해 법인으로 발전기금을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우리 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국립대공투위)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대학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사전포석이며, 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이며, 수익사업 치중으로 대학이 상업화될 것이며, 국립대 등록금이 폭등하고 지방 중소국립대학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정부 확정안은 이 같은 우리의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가장 핵심은 재정지원 축소 문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 시 대학구성원들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법안에 ‘국립대학의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확정안에는 당초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라고 적시했던 내용을 수정해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원하는 것조차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재정지원 축소를 시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하여 국립대

학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2007년말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50.4%에 불과해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국가보조금 86%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국립대 구성원들이 국립대학을 기성회립대학이라고 하겠는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면 개별대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줄어든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두어 수익사업을 가능케 하고 있다. 문제는 발전기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법안에는 재정위원회가 수익사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했으며, 차입금역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 조항 역시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발전기금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의 장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 물론 이사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규정역시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다.

한편,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재정위원회에는 집행과 심의의 적절한 분리로 학교의 장을 배제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위원으로 사실상 대학운영의 모든 권한을 학교의 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애초 이법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을 통합해 교비회계로 한다고 하면서도 기성회비에 대한 부분은 법안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법적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아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기성회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문제는 또 있다. 기성회비를 법안에서 삭제하다보니 교비회계로 고용승계하기로 되어있는 기성회직원들은 고용불안문제도 발생했다. 정부안대로라면 기성회직원들은 이법시행과 동시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 확정안은 요약하면 재정지원은 어려워니 개별대학이 수익사업이나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국립대학이 스스로 헤쳐 나가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한심한 것은 제정 목적이었던 회계 통합은 법안 어디에도 그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또 다른 투명성제고의 상징인 재정위원회 역시 사실상 총장의 입김에 좌지우지하도록 해놓아 입법취지와 법안이 따로 노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한심한 법이 어떻게 국무회의를 통과했는지 의아스럽기 그지없다.

우리 국립대 공투위는 국민을 기망하고 국립대학의 재정책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바이며, 이후 18대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교육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총력투쟁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11.20.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관: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2008.10.13 입법예고에 대한 공투위 성명서>

-천박한 꼼수로 교육공공성을 훼손하지 마라-

-국립대재정회계법 입법예고에 따른 국립대 공투위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10일부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재정부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국립대공투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로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대학구성원들의 반발로 우선멈춤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사전단계이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또다른 관치를 내재한 법이며, 외부자본 유치 등으로 대학을 상업화로 내모는 법안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국립대 공투위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포함함 국립대학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대다수 대학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투위가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새로운 정부와 의사소통을 통해 국립대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하려면 먼저 국립대학을 법인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

으로 정부당국과 대학구성원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안정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명문화 하고, 대학 구성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면 재정회계법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밝혔다. 교육과학자 원부는 ‘이 법과는 별개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며, 예산확보는 ‘노력을 할 것이지만 어렵다’ 정례간담회는 ‘필요하면 할 것’ 이라고 해 공투위의 의사소통 노력을 무참히 짓밟았다.

교과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도입을 위해 대학구성원들과의 간담회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로만 활용한 것이다. 실제 입법예고 된 법은 대학구성원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 는 선언만 있을 뿐 재원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와 관련해서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실내용은 수업료와 통폐합하여 법적근거 논란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자율성을 주겠다고 했지만 재정과 관련한 부분은 국가재정법에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놓았다. 그러면서도 개별대학에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립학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계 간 진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월적립금을 양성화 하여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투자 유치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공투위와 교과부의 간담회에서는 언급조차 없던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안에 슬며시 포함되었다. 이미 민간투자는 BTL이나 BT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투자를 법안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투자자가 대학을 상대로 한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열어놓아 대학마저 자본의 전진기지화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입법예고 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설치목적인 대학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제고라기보다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를 양성화 하는 법임과 동시에 개별대학이 수익사업이나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라는 국립대학 홀로서기 법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립대 공투위는 국민을 기망하고 국립대학의 재정책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우리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교육공공성 후퇴에 반대하는 제 교육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총력투쟁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10. 13.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관: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X.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폐기 부결 청원서

1. 청원자

정용하 외 7,175인(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2. 소개의원

권영길, 김재윤, 안민석 의원

3. 청원일

2008년 12월 30일 (청원번호 : 1800057)

4. 소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일 : 2008년 12월 31일)

5.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성명 : 정용하 외 국립대학 교수 7175명
건명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폐기·부결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8년 12월 29일
소개의견 청원인 정용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회장이며 전국 국공립 대학교 교수님들의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이하 ‘국교련’)의 상임회장으로써 전국 40개 국립대학 7175명의 교수님과 함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폐기·부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가의	

【참고자료 2】 교과부의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안)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안)

2011. 1. 4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인재정책실 대학선진화과

목 차

지침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지침

I. 제도의 개요	1
II. 총칙	4
III. 임용구분별 연봉 책정 절차	6
IV. 임용구분별 기본연봉 책정 방법	8
V. 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운영 방법	12
VI. 연봉의 조정	17
VII. 신분변동 등에 따른 업무처리 일반	19
VIII. 성과연봉 및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	28
IX. 행정사항	30

참고 수당, 연금, 가산금 결정 방법

I. 수당	34
II. 연금	35
III. 신임교원 및 승진교원 가산금 결정방법	38

부록 관련 규정

1. 공무원 보수규정(발체)	41
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발체)	48
3. 공무원연금법(발체)	54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발체)	60

지침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1. 개념

◦ 교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의 성과를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가산, 누적되어 실적에 따라 교원 간에 일정한 보수의 격차가 발생하며,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제도

2. 추진배경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경쟁상황에 대응
 - 21세기에 이르러 대학은 지식의 생산·유통에서 기업체·연구소 등 다른 기관과의 새로운 경쟁상황에 직면
 - ※ 선진국들이 고등교육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대학 간 경쟁이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연구소 등의 지식 생산자 역할 증대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대학 선호로 가중된 경쟁상황 불가피
 - ※ 2023년 고교졸업자가 대입정원보다 20만명 부족 예상(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 권역별 대학생 비율('09년) : 수도권(45.9%), 비수도권(54.1%)
- 우수교원 유치와 기존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높은 보상체계를 통한 우수인재 (*Star Faculty*)의 유치와 기존 교원에 대한 동기 부여가 관건
 - ※ “대학의 경쟁상대가 학문분야별로 다양해지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이고 탄력적인 보수체계 유지 필요” (OECD, 2008)
 - 최근 국내 사립대학도 성과와 보수를 연계하는 다양한 방식의 차등적 보상체계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
- 대학의 자율적·선진적 보수체계 구축 필요
 -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도 사립대학 이상의 교육·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선도
 - ※ 국립대는 평균적인 여건이 사립대보다 부족하나, 학생 만족도, 정규

직 취업률, 전임교원당 SCI 논문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최정윤, 2008)

- 국립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획일적인 공무원 보수체계의 경직성 탈피 필요성 제기

3. 기본방향

- 적용이 용이한 대상부터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새로운 임용조건 적용이 가능한 신입교원부터 시행
 - 기존 재직교원의 경우 일정한 전환 준비기간 부여
- 성과평가를 통한 적정 보상과 교원 간 보수격차 확대 도모
 - 성과연봉의 일부를 기본연봉에 누적시켜 단년 또는 누계에 따른 구분경향 방지
 - 뛰어난 업적을 보인 교원에 대한 획기적 보상을 통해 대학별로 Star급 교원 발굴·지원
- 교과부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학이 자율 운영
 - 교과부는 교원 보수의 안정성 및 최소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요사항의 최소 기준만 제시
 - 대학은 최소 기준 내에서 대학 및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부사항 자율 결정
- 운영상황 평가를 통한 제도 정착 유도
 -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과부가 매년 대학별 운영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권고

4. 기대효과

- 교원 측면
 - 교원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 촉진
 - 국립대학 교원사회에 발전적인 경쟁 풍토 조성
- 대학 측면
 - 대학별 발전전략에 따른 다각적 교육연구사회봉사 성과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 강화
 - 종합적 교원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 교육수요자 측면

- 새로운 지식·직업 창출을 통해 고급노동시장(*high skills*) 육성
- 대학교육과 시장 수요의 괴리(*mis-match*)를 해소하고, 졸업생들의 취업경쟁력 향상

5. 추진경과

- 「10년 교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보고(‘09.12.22. 대통령)
-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운영방안’ 보고(‘10.2.18. 대통령)
- 관계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협의(‘10.2.~5.)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운영방안(시안)」 확정(‘10.4.19.)
 - 국립대학 담당 처·과장(‘10.3.18.) 및 교무과장(‘10.4.1.) 대상 설명회
- 「성과급적 연봉제(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10.4.~5.)
 - 공문 시행을 통한 국립대학의 의견 수렴(‘10.4.20~5월말)
 - 「성과급적 연봉제 시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10.4.29.)
- 권역별 설명회(‘10.6.) 및 국립대학 교무처·과장 간담회(‘10.7.~9.)
- 당정협의 실시(‘10.10.1) 및 입법예고 실시(‘10.10.12.~11.1.)
- 입법예고 결과 수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10.11.2.~11.16.)
- 수정사항 확정 및 행정안전부 통보(‘10.11.17.)
- 재입법예고 실시(‘10.12.9~12.14.)
- 법제처 법제심의(‘10.12.20.~28)
- 차관회의 심의(‘10.12.30.) 및 국무회의 심의(‘11.1.4.)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11.1.10.)

1. 관련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연봉제) 제33조~제50조, 별표30의3, 별표31, 별표 33

2. 적용대상(영 제33조·별표 3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설치령」(38교),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문광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문광부)」 등에 따른 국립대학(43교)의 교원

※ 총장 및 조교는 적용 제외

3. 연도별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영 부칙 제8조제1항)

연도	적용대상	적 용 방 법
'11. 1.	신임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부터 신규로 임용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12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신임교원간)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12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13. 1.	재직교원 (비정년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교원 중 '12.12.31. 현재 비정년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13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13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15. 1.	재직교원 (정년보장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교원 중 '12.12.31.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모든 교원 대상 전면 시행) ▪ '15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15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4. 적용시기 특례(영 부칙 제8조제2항)

-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전통문화학교(문화재청 소관)
- 신임교원·비정년교원·정년보장 교원 모두 '15년 일괄 적용

5. 보수의 구성형태

- 가. 구성형태 :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 외 급여
- 나. 기본연봉

◦ 1차연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 당해연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봉급과 관련 수당*의 합산액

* 관련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포함)·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 2차연도 이후 : 전년도 기본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신입교원 가산금(매년도 신입교원에 대하여 임용 2차연도에만 지급)

* 정책조정액 : 공무원 처우개선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교과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비율을 각 교원의 전년도 성과연봉에 곱한 금액) 등

다. 성과연봉 : 지난 일정기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금액

라. 연봉 외 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연봉과 무관하게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의 경우) 등

6. 연봉 한계액(영 제35조와 별표 33)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국립대학의 교원	-	2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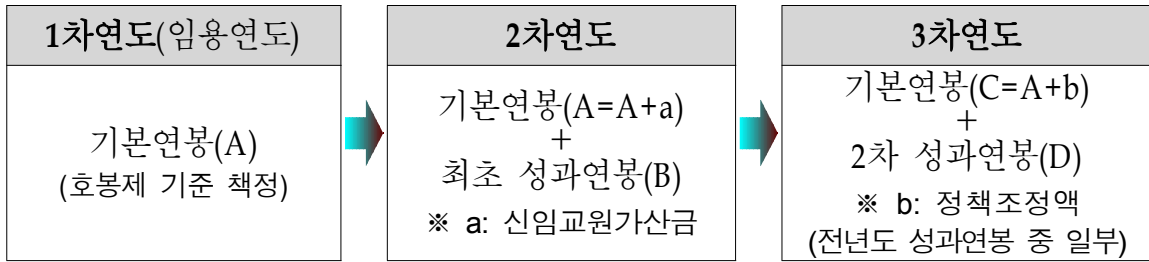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업적평가 및 연봉제 운영 기준일

구분	기준일	비고
연봉 책정 기준일	매년 1월 1일	
업적평가 기준일	매년 2월 말일	평가실적 기준
업적평가 대상자 확정	학년도(전년도 3.1~당해연도 2월말) 중 근무한 교원 ※ 신입교원은 임용일부터 기산	파견, 휴직자 등 포함

1. 신입교원

가. 연도별 책정방법



나. 책정 유의사항

◦ 임용 첫 해에는 호봉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지급하고, 임용 다음해에는 성과누적분이 가산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임용 다음해에 한하여 신입교원 가산금(1,399,000원)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며, 최초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초 성과연봉 책정·지급

◦ 최초 업적평가 시에는 당해 신입교원이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년도부터는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

※ 대학 전체 신입교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것이 아님

◦ 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연초에 임용된 교원과 업적평가를 함께 실시

2. 재직교원

1 차 연도	기본연봉 (A)	◦ 전환 당해연도 연봉(A+B) - 기본연봉(A) : 호봉제를 기준으로 책정(기준 봉급+수당) - 성과연봉(B) : 당해연도에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 ※ '13.1.1 전환 교원의 경우 '12.12.31.기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을 더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책정·지급
	최초성과연봉 (B)	



2 차 연도 (C+D)	기본연봉 (C=A+b) ※ b: 정책조정액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다음연도 연봉 - 기본연봉(C) : '1차연도 기본연봉(A)'에 '1차연도 성과연봉의 일부(b)' 가산 - 성과연봉(D) : 2차연도에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 ※ '13년 전환 교원의 '14년 기본연봉은 '13년 기본연봉에 '13년 성과연봉의 일부(정책조정액)를 가산하여 결정
	2차 성과연봉(D)	

3. 재임용 교원(영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가. 재직교원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재임용되는 경우

-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근무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당해 대학에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봄

나. 대학의 장이 당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기본연봉은 다음 중 유리한 금액을 책정·지급

- ①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 ②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대학의 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국립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 성과연봉은 대학이 자율 결정

4. 승진임용 교원(영 제37조제2항)

- 연봉제 적용 교원 중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기 전의 기본연봉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82,000원)을 가산하여 기본연봉 책정

- ※ 호봉제 적용 시,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의 경우, 1호봉을 승급할 수 있는 규정을 연봉제에 반영한 것으로서 조교수 승진에 한함

IV

임용구분별 기본연봉 책정 방법

1. 신입교원(영 제36조의2제1항)

◦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

① 봉급(차기 승급예정분을 일정비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 포함)

※ 정기승급일에 따른 차기 승급예정분 가산비율 조건표(3.1. 신규임용자의 경우)

승급예정일	3.1. (신규임용)	① 4.1. 승급 시	② 5.1. 승급 시	③ 6.1. 승급 시	④ 7.1. 승급 시	⑤ 8.1. 승급 시
가산비율	봉급액에 기 반영	11/12	10/12	9/12	8/12	7/12
승급예정일	⑥ 9.1. 승급 시	⑦ 10.1. 승급 시	⑧ 11.1. 승급 시	⑨ 12.1. 승급 시	⑩ 1.1. 승급 시	⑪ 2.1. 승급 시
가산비율	6/12	5/12	4/12	3/12	2/12	1/12

②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 포함)

③ 명절휴가비

◦ 연봉 책정의 특례

-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예 시

◦ 2011. 3. 2. 교육·연구 경력으로 환산한 신입교원(전임강사) 10호봉, 근무연수 6년, 차기 승급일 2011. 10. 1인 2011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신입교원의 연봉월액 지급 방법은?

※ 대학 교원의 연봉하한액 : 21,098천원(영 별표33)

1. 연봉액

- 연봉 산정기준

· 봉급액 : 2,168,300원

【전임강사 10호봉 봉급액 2,133,5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5/12인 34,830원을 합산한 금액(2,168,330원)을 최종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1호봉 승급액(83,600원)×5/12=34,830원(34,833원을 일원 단위 절사)

·근무연수 : 8년(6년+2년)

- 연봉 산정내역 : 30,957,000원(30,956,200원을 최종 백원 단위에서 절상)

·봉급연액 : 26,019,600원(2,168,300원×12월)

·정근수당 : 1,734,640원(2,168,300원×80%)

·정근수당가산금 : 600,000원(50,000원×12월)

·명절휴가비 : 2,601,960원(2,168,300원×120%)

※ 연봉월액 : 2,579,750원(→기본연봉액 30,957천원÷12월=2,579,750원) *일원 단위 절사

- 2011년 3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2,496,530원(2,496,532원을 일원 단위 절사)

→ 연봉월액 2,579,750원/31일×30일(3.2 ~ 3.31)

※ 연봉 외 급여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일할계산 후 별도 지급

2. 재직교원(영 부칙 제6조·제9조)

◦ '12.12.31 현재, 비정년 교원은 '13.1.1.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15.1.1.부터 연봉제로 전환

◦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

① 봉급(차기 승급예정분을 일정비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포함)

※ 정기승급일에 따른 차기 승급예정분 가산비율 조건표

승급예정일	1.1.	2.1.	3.1.	4.1.	5.1.	6.1.
가산비율	1호봉 승급액	11/12	10/12	9/12	8/12	7/12
승급예정일	7.1.	8.1.	9.1.	10.1.	11.1.	12.1.
가산비율	6/12	5/12	4/12	3/12	2/12	1/12

② 정근수당(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정근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 포함)

③ 명절휴가비

3. 재임용 교원(영 제36조의2제2항)

◦ 재임용이 되더라도 신분상 변동이 없고, 계속 근무한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임용을 이유로 연봉을 재책정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직전에 책정된 연봉을 재임용에 따라 책정된 연봉으로 봄



◦ 2011.3.1. 4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치고 32호봉, 근무연수 18년 차기 호봉 승급일이 2011.10.1인 당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甲교수의 연봉 책정은?

①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할 경우

연봉액(영 제36조의2제1항) : 64,051천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4,417,600원

【32호봉 4,377,8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5/12인 39,830원을 합산한 금액 (4,417,630원)을 최종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1호봉 승급액(95,600원)×5/12=39,830원(39,833원을 일원 단위 절사)

·근무연수 : 20년(18년+2년)

- 연봉 산정 내역 : 64,050,000원 (64,049,920원을 최종 백원 단위에서 절상)

·봉급연액 : 53,011,200원(4,417,600원×12월)

·정근수당 : 4,417,600원(4,417,600원×100%)

·정근수당가산금 : 1,320,000원(110,000원×12월)

·명절휴가비 : 5,301,120원(4,417,600원×120%)

- 연봉월액 : 5,337,500원 (→연봉액 64,050,000원÷12월) * 일원 단위 절사

※ 연봉 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은 일할 계산 후 별도 지급

② 2011년 현재, 대학의 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였던 교원은 없으므로 기본연봉에 정책조정액을 가산하는 방법은 해당없음

⇒ ①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책정한 방식에 따른 기본연봉 책정

4. 승진임용 교원(영 제37조제2항)

-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한 때에 한하여 승진가산금을 기본연봉에 추가
- 연봉을 재 책정하더라도 기 지급한 성과연봉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진임용일부터 재 책정된 기본연봉의 월액을 일할하여 지급하고, 연봉 외 급여인 각종 수당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

예 시

- 비정년 재직 교원 중 연봉제 전환과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의 직명 변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 ※ 연봉제 전환 및 직명 변동 일시 : 2013. 1. 1.(가정)
 - ☞ 기본연봉의 책정
 -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산정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9조에 따라 책정된 금액 + 승진교원 가산금(1,582천원)
 - ※ 정책조정액(2013. 1. 1자 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정책조정액)을 기본연봉에 가산

1. 적용 대상 대학(영 제33조·별표 31)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설치령」(38교),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문광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문광부)」 등에 따른 국립대학(43교)

2. 평가 기준일 : 매년 2월 말일

3. 평가 주기 : 매년

4. 평가 대상기간 : 1년 이상

◦ 동일 대학 내에서라도 평가단위의 특성에 따라 차등설정 가능
 ◦ 평가대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간별로 가중치 부여 가능

※ 비정년 교원과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위한 전환 단계에서는 기존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에 반영했던 평가 대상기간과의 중복 가능

5. 평가 완료기한 : 매년 5월 말일

6. 평가 및 지급대상(영 39조의2)

◦ 적용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원(과건, 휴직 중인 자 등 포함)

※ 총장, 조교 제외

7. 성과연봉 기준액

◦ 성과연봉 기준액은 국립대학 전체 성과연봉 재원을 국립대학 전체 성과연봉 지급대상 교원 수로 나눈 금액

※ 이 금액은 국립대학 간 교원 보수 수준의 격차를 방지하고, 대학별 예산 배정에 필요한 연간 공통기준 마련 및 「공무원연금법」 상 성과연봉에 따

른 기여금 격차 방지 등을 위해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통지함

8. 성과연봉 재원 배분 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 당해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별 국립대학 전체 교원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
- 대학 → 평가단위
 - 교부받은 성과연봉 예산을 당해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에 평가단위별 소속 교원 수만큼 곱한 금액을 배분



◦ 대학별 성과연봉 배분 및 지급방법

☞ ‘해당연도의 성과연봉 기준액 3,000천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 수 500명, A평가단위 교원 수 30명, 등급별 지급비율을 S등급 : 1.8β, A등급 : 1.3β, B등급 : 자율결정, C등급 : 없음’으로 정한 경우

- 대학으로 배정되는 성과연봉 예산 : 1,500,000천원(3,000천원×500명)

- A평가단위 배정 예산 : 90,000천원(3,000천원×30명)

·등급별 배정 인원 : S등급: 6명, A등급: 9명, B등급: 12명, C등급: 3명

·등급별 지급액 : S등급(6명) 5,400천원, A등급(9명) 3,900천원, B등급(12명) 1,875천원, C등급(3명) 기본연봉만 수령

9. 평가 단위 설정

- 기존의 교원 업적평가 단위와 학문분야의 유사성 및 평가의 적절성·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계열, 충분한 수의 복수 학과(부) 등으로 설정하되, 각 대학은 합리적으로 업적평가의 단위를 설정하여야 함
- 교원 직급별 차등화한 단위 설정은 대학 자율로 결정
- 지나친 세분화로 대상 교원 수가 과도하게 적어지지 않도록 유의

10. 평가내용

- 대학 발전전략을 고려한 특정실적 강조, 평가단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및 다양한 정성평가 활용 등 가능

- 산·학협력, 취업지도 등 대학별로 필요한 실적 항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교원 성과평가체제' 구축·운영
- 학문간 융·복합 및 공동연구 촉진과 졸업생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내용 반영 권장

11. 평가방법

- 동일한 평가단위 내의 교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 연령·재직기간 등 성과와 무관한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금지하나, 상대적 약자(출산·질병휴직자 등)에 대한 배려는 권장
 - ※ 전체 교원 중에서 일률적으로 연구년 중인 자 등을 선별하여 평가 없이 C등급 배정 금지
 - 동일한 평가단위라도 동일한 평가기준 내에서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평가의 내용·방법 등의 차별화 가능
 - ※ 예) 단과대학인 '예술대학'을 평가단위로 하여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음악과미술과체육과 등 학과 특성에 따라 상이한 평가내용·방법 적용 가능

12.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비율	1.5β 이상 2β 미만	1.2β 이상 1.5β 미만	자율 결정	없 음

※ S등급 중 일부 SS등급 배정 가능하며, 각 등급에서 ±5% 이내 조정 가능

※ β : 성과연봉 기준액

- SS등급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S등급의 교원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교원에 대하여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지급

13. 성과등급별 인원 결정 방법

- 등급별 인원 배정 산식 : 대상 교원 수 × 등급별 인원비율
-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 순서

- ①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
 - ②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 ③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 평가단위 내 대상 교원이 1명일 경우에는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
- ※ 등급별 배정표(예시1)

등급	5명		6명		7명		8명		9명		11명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S(20%)	1	1	1.2	1	1.4	1	1.6	2	1.8	2	2.2	2
A(30%)	1.5	2	1.8	2	2.1	2	2.4	2	2.7	3	3.3	3
B(40%)	2	2	2.4	2	2.8	3	3.2	3	3.6	3	4.4	5
C(10%)	0.5	0	0.6	1	0.7	1	0.8	1	0.9	1	1.1	1

※ 등급별 배정표(예시2)

등급	5명		6명		7명		8명		9명		11명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S(15%)	0.75	1	0.9	1	1.05	1	1.2	1	1.35	1	1.65	2
A(35%)	1.75	2	2.1	2	2.45	3	2.8	3	3.15	3	3.85	4
B(45%)	2.25	2	2.7	3	3.15	3	3.6	4	4.05	4	4.95	5
C(5%)	0.25	0	0.3	0	0.35	0	0.4	0	0.45	1	0.55	0

14. 지급액의 결정

- 책정원칙 : 성과연봉 기준액을 준수하고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성과연봉 수준을 결정하여 지급
- 지급액 결정 : 성과연봉 기준액 × 업적평가 등급별 지급비율
 - ※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함(단,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
-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없음
 - 우수교원 유치와 기존 교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연봉의 상한액은 미설정
 - 단, 교원의 연봉액이 소속 대학의 장의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
 - 하한액 : 21,098천원(현 대학 교원 1호봉 연봉액)
 - 지급액 결정의 특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대학의 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대학의 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초과 책정 필요 시 행안부장관과 협의)

15. 지급방법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

예시

○ 2013년 기본연봉액이 61,785천원이고 2013년 성과등급이 S인 대학 교원의 2013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S등급의 지급비율 1.7β, '13년 성과연봉은 '13년 6월부터 지급한다고 가정

☞ '13년도 연봉액 : 67,225천원(기본연봉액 61,785천원 + 성과연봉액 5,440천원)

※ '13년도 성과연봉액 : 5,440천원('13년 성과연봉 기준액 3,200천원 가정)

- '13년도 연봉월액 산출내역

·기본연봉 월액 : 5,148,750원(기본연봉액 61,785천원 ÷ 12월) * 일원 단위 절사

·성과연봉 월액 : 453,330원(기본연봉액 5,440천원 ÷ 12월)

→ 453,333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13년도 6월분 성과연봉액 : ('13년 1월 ~ 5월분 미지급액) + 6월분

→ (453,330원 × 5개월) + 453,330원 = 2,719,980원

월별	기본연봉액	성과연봉액	계	월별	기본연봉액	성과연봉액	계
1월	5,148,750원		5,148,750원	8월	5,148,750원	453,330원	5,602,080원
2월	5,148,750원		5,148,750원	9월	5,148,750원	453,330원	5,602,080원
3월	5,148,750원		5,148,750원	10월	5,148,750원	453,330원	5,602,080원
4월	5,148,750원		5,148,750원	11월	5,148,750원	453,330원	5,602,080원
5월	5,148,750원		5,148,750원	12월	5,148,750원	453,330원	5,602,080원
6월	5,148,750원	2,719,980원	7,868,730원				
7월	5,148,750원	453,330원	5,602,080원	계	61,785,000원	5,439,960원	67,224,960원

1. 정기조정

- 정기조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정기조정 내역 : 전년도 기본연봉액 +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액 + 신입교원 가산금(매년도 신입교원에 대하여 임용 2차년도에만 지급)
 - * 정책조정액 :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각 교원의 전년도 성과연봉에 교과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등
- 정기조정 방법
 -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과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액 및 신입교원 가산금(신입교원 중 2차년도 근무자)을 각각 합산하여 매년 업적평가 종료 후에 조정
- 연봉 정기 조정내역의 통보
 - 매년 연봉의 정기조정 시에는 연봉조정내역을 개인별로 통보
 -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
-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소속 대학의 장의 연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 정기조정 결과 책정된 당해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소속 대학의 장의 연간 총보수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연도 기본연봉 산입 시 당해연도 소속 대학의 장의 총보수(봉급과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포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 단,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대학의 장의 의견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2. 수시조정

- 연도 중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른 공무원 보수 정책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휴직기간 중 이뤄진 정책조정액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 다만, 연봉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액

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책정의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연봉 수시조정 내역의 통보
 - ※ 정기조정 시의 경우와 같음
- 수시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정기조정 시의 경우와 같음

3. 2011년도 연봉의 정기조정

2011년도에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처음 시행하므로 신입교원만 신규임용 시의 연봉 책정 방법에 따라 '기본연봉액'을 책정

1. 연도 중 퇴직자 등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 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의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 채용 시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면직, 해임, 파면 및 기타 어떠한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영제42조)

※ 2년 이상 근속자가 월중(1일자 제외) 면직되는 경우에는 연봉월액 전액지급

예시

◦ 2년 이상 근속한 대학 교원이 2015년 2월 중 퇴직할 경우, 연봉 지급 방법은?(영 44조)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

① '15. 2. 1.자로 퇴직할 경우,

- 기본연봉 : '15년 1월분 연봉월액 지급

- 성과연봉 : 업적평가 후, '15년도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본 지침, VII-1.「연도 중 퇴직자」 부분 참조)

② '15. 2. 2.자로 퇴직할 경우,

- 기본연봉 : '15년 1~2월분 연봉월액 지급

- 성과연봉 : 업적평가 후, '15년도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

예시

○ 1995. 1. 1. 신규임용된 대학 교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2013. 2. 1. 직위해제된 후 동년 3. 10.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월인 3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 : 60,420천원(가정)

- 해임일 현재 실제 근속기간 : 18년 1월로서 2년 이상 근속자이나 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일할계산(영 제44조)

- 직위해제기간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70% 지급(직위해제 후 3월 이내)

- 3월분 연봉월액 : 1,023,240원(1,023,241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연봉월액 (5,035,000원×70%)/31일×9일(3.1~3.9)

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영 제49조)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정지된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

- 이 경우 재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

○ 연봉제 시행 전의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종전 연봉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

○ 면직처분·과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 교원의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당초 면직·과면·해임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예 시

○ 1995. 3. 1. 신규임용된 대학 교원이 2013. 3. 1. 파면된 후, 당초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2016. 1. 1에 복직한 경우, 미지급 연봉액의 소급 지급방법은?

※ 설정조건

지급연도	전년도 성과누적률	성과연봉 기준액
2013년	40%	3,000천원
2014년	42%	3,100천원

2015년	44%	3,200천원
-------	-----	---------

- ① 2013년도 기본연봉액 : 60,000천원(2012년도 성과연봉의 일부 누적을 40%가 가산된 금액으로 가정)
- ② 2013 ~ 2015년동안 처우개선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③ 2013년도 2월말일 기준 업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가정(지급률 1.2β)

<2013년 연봉>

- ☞ 2013년 연봉액 : 63,600천원
 - 2013년도 연봉월액 산출내역
 - 기본연봉 월액 : 5,000천원(기본연봉액 60,000천원 ÷ 12월)
 - 성과연봉 월액 : 300천원(성과연봉액 3,600천원 ÷ 12월)
 - 2013년도 연봉 지급액 : 10,600천원(1 ~ 2월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월액 지급)

<2014년 연봉>

- 2014년도 기본연봉액 : 61,512천원(①+②)
 - ① 2013년 기본연봉액 : 60,000천원
 - ② 2014년 정책조정액(누적비율 42% 가정) : 3,600천원 × 42% = 1,512천원
- 2014년도 성과연봉액 : 3,100천원(2014년도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
- ☞ 2014년 연봉액 : 64,612천원(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

<2015년 연봉>

- 2015년도 기본연봉액 : 62,876천원(①+②)
 - ① 2014년 기본연봉액 : 61,512천원
 - ② 2015년 정책조정액(누적비율 44% 가정) : 3,100천원 × 44% = 1,364천원
- 2015년도 성과연봉액 : 3,200천원(2015년도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
- ☞ 2015년도 연봉액 : 66,076천원(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

☞ 연봉 미지급액 소급 내역

	기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소급액 (=B-A)
	기본연봉	성과연봉	계	기본연봉	성과연봉	계	
2013년	10,000천원	600천원	10,600천원	60,000천원	3,600천원	63,600천원	
2014년				61,512천원	3,100천원	64,612천원	
2015년				62,876천원	3,200천원	66,076천원	
계	10,000천원	600천원	10,600천원	184,388천원	9,900천원	194,288천원	183,688천원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된 경우 : 그달의 연봉월액 전

액 지급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

※ '2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

◦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 :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않음

※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 중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연도 중 임용자 등

가. 기본원칙(영 제42조)

◦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연봉월액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 시에는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함(단, 백원 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함)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단순히 전보된 경우 연봉액은 변동되지 않음

다. 겸임(영 제32조)

-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
- 겸임수당의 지급
 -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액과 관계 없이 지급

라. 파견(영 제21조제2항)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자에게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연봉을 지급하되,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음

3. 연봉의 감액 지급

가. 휴직(영 제47조)

-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전액 또는 일부)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을 말함
 -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2년 이상 근속공무원)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영 제44조)
 - ※ ‘2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60%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70% 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40% 지급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예 시

○ 2013. 7. 10. 대학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 지급 방법은?

☞ 휴직 전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지급률 : 연봉월액의 60% 지급

☞ 7월분 연봉월액 : 3,150,950원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휴직 전 연봉월액 : $4,400,000\text{원}/31\text{일} \times 9\text{일}(7.1 \sim 7.9) = 1,277,410\text{원}$
→ 1,277,419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휴직 후 연봉월액 : $(4,400,000\text{원} \times 60\%)/31\text{일} \times 22\text{일}(7.10 \sim 7.31) = 1,873,540\text{원}$
→ 1,873,548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8월 이후 연봉월액 : 2,640,000원(→ 연봉액 52,800,000원 ÷ 12월 × 60%)

-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음

나. 직위해제(영 제48조)

◦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연봉월액의 70% 지급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를 지급

다. 징계처분(영 제45조)

◦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30% 지급

◦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0% 지급

 예 시

○ 2011. 5. 10. 대학 교원이 징계처분(정직 3월 : 2011.5.10. ~ 2011.8.9.)된 경우 연봉 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 : 53,55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연봉월액의 30%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2,245,640원(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62,500\text{원}/31\text{일} \times 9\text{일}(5.1 \sim 5.9) = 1,295,560\text{원}$
→ 1,295,564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연봉월액 $(4,462,500\text{원} \times 30\%)/31\text{일} \times 22\text{일}(5.10 \sim 5.31) = 950,080\text{원}$

☞ 6월분, 7월분 연봉월액 : 1,338,750원

→ 연봉월액 4,462,500원×30%

☞ 8월분 연봉월액 : 3,555,59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 연봉월액 (4,462,500원×30%)/31일×9일(8.1~8.9) = 388,660원 *일원 단위 절사

- 연봉월액 4,462,500원/31일×22일(8.10~8.31)=3,166,930원 *일원 단위 절사

라. 복직

-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 복직 :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예 시

○ 징계처분(정직)된 대학 교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되어 2011. 5. 10. 복직된 경우 연봉 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 47,800천원(가정)

☞ 정직처분 기간 중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30%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173,80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3,983,330원×30%)/31일×9일(5.1~5.9) = 346,930원 *일원 단위 절사

- 연봉월액 3,983,330원/31일×22일(5.10~5.31) = 2,826,870원 *일원 단위 절사

 예 시

○ 대학 교원이 2013. 3. 1~2015. 2. 28까지(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5. 3. 1자로 복직할 경우, 2015년 복직 시의 연봉 책정 방법은?

※ 설정조건

- ① 기본연봉 61,785천원, 성과등급 S등급, 성과연봉 기준액 320만원, 성과연봉 최초 지급월 6월 가정
- ② 휴직기간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에 포함하되, 이 기간 중 성과등급은 낮게 받은 것으로 가정 (단, 휴직 시작일 당시의 등급은 휴직기간 전의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하므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가정)

·2013년도 : S등급(지급률 1.7β), ·2014~2015년도 : C등급(지급률 0β)

<2013년 연봉 책정>

☞ 2013년 연봉액 : 67,225천원(기본연봉액 61,785천원 + 성과연봉액 5,440천원)

☞ 2013년도 연봉월액 산출내역

- 기본연봉 월액 : 5,148,750원(기본연봉액 61,785천원÷12월)

- 성과연봉 월액 : 453,330원(성과연봉액 5,440천원÷12월)

※ 453,333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2013년도 성과연봉 지급액 : 1~2월분 미지급액을 6월에 지급
→ 453,330원×2개월=906,660원

※ 2013년 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월별	기본연봉액	성과연봉액	계	월별	기본연봉액	성과연봉액	계
1월	5,148,750원		5,148,750원	8월			
2월	5,148,750원		5,148,750원	9월			
3월				10월			
4월				11월			
5월				12월			
6월		906,660원	906,660원				
7월				계	10,297,500원	906,660원	11,204,160원

<2014년 연봉 책정>

☞ 2014년 연봉액 : 2014년 기본연봉액+2014년 성과연봉액

※ 2014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13년 기본연봉액 + 정책조정액(2013년 성과연봉 중 일부 가산액)
↳ 처우개선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2014년도 기본연봉액 : 64,070천원(①+②)

→ 64,069,800원을 최종 백원 단위에서 절상

① 2013년 기본연봉액 : 61,785천원

② 2014년 정책조정액(누적비율 42% 가정) : 5,440,000원 × 42% = 2,284,800원

☞ 2014년도 성과연봉액 : 0원

☞ 2014년도 연봉액 : 64,070천원(기본연봉액 64,070천원+성과연봉액 0원)

☞ 2014년도 연봉월액 : 5,339,160원(연봉액 64,070천원÷12월)

→ 5,339,166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육아휴직자에게는 연봉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으나, 복직 시 연봉 산출을 위해 매년 연봉의 책정이 필요

<2015년 연봉 책정>

☞ 2015년 연봉액 : 2015년 기본연봉액+2015년 성과연봉액

※ 2015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14년 기본연봉액 + 정책조정액(2014년 성과연봉 중 일부 가산액)
↳ 처우개선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2015년도 기본연봉액 : 64,070천원(①+②)

① 2014년 기본연봉액 : 64,070천원

② 2015년 정책조정액 : 0원

- ☞ 2015년도 성과연봉액 : 0원('15년 성과평가 C등급 가정)
- ☞ 2015년도 연봉액 : 64,070천원(기본연봉액 64,070천원+성과연봉액 0원)
- ☞ 2015년도 연봉월액 : 5,339,160원(연봉액 64,070천원÷12월)
→ 5,339,166원에서 일원 단위 절사
- ※ 육아휴직자에게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2월 지급액은 없음
- 2015. 3. 1자로 복직하므로 3월부터 연봉월액 지급

월별	기본연봉액	성과연봉액	계	월별	기본연봉액	성과연봉액	계
1월			-	8월	5,339,160원		5,339,160원
2월			-	9월	5,339,160원		5,339,160원
3월	5,339,160원		5,339,160원	10월	5,339,160원		5,339,160원
4월	5,339,160원		5,339,160원	11월	5,339,160원		5,339,160원
5월	5,339,160원		5,339,160원	12월	5,339,160원		5,339,160원
6월	5,339,160원		5,339,160원				
7월	5,339,160원		5,339,160원	계	53,391,600원	-	53,391,600원

마. 결근(영 제46조제1항)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 때 1일에 대하여 연봉 일액의 40%를 지급

※ '결근일수'(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결근시간수)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한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연가 시간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바. 무급휴가(영 제46조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일액을 감함

1. 기본연봉 예산

- 기존 인건비 산정 방식에 따라 배정 : 직급별 평균단가 × 교원 정원
 - 기획재정부에서 직급별 평균호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직급별 평균단가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기초로 산정
 - 성과연봉의 차년도 일부 반영에 따른 기본연봉 증가분은 직급별 평균단가에 반영

2. 성과연봉 예산

- 대학별 교부액 산정 : 성과연봉 기준액* × 대학별 교원 정원
 - * 성과연봉 기준액 : 국립대학 전체 성과연봉 재원을 국립대학 전체 성과연봉 지급대상 교원 수로 나눈 금액
- 2010년도 기준 금액 : 약 315만원(≒ 504억원* ÷ 약16,000명)
 - * 504억원 : 조교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 23억원을 제외한 금액

3. 기존의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

- 근거 :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90호)
-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학 교원에게 지급해오던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은 순차적으로 성과연봉 예산으로 전환
- '12년~'14년도까지 성과연봉 예산은 기존의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과 함께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사업비'로 배정
- 성과연봉 예산은 '인건비' 세목으로,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은 '민간이전비' 세목으로 구분·편성
- '15.1.1. 전면 시행 이후에는 조교분을 제외한 성과급 연구보조비 전액을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
 - ※ 단, 조교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은 별도 사업으로 계속 유지

<성과연봉 및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구분>

【교과부의 성과연봉 예산 편성】

- '12년 예산 : '11년도 임용된 신입교원의 성과연봉 계상
- '13년 예산 : '11~'12년도 임용된 신입교원 및 기존 비정년 교원의 성과연봉 계상
- '14년 예산 : '11~'13년도 임용된 신입교원 및 기존 비정년 교원의 성과연봉 계상
- '15년 예산 : 모든 교원 성과연봉 계상

【대학의 성과연봉 지급】

- '11년 :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 '12년 : 신입교원은 성과연봉, 기존교원은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 '13~'14년 : 신입교원·비정년교원은 성과연봉, 정년보장교원은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 '15년 : 모든 교원 성과연봉 지급, 성과급 연구보조비: 폐지(조교분만 유지)

1.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실적 및 계획」 제출

- 기 한 : 매년 5월 말일
 - ※ '11년도는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
- 내 용
 - 당해연도 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책정 결과
 - 기존의 국고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운영실적(전년도분) : '15년까지 한시
 - 다음연도 성과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계획 등

< 성과급적 연봉제 향후 운영계획 수립·제출 >

- 제출기한 : '11. 8. 31.(수) 예정
 - ※ 기재부·행안부와 지침(안) 협의 후 확정된 지침 시달 시 변경 가능
- 제출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교육선진화정책관실 대학선진화과
 - ※ 직제개편 시 소관부서 변경 예정
- 문서형식 : 가급적 조문화한 법령 형태로 작성
 - ※ 예시 : 「○○대학교 학칙», 「○○대학교 성과급적 연봉제 및 교원업적 평가 운영 규정», 「○○대학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등
- 구성체계 : 각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포함할 내용
 - 평가단위, 평가주체, 평가기준,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등급별 지급액 비율 및 성과연봉액,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일정, 평가절차, 평가대상기간, 지급방법, 불복구제절차, 비밀유지, 기타 필요사항 등
 - 부록(직급별 교원 현황, 평가단위별 교원 현황, 평가단위별 평가기준, 업무담당자 현황 등)
 -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운영실적('10년도)」 : 업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 지침, 평가등급, 지급시기, 지급단위, 등급별 1인당 지급기준액, 지급단위별(단과대학, 학과 등) 성과급 지급 내역 등과 차등배분 내역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하되, 양식 제한은 없음)

2. 불복 구제절차 마련

- 대학의 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교원에게 개인별로 성

과평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대학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대학의 장이 교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평가결과를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

3. 기존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운영

- '11년~'14년까지는 성과급적 연봉제 비전환 교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별로 배분된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비' 중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율 집행
 - ※ 근거 : 「국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비' 내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
- 업적평가는 평가단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되, 직급에 따른 차등화나 일부 우선 배정 등 성과와 무관한 요소를 고려한 균등 배분 지양

<성과급 연구보조비 균등 배분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제기>

- ▷ ('06년도 국회 결산심의) 등급 간 차액 없이 일률 지급한 대학에는 교부액 조정 등 성과급 연구보조비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차등 교부의 폭 확대 필요
- ▷ ('09~'10년도 국정감사)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균등 배분 경향 개선 요구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10.2.8, 의안번호:7577), 교원에게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대학에 대한 예산 배정 금지 등 규정

- 연봉제 적용 교원에 대한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여부 : 대학 자율 결정
- 기존 교원에 대한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을 위한 평가단위, 평가기준 및 내용, 평가기준일 등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본격 시행을 대비하여 보완 운영

※ 특히, 현재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을 위한 교원 업적평가 기준일이 8월 말일인 대학은 2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4. 최초 연봉 책정 시 유의사항

◦ 성과급적 연봉제 최초 적용연도(1차연도)의 기본연봉은 '호봉제'를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기본연봉 책정 시 호봉재획정 사유(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등)가 누락되어 연봉 책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5.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소관 부서 변경

◦ 당초 「성과급적 연봉제 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지침」 시달 이후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실 대학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직제개편이 진행 중에 있어 직제 개편 후 변경된 소관부서로 이관예정

참고

수당, 연금, 가산금 결정 방법

아래 수당 외의 수당은 기존의 지급 방법과 동일함

□ **관리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9조 제11항)

<규정>

-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연봉 외 급여로 지급(영 제 19조제11항)

<대학에서의 실제운영 상황>

- 총장을 제외한 대학 교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며,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않음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구분	근거	지급대상	예산과목	비고
관리업무수당	영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별표13】(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특1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방송통신대 제외)의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서울대의 경우 기획실장), 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인건비 (110-01)	총장에게 지급
직급보조비	영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별표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총장(특1호봉), 총장(특2호봉), 부총장, 전문대학장, 단과대학장, 학과장(학장보), 전문대학 학과장	인건비 (250-01)	총장에게 지급
교수보직경비	예산편성지침	·보직교수	교육기반 조성사업비 (250-04)	총장 미지급

<규정 개정결과>

- 실제로는 변동사항 없음

1. 관련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제42조(장기급여),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제48조(퇴직일시금)

2. 용어의 개념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적용 방법

가.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나.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함)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 기여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 ※ 기여금 징수액 : 기준소득월액의 7% 상당액('11년도는 6.7%).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100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66조제2항)

라. 부담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 ※ 부담금 징수액 :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 상당액(법 제69조제1항)

마.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전년도 기준소득*—공무원에게 전년도에 지급된 6개 보수 연간지급액**)÷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6개 보수의 연평균액}÷12월×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 * 전년도 기준소득 : 전년도(1.1~12.31)에 공무원 보수 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 ** 6개 보수 종류 및 연간소득

- ①성과연봉, ②성과상여금, ③직무성과금(판·검사), ④상여금(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⑤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⑥연가보상비의 연간 지급받은 금액

<설명>

-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6개 보수 종류' 중 '성과연봉'만 해당
- 6개 보수는 개인의 실수령액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액을 반영한다는 취지이므로,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성과연봉은 개인의 실수령액을 반영하지 않고 국립대학 교원 전체 평균액을 반영

바. 기준소득월액 적용 방법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 매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 기준소득에 포함되는 보수 범위

성과연봉	국립대학 교원 전체 평균액 반영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과세소득	➔	기준소득 ○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초과급식비(월 30,000원)					
정액급식비(월 100,000원)		비과세소득	➔	기준소득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					
성과급 연구보조비		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는 과세소득	➔	기준소득 ×	

3. 급여 산정 방법

가. 퇴직급여 산식

- 퇴직연금액 :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상당액. 이 경우, 퇴직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하지 못함(법 제46조제4항)

구 분	종전법 적용기간	개정법 적용기간		관련 법령
퇴 직 일 시 금	○ 5년 미만 보수월액×재직연수×120/100	○ 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 ×78/100	많은 급여 지급	법48

구 분	종전법 적용기간	개정법 적용기간	관련법령
		기여금×민법이자	법48
	○ 5년 이상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100)}×(종전 재직연수/총재직연수)	○ 5년 이상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65/10,000)}×(개정 이후 재직연수/총재직연수)	법46
퇴직연금 일시금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100))×(종전 재직연수/총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65/10,000))×(개정 이후 재직연수/총재직연수)	법46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100) (종전기간/총재직연수) (평균보수월액×(50+20년 초과 재직연수×2)/100)(종전기간/총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65/10,000) (이후기간/총재직연수)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총재직연수×(이후기간/총재직연수)	법46
퇴직연금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개정 전 20년 초과재직연수×2/100) ※ 종전기간 20년 미만자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개정 후 재직기간 ※ 연금액 상한 : 평균기준소득월액×1.8배	법46
조기퇴직 연금	퇴직연금의 75%~95% ※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적용 지급	퇴직연금의 75%~95% ※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적용 지급	법46

나. 퇴직수당 산식

종전법 적용기간	개정법 적용기간	관련법령
(보수월액×총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종전 재직연수/총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종전 재직연수/총재직연수)	법61 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5년 미만 : 보수월액×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보수월액×35% • 10년 이상 15년 미만 : 보수월액×45% • 15년 이상 20년 미만 : 보수월액×50% • 20년 이상 : 보수월액×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5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650/1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2,275/10,0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2,925/10,0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3,250/10,000 • 20년 이상 : 기준소득월액의 3,900/10,000 	

Ⅲ

신임교원 및 승진교원 가산금 결정방법

1. 신임교원 가산금 결정 방법

- 임용 첫 해에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지급하고, 임용 다음 해에 성과연봉을 처음 지급하므로 임용 다음해에 성과누적분이 기본연봉에 가산되지 않아 평균 호봉승급분 만큼을 신임교원 가산금으로 임용 2차년도에 한하여 기본연봉에 산입
- 43개 국립대학의 교원 신규임용 시 평균호봉이 **15호봉**이므로, **15호봉**부터 근가 **10호봉**까지의 호봉간 보수인상액의 평균액을 가산하되, 매년도 봉급액과 그에 따른 수당 증액을 감안하여 산정
 - 단, 연봉 외 급여항목 중 일부(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는 포함하지 않음

$$\{(근가10호봉 연보수총액* - 근가9호봉 연보수총액) + (근가 9호봉 연보수총액 - 근가 8호봉 연보수총액) + (\dots) + (17호봉 연보수총액 - 16호봉 연보수총액) + (16호봉 연보수총액 - 15호봉 연보수총액)\}/28년**$$

◦ 신임교원 가산금 결정 방법

* 연보수총액 :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의 연액(年額)으로서 ‘연봉 외 급여항목’ 중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음

** 28년 : 15호봉부터 근가 10호봉까지의 연수(年數)

예 시

○ 2011년도 봉급표 기준, 신임교원 가산금 산정 방법

$$\begin{aligned} & \{(근가10호봉 연보수총액 - 근가9호봉 연보수총액) + (근가 9호봉 연보수총액 - \\ & \quad - 근가 8호봉 연보수총액) + (\dots) + (17호봉 연보수총액 - 16호봉 연보수총액) \\ & \quad + (16호봉 연보수총액 - 15호봉 연보수총액)\}/28년 \\ & = \{(74,551,680원 - 73,760,740원) + (73,760,740원 - 72,969,800원) + (\dots) + (38,513,180원 \\ & \quad - 36,949,970원) + (36,949,970원 - 35,399,520원)\}/28년 = 1,398,291원 \\ & \text{☞ 2011년도 신임교원 가산금 : 1,399,000원} \end{aligned}$$

2. 승진교원 가산금 결정 방법

◦ 연봉제 적용 교원 중 직명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변동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

※ 호봉제 적용 시,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의 경우, 1호봉을 승급할 수 있는 규정을 연봉제에 반영한 것으로서 조교수 승진에 한함

◦ 43개 국립대학의 조교수 승진 임용 시 평균 호봉이 17호봉이므로 승진 임용 후 1호봉이 가산된 18호봉과 17호봉간 보수인상액을 가산하되, 매년도 봉급액과 그에 따른 수당 증액을 감안하여 산정

- 단, 연봉 외 급여항목 중 일부(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는 포함하지 않음

◦ 승진교원 가산금 결정 방법

$$\text{승진교원 가산금} = \text{18호봉 연보수총액*} - \text{17호봉 연보수총액}$$

* 연보수 총액 산정 방식은 '신임교원 가산금' 산정 시의 경우와 같음



예 시

○ 2011년도 봉급표 기준, 승진교원 가산금 결정 방법

☞ (18호봉 연보수총액-17호봉 연보수총액)=40,094,400원-38,513,180원=1,581,220원

☞ 2011년도 승진교원 가산금 : 1,582,000원



대통령령 제22617호[2011. 1.10 공포]
행정안전부(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격"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3천 400원,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은 5만 5천 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이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책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때에는 채용 다음 연도에만 139만 9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제37조(승진 시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53만 4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80만 5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76만 6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하고, 전임강사인 국립대학의 교원이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58만 2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그 다음 상위의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25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35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그 밖의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7>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국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98,400	21	3,145,000
2	1,648,700	22	3,241,500
3	1,699,300	23	3,367,700
4	1,749,700	24	3,493,400
5	1,800,400	25	3,618,900
6	1,855,700	26	3,744,600
7	1,911,100	27	3,870,100
8	1,966,800	28	3,995,800
9	2,050,000	29	4,091,200
10	2,133,500	30	4,187,000
11	2,217,100	31	4,282,400
12	2,300,200	32	4,377,800
13	2,383,200	33	4,473,400
14	2,466,200		
15	2,563,600		
16	2,660,900		
17	2,757,700	특4	5,021,700
18	2,854,400	특3	5,265,900
19	2,951,900	특2	6,219,900
20	3,048,300	특1	6,332,700

비고

-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특호봉 봉급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확정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96,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47,0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618호[2011. 1.10 공포]
행정안전부(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7>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0.5.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

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10.7.26>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

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⑥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 의사, 징병검사전담 의사, 국제협력 의사, 공중방역 수 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1>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 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 의사·징병검사전담 의사·국제협력 의사·공중방역수 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1>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 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 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 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 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0339호[시행 2010. 7. 5]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02-2100-4159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

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다.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③ 공무원인 자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관 퇴직급여 <개정 2009.12.31>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

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8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

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02-2100-4159

제3조의2(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한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수나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3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년도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3조의4 또는 제3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에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

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순직유족연금 및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제1호의 금액에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 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4(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전문개정 2010.1.1]

제3조의5(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8(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액 연봉제 운영지침

- ◆ 발 행 일 : 2011년 1월 일
- ◆ 발 행 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대학교원운영선진화팀)
- ◆ 내용문의 : (02)2100-8689, (02) 2100-8699
- ◆ 기획·편집
 - 대학선진화과장 오태석 대학교원운영선진화팀장 김두용
 - 행정사무관 신인섭 주무관 류승의, 진재웅
- ◆ 인쇄처 :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anuary, 2011

【참고자료 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학장 임명제 및 대학교원 특별채용 등 규정)
(2011. 02. 01 공포)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1.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선출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학장의 임용방식을 총장 직접 임용제로 단일화하고, 대학 교원 특별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학 교원 특별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안 제9조의3 신설)

- 1) 대학이 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별채용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정실이나 특혜에 의한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 2) 특별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

학별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함.

3) 대학 교원의 특별채용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채용이 가능해지고 특별채용방식에 의한 우수 교원의 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립대학 단과대학 학장 임용방식 개편(안 제9조의4 신설)

1)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의 단과대학 학장은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학장 후보자를 교수회에서 선출한 후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은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학장을 임용하고 있어 선거과정의 과열로 인하여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학별이기주의로 인하여 총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립대학 총장이 단과대학 학장을 임용할 때에는 별

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직접 임용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3) 국립대학의 과잉 정치화로 훼손된 연구·면학 분위기를 바로 잡고, 총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1. 24. ~ 1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제9조의5 및 제9조의6으로 하고,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교원특별채용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특별채용할 때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앞서 특별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채용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 중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채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제9조의6(중전의 제9조의4)제1항 중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단과대학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3(교원특별채용위원회)</p> <p>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특별채용할 때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특별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특별채용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p> <p>③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 중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p> <p>④ 특별채용 심사 대상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제9조의3 (생 략)</p> <p><신 설></p> <p>제9조의4(원로교사의 우대등) ① <u>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 교사” 라 함은 제9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 를 말한다.</u></p> <p>②·③ (생 략)</p>	<p>⑥ <u>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채용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u></p> <p>제9조의5 (현행 제9조의3과 같음)</p> <p>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u>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 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 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 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 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 다.</u></p> <p>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등) ① ----- “원로 교사” 란 제9조의5제2항에 따 라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917

【참고자료 4】 서울대학교 법인화 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법인화토론회자료집

서울대학교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1년 1월 28일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

Contents

□ 발제

- 발제1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 배 균
- 발제2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시사점
..... 23
서울대학교 前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박 성 현

□ 토론

- 토론 1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최 갑 수 41
- 토론 2 전북대 교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박 병 덕 59
- 토론 3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수회장 김 필 동 69
- 토론 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장 오 태 석 76
- 토론 5 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이 향 철 80

서울대학교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1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 배 군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박 배 균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0년 12월 8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 되었다. 그날 한나라당은 201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직권상정하여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예산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도 같이 날치기로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1946년에 태어난 국립서울대학교가 64년을 겨우 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사망신고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립서울대학교는 2012년부터 법인화된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날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 이러니 하계도 서울대 법인화법안의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는 서울대 법인화가 중요한 사회-정치적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날치기 처리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대 법인화법안의 폐기를 주장하였으며, 서울대에서는 교수, 직원, 학생들이 법인화 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법인화 무효화를 위한 천막농성을 2010년 12월 20일부터 대학 본부 앞에서 시작하였고, 현재 3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 한 달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차 많은 국민들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서울대 법인화가 무엇 이길래, 정권과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도 없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을까? 도대체 서울대 법인화법이 무엇이 문제 이길래, 서울대의 교수, 직원, 학생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추진의 필요성으로 1) 법인화는 세계적 추세, 2) 법인화를 통해 대학 스스로가 체질을 개선하고 내부혁신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율권 확보, 4) 획기적인 재정 확충과 교육, 연구 역량의 강화, 5) 법인화 국립대학의 모델 대학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들이 충분한 논리적 인과관계와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체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와 경쟁에 대한 신화적 믿음에 근거한 허구적 주장이라 문제제기 하고, 더 나아가 서울대의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지식공동체” 와해를 촉진시켜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서울대 법인화 추진과정과 법인화법안의 내용

법인화는 미국식 대학지배구조의 이식을 뜻한다. 서울대 법인화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멀게는 해방 직후부터, 직접적으로는 1995년부터 국립대 법인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1946년에 서울대가 국내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출범했을 때, 미군정은 미국 주립대학의 지배구조를 적용하여 “법인”의 형태로 서울대학을 만들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일본(독일)식 대학 모델을 지향하는 세력과 미국식 대학 모델을 지향하는 세력 간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이는 소위 “국대안” 파동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표출되어, 미군정의 서울대 법인화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1987년 국립대 법인화라는 화두가 다시 제기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립대 법인화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는 1995년 이수성 총장 재임 시절 ‘서울대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법인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심각히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본처럼 모든 국립대학을 한꺼번에 법인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큰 반발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울대 발전을 추진하던 세력과 법인화 추진 세력이 결합하면서, 국립대에 대한 ‘선택적 법인화’라는 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장무 총장이 재임하던 2009년에 서울대는 교과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 서울대의 법인화추진론자들은 법인화의 효과로서 자율성의 제고와 함께 정부로부터의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대표되는 당근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당근들은 서울대 법인화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거의 삭제되었다.

표 1. 서울대 법인화 주요 연혁

년월	내용
1987년	국립대 법인화의 화두가 처음으로 나타남
1995-96년	이수성 총장, ‘서울대특별법’의 제정 시도
2004년	노무현 정권,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하려는 시도. 큰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자 이후 교육당국은 ‘선택적 법인화’로 새 방안을 모색함
2005년	정운찬 총장, 법인화TF팀 구성함
2007년	이장무 총장,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함
2009년 7월	서울대법인화위원회, ‘서울대법인화방안 연구보고서’
2009년 9월	교과부, ‘서울대법인화법안’ 입법예고
2009년 12월	국무회의, ‘서울대법인화법안’ 의결
2009년 12월	서울대, 국회에 수정안 제출
2010년 1월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 구성: 서울대민교협,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총학생회(당시는 단과대학학생장연석회의)
2010년 12월 8일	‘서울대법인화법안’ 원안대로 국회 통과
2011년 1월	민주당, 위 법안의 ‘폐기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지배구조의 변경이다. 즉 법인화란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가졌던 공법상 영조물(營造物)인 동시에 공법상 사단(社團)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법인격의 주체로 변모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신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법인격의 중심은 학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되며, 총장직선제는 자동 폐기된다. 이러한 대학지배구조의 변화와 함께, 대학의 인사 및 조직운영도 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장이 장악하고, 인사 및 보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가 지니고, 교직원 신분은 법인 소속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예산 회계제도도 변하게 되어, 품목별 예산제(line-item budget)가 정액교부금제(block grant)로 변모하고, 재무경영협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사회가 의결하게 된다.

표 2. 서울대법인화법안 주요 내용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안 제1조).
2. 서울대학교의 교원, 직원과 조교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함(안 제8조).
3.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함(안 제11조).
4.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3조).
5. 서울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초대 총장은 이사장을 겸임함(안 제16조).
6.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구성된 평의회를 둠(안 제20조).
7. 교육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구로 학사위원회를 두고, 재무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구로 재정위원회를 둠(안 제21조 및 제22조).
8.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안 제24조).
9.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출연금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및 제33조).
10. 대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음(안 제29조).
11. 국가는 최소한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연도의 국고지원금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여야 함(안 제34조).
12. 4년 단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사업연도 개시 전에 그 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안 제36조).
13.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기성회계 직원은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지 않는 교직원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있음(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14.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되 서울대학교 재직기간을 소급하여 합산할 수 있음(안 부칙 제6조).

그런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안은 애초에 서울대 당국이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던 원안과는 크게 달라진 안이었다. 2009년 7월, 서울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서울대 법인화법의 원안은 내부자 중심의 대학지배구조와 서울대에 대한 특혜적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어 서울대 내부의 법인화 찬성론자들이 원하는 자율성의 제고와 재정 확보를 상당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9년 9월 교과부가 ‘서울대 법인화법안’을 입법 예고할 때는 외부자 중심의 지배구조와 정부통제가 강화되는 안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서울대법인화법안’이 의결될 때는 외부자 중심의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서울대에 대한 특혜 조항이 무더기 삭제되고, 이 전에 약속되었던 국고지원 확대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며, 행정직원의 신분보장조항이 삭제되는 식으로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국무회의 의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법인화를 추진해 왔던 서울대 본부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상근감사에 관한 조항을 수정할 것과 정부의 재정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그대로 통과되게 된다.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서울대의 법인화는 서울대의 교수, 직원, 학생들에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과 학문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제도적 변화이다. 그런데, 이는 1)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의 미비로 인한 정당성 부족의 문제, 2) 법인화 대세론이라는 허구적 전제, 3) 대학의 경쟁력 약화, 4)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 훼손, 5)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학문의 발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다.

1. 법인화 추진의 비민주성: 정당성 결여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심각한 정당성 결여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2009년 서울대 본부가 교과부에 제출할 법인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아예 없었다. 게다가 2009년 7월까지도 법인화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대학 본부는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대외비 사항이라는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내의 여러 다양한 성원들이 법인화 추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대학 본부와는 다른 법인화 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대학본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울대 본부는 각 단과대학을 돌면서 공청회를 개최 하였지만, 자신들의 법인화 법안을 홍보하는 자리에 불과했고, 교수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지한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울대 내에서 법인화 입법이 공식화된 것은 대의기구 지위를 가진 대학평의회에서의 의결을 통해서인데, 교수들의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법인화를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 의결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본부 측에서 법인화안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된 것이라고 홍보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서울대의 대학평의회가 대의기구로서의 실질적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모름지기 어떤 조직의 미래와 그 구성원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하는 대의기구라면, 그것은 대의기구로서의 실질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가 고르게 대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평의원의 선출은 매우 민주적이고 엄중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서울대의 대학평의회는 대부분 각 단과대학의 고참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내의 다양한 이해와 생각을 민주적으로 대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대학평의회는 대학본부에 실질적으로 예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평의회의 의결이 현재 서울대의 제도와 규정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정당성은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평의회의 형식적 의결을 거친 법인화 법안에 대해 교직원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60% 정도가, 학생들은 80% 정도가 반대한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수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수집단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서울대학의 정체성과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인화에 대해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여론조사 혹은 총투표의 방식으로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대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인화 법안은 국회에서 마저도 극단적인 비민주성을 드러내면서 통과된다. 한국 고등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결정할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대로 된 심사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다. 이처럼 서울대의 법인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학문의 방향성과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가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를 통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법인화 대세론의 허구성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법안이 대학의 법인화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대세라는 허구적인 믿음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법인화 찬성론자

들은 “전 세계의 많은 대학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연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 운영의 자율과 책임 운영을 근간으로 하는 법인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 대학은 설립할 때부터 법인 성격으로 출발하여 자율과 경쟁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하여 세계 대학 교육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믿음과 전제는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대학의 법인화가 전세계적인 대세라는 주장은 허구이다. 일본 국립대는 법인화되었지만 법인화된 이후 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대만은 법인화를 시도하다 포기하였으며, 중국은 대학개혁이 있었지만 미국대학 식의 지배구조를 도입하지 않았다. 유럽은 대학의 일부가 법인화되었지만 그것은 별도의 공익형 법인이다. 즉, 유럽 국가에는 아예 사립대학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에 대학이 법인인 경우 기본적으로 ‘공익형 재단’의 성격을 갖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화 찬성론자들이 도입하려는 법인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결국, 법인화 찬성론자들이 바라보는 대학의 이상형은 모든 대학이 법인인 미국의 대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이 모두 법인인 것은 미국의 고등교육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해 왔다는 역사적 과정과 관계가 깊다.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국가와 공공 부문의 주도과 개입 보다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주도에 의해 형성되고 만들어져 온 역사적 전통 속에서 자유주의적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다. 따라서, 연방이나 주 정부 보다는 민간부문에 의해 설립되고 발달된 사립대학이 미국 고등교육과 학문 발달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조건 속에서 public university라 할 수 있는 주립대학들도 주정부의 직접적 관할 하에 놓이기 보다는 법인으로써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 받게 되었던 것이다. 즉, 대학의 성격은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과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나름대로 겪어 온 국가의 형성 과정과 사회발전의 역사적 과정에 의해 차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들이 모두 법인이라고 해서, 미국과는 상이한 역사-문화적 발전과정을 겪어 온 나라에 미국식의 법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그 나라의 대학교육을 발전시킬 전가의 보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또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대학 법인화의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미국의 고등교육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국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public university인 주립대학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때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이고,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립대학들이 주립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뉴욕주립대학인 SUNY-Buffalo나 뉴저지주립대학인 Rutgers대학 등이 사립대학에서 주립대학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이다. 즉,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심이고, 모든 대학이 법인인 미국에서 마저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되어 왔고, 그와 함께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확대시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법인화 대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대학이 법인이나 아니냐 라는 식의 평면적 사고 보다는 국가가 공공성의 가치를 고등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4년에 모든 국립대학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법인화되었는데, 대학의 성격이 미국의 그것과 달라 법인화된 이후에도 총장직선제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사회가 내부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추진된 법인화는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추진되는 법인화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법

인화 이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점

1. 대학예산의 축소: 대학 예산이 매년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 많은 국립대학들이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로 고생을 하고 있다.
2. 대학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법인화로 인해 국가의 통제가 줄고 대학의 자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의 업적에 대한 대학평가가 매년 실시되면서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대학의 자치가 파괴되었다.
3. 수익사업에 매달리는 일본의 대학: '법인화 이후 어떻게 외부자원을 획득할 것인가가 중요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원의 획득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산학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사하루 야나기하라 큐슈대 부총장의 증언처럼,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4. 대학 간 격차와 대학 서열화 심화: 법인화 이후 경쟁자금의 획득과 개성화, 특성화 전략에 성공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대학의 서열화와 학력/학벌주의가 더욱 심화되었다.
5. 기초학문의 배제: 법인화 이후 일본의 대학들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4분야(IT, 환경, 바이오, 나노테크)에 대학의 자원을 중점 배분하면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기초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 교직원의 고용과 신분보장이 불안정해지고 나아가 학문연구의 자유와 장기적 교육, 연구를 저해하게 되는 등 기초학문이 배제되고 있다.
6. 등록금 폭등: 법인화 이후 일본대학의 등록금이 5배까지 폭등하였다. '학생들은 법인화가 실시된 후 2~3년 사이 약 5배 인상된 등록금을 내고 있다. 공교육의 포기는 교육 예산 삭감으로 드러나고 법인화로 이어졌다. 대학들의 수익사업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료는 날로 인상하고 있다. 이른바 자주재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에다 타케오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7. 대학에서 고용불안의 급증: 법인화 이후 일본 대학에서 고용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조건을 낮추지 않는다는 참의원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동조건이 낮아지고 있다. 시간 강사료에 대한 정부 지급이 중단되고 전임강사 몫의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시간 강사의 생활고는 심각해지고 전임강사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관련하여 마사하루 야나기하라 큐슈대 부총장의 다음 증언은 참조할 만하다. "두번째는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이다. 큐슈대학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인건비의 절약에 혼열을 쏟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처럼 법인화 찬성론자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인화 대세론은 많은 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에 바탕을 둔 허구적 주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허구적 주장이 우리나라

라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에 관해서는 평준화가 우선이나, 수월성이 우선이나를 놓고 정치세력과 사회주체들이 많은 논쟁을 해 왔지만,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은 오로지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문제로만 생각해 오다 보니, 입학 이후의 대학 교육이,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세력과 사회주체들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던 것이다.

법인화가 대세라는 믿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이 신자유주의적 믿음을 바탕으로 법인화만이 살 길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유포시킨 것이다. 물론 교육당국의 이러한 추진 뒤에는 재계와 이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경제부처의 로비와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이 원하는 교과내용(‘공학인증제’ 등), 교육과 연구에 대한 통제력 행사, 졸업 후에 즉각 써 먹을 수 있는 산업노동력의 확보, 반기업 정서 내지 반자본주의 정서를 탈각시킬 필요성 등의 이유로 고등교육과 대학을 보다 쉽게 시장과 기업의 논리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원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를 위시한 국립대의 법인화는 우리나라 최대의 로비집단인 사학재단의 바람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사립대는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효과를 향수하겠다는 기대감, 국립대학을 일종의 특권체로 보는 시각 등으로 인해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바라고 방조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믿음에 기반한 교육관료들을 중심으로 재계와 경제부처, 그리고 사학 등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에서 국립대의 법인화를 추진해 왔다 볼 수 있고, 이들이 법인화 대세론이라는 허구적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시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법인화 대세론이라는 허구적 담론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데에는 대학교수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와 보신주의에 물든 교수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경쟁 논리에 기반한 법인화 찬성론자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대학 경쟁력의 약화

전세계적으로 대학의 법인화가 대세라는 주장과 함께, 법인화 찬성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레퍼토리가 법인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법인화로 인해 국립대는 국가가 제공해주던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어 보다 높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학문적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쟁의 과정은 그 동안 보신주의에 빠져있던 국립대 교수들의 학문적 각성을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결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1위 이지만, 국제적 순위에서는 하위권에 처져있는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한 경쟁의 강화를 바탕으로 세계 대학순위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틀린 주장

이라 생각하며, 법인화가 오히려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립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먼저 정부와 일부 대학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세계일류 대학의 육성과 국제적인 학술적 경쟁력의 향상은 SCI나 SSCI 논문의 편수를 늘리거나, 노벨상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표피적이고 성과주의적 업적의 획득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학의 경쟁력은 해외 학술지 출판 논문 편수, 노벨상 개수, 대학의 연구비 수주 액수 등과 같은 지표의 달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 혹은 어떤 국가의 대학 사회에서, 건강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살아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공동체가 얼마나 역동적인지와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는 1)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로운 발전, 2) 자생적인 학문재생산구조의 확립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아카데미즘을 바탕으로 한 1)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의 발달, 2) 독창성과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학문체계의 구축, 3) 대학원의 활성화와 국내 박사의 취업기회 확보를 통한 학문재생산구조의 확립, 4) 대학 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식 네트워크의 저변 확대 등이 요구된다. 즉,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학문사회에서 건전한 아카데미즘이 확립되고 그를 통해 순수학문과 기초연구가 활성화됨을 통해 그 나라 학문의 자생력과 독창성이 강화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권 대학이 거의 없으면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꾸리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여러 언론에서 지적되었듯이, 현재 서울대의 “지식공동체”는 거의 사라지고 없다.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복원이 법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경쟁과 업적주의적 평가의 압력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문에 매진하면서 대학사회에 지식공동체가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경로의존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며, 정치적 상호작용과 권력투쟁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서울대와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건강한 ‘지식공동체’가 붕괴되고, 자생력있는 ‘지식생태계’가 성립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미국대학의 성공요인이라 여겨지는 경쟁과 업적주의적 평가의 시스템을 우리나라 대학사회에 그대로 이식하면 한국의 지식공동체가 복원될 것이라 여기는 매우 몰역사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건강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국가와 시장에 의한 학문의 자율성 침해로 인한 건전한 아카데미즘의 미성숙”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이중적 지배를 강화하는 현재의 학술 및 교육정책은 연구자들이 순수학술활동과 기초연구보다는 국가 지배 엘리트와 자본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내몰리게 강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근대적 학문과 고등교육은 국가관료들의 이해와 필요에 부응하는 실용화가 강요돼 왔고, 그 결과로 한국의 학자집단은 국가 관료들이 떡고물처럼 던져주는 정부용역 프로젝트에 길들여지면서 순수한 학술적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러한 척박한 학문적 환경은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학술/교육정책에 의해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많은 교수들이 제자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용역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아카데미즘의 이상에 기초한 ‘지식공동체’를 한국의 대학사회에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과 업적주의적 평가의 압력을 강화할 법인화는 서울대의 교수, 학생, 교직원들을 학문과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각종 재원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적 로비의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을 훨씬 크게 지닌다. 이는 일본의 법인화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법인화 이후 일본의 대학 교수들은 연구 활동보다 각종 보고서 및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처럼 법인화는 붕괴되고 있는 서울대의 지식공동체를 더욱 가속적으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발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요인은 “대외 종속적 학문발전에 른다 학문적 재생산 구조의 미발달”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대미종속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서울대 교수의 다수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만큼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에서 받은 박사로는 교수가 되기 힘들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은 대학원생들에게도 잘 전해져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석사를 마치고, 혹은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한다. 결국 국내에서 독자적인 학문의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다. 법인화는 국내 학문 재생산구조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화에 수반된 경쟁주의와 업적주의,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압력은 점점 더 많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국내학술지 보다는 SCI나 SSCI 등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국내 저서 보다는 영어로 된 외국저서에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 지식과 이론의 대외종속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여기서 학문발달의 대외종속성을 우려하는 것을 세계화에 대한 경계로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서울대는 겨레와 민족의 대학으로 머물러서는 안되고, 세계의 대학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술 및 교육활동을 세계화 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대의 학문적 경쟁력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은 서울대 출신 박사들이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자리를 잡고, 또 외국의 학생들이 서울대 교수들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서울대로 유학 오게 만드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과 교육의 세계화는 국내에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들의 학술적 경쟁력이 강화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국내에서 학문의 재생산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추진되는 학술교류와 교육활동의 국제화는 학문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촉진시켜, 한국 대학사회에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다.

4.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

서울대 법인화가 초래할 중대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점이다.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고등교육은 일부 부유층 자녀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고등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에, 국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그것은 양질의 고등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의 초석을 놓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립대학을 포함한 질 높은 대학 교육이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회적 무력감과 자포자기가 널리 퍼져있다.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미비

이러한 현상의 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방기가 매우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기여는 전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4에서 보이듯이,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재정에서 정부부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이 GDP 대비 1.1%(2008년) 혹은 1.0%(2009년)이나 우리나라는 0.6%(2008년, 2009년)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부담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1.8%(2008년), 1.9%(2009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4%(2008년), 0.5%(2009년)에 비해 4배 정도 높다.

표 4.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구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발표년도										
(1990)	한 국	4.5	2.9	7.3	3.4	0.9	4.3	0.6	1.9	2.5
	OECD 평균	4.9	0.8	5.8	3.4	0.3	3.8	1.0	0.5	1.5
발표년도										
(2008)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OECD 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 OECD 교육재정조사

관련하여 표 5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정부로부터의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1990년에 5,526억 원에서 2000년도에는 2조 4,097억 원이었고,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5조 3,106억 원으로 지난 19년 동안 규모면에서 9.5배 정도 인상되었다. 하지만 GDP, 정부예산, 교육과학기술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통해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살펴보면, 2009년에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정부예산, GDP, 교육과학기술부예산 대비 각각 2.48%, 0.54%, 13.72%로서 2002년 이후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990년 이후 평균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은 2.44%, GDP 대비 평균 0.42%, 교육과학기술부예산 대비 평균 12.26%로서 상대적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20년 동안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국가의 의지는 낮은 상태로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5. 고등교육예산 규모 추이

연도	정부예산(A)	GDP 규모(B)	교육과학기술부 예산(C)	대학예산(D)	D/A	D/B	D/C
1990	22,689,433	186,690,900	5,062,431	552,664	2.43	0.30	10.92
1995	54,845,022	398,837,700	12,495,810	1,435,196	2.62	0.36	11.49
2000	93,937,057	578,664,500	19,172,027	2,409,700	2.57	0.42	12.57
2001	102,528,518	622,122,600	20,034,365	2,521,000	2.46	0.41	12.58
2002	113,898,884	684,263,500	22,278,358	2,613,300	2.29	0.38	11.73
2003	120,477,623	724,675,000	24,404,401	2,898,600	2.41	0.40	11.88
2004	126,991,802	779,380,500	26,399,680	3,028,700	2.38	0.39	11.47
2005	134,370,378	806,621,900	27,982,002	3,310,800	2.46	0.41	11.83
2006	144,807,610	847,876,400	29,127,259	3,392,500	2.34	0.40	11.65
2007	156,517,719	889,422,344	31,044,748	3,575,900	2.28	0.40	11.52
2008	183,515,764	978,498,800	35,897,425	4,824,658	2.63	0.49	13.44
2009	214,563,409	980,413,100	38,696,405	5,310,567	2.48	0.54	13.72
평균	122,428,602	706,455,604	24,382,909	2,989,465	2.44	0.42	12.26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KOSIS).
<http://www.kosis.kr>

또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교육예산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교육예산의 85%인 32조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투입되고 있고,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평생직업교육부문과 교육일반부문의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대부분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예산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평균 교육예산의 13.1%인 5조원 가량만이 고등교육에 사용되고 있다(표 6).

표 6. 교육예산 구성 현황 (2008~2010)

부문별	2008	2009	2010	평균 비중
소 계	35,939,337 (100.0)	37,317,538 (100.0)	38,115,769 (100.0)	(100.0)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31,007,245 (86.3)	31,423,956 (84.2)	32,383,583 (85.0)	(85.2)
고등교육부문	4,239,027 (11.8)	5,310,567 (14.2)	5,080,858 (13.3)	(13.1)
평생직업교육부문	528,373 (1.5)	453,512 (1.2)	525,781 (1.3)	(1.3)
교육일반부문	164,692 (0.5)	129,502 (0.3)	125,547 (0.4)	(0.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2010).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국립대의 등록금 폭등 가능성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그 절대액수에서 다른 나라의 국립대학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부족한 재원의 상당 비율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그 결과 등록금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6년 국립대에 대한 세입실태 분석결과 ‘등록금 및 회비’ 40.2%, 국고보조금 48.7%, 기타 11.1%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체 회계의 절반이 대학이 자체 운영하는 기성회계이고, 기성회계의 70.9%가 기성회비로 국립대에서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7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2008년 4,167천원이었고, 2007년 3,836.1천원에 비해 8.6% 인상되었다. 또한, 계열에 따라 천만원이 넘는 대학도 생겨났다. 사립대는 등록금이 전체 재원의 77.5%를 차지하고, 국립대도 40-50%정도를 차지한다. 미국대학이 38%이고 일본은 40%인 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고등교육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연도별 대학 등록금과 물가 상승률 비교등록금 인상율

(단위 : 천원, %)

구분	국립대학등록금총액		사립대학등록금총액		물가상승률 (C)	등록금과물가와 차이	
	금액	인상률(A)	금액	인상률(B)		국립대학 (A-C)	사립대학 (B-C)
2000	2,193	-	4,511	-	-	-	-
2001	2,300	4.9	4,799	5.9	4.1	0.8	1.8
2002	2,471	7.4	5,109	6.9	2.7	4.7	4.2
2003	2,654	7.4	5,52	6.7	3.6	3.8	3.1
2004	2,9.3	9.4	5,776	5.9	3.6	5.8	2.3
2005	3,115	7.3	6,068	5.1	3.1	4.2	2.0
2006	3,426	10.0	6,472	6.6	3.3	6.7	3.3
2007	3,836	9.7	6,917	6.9	2.5	7.2	4.3
2008	4,167	8.6	7,383	6.7	4.7	3.9	2.0
평균	2,872	8.1	5,728	6.3	3.5	4.6	2.9

출처 : 반상진(2009)대학재정과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77호』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부족은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의 하나는 대학수업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비중이다. 표 8에서 보이듯이,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31.2명으로 이웃하는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에 해당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비중이 그 만큼 적다는 것과 교육의 질이 그 만큼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표 8.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랑스	영국	핀란드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스웨덴
학생 수	31.2	17.1	16.4	15.8	15.1	14.9	12.5	11.9	9.0

자료: 2008 OECD 교육지표.

표 9는 2012년까지의 교육분야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여주는 것인데, 표에서 보듯이 2012년까지 전체 교육분야의 예산은 7.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나, 고등교육 예산은 5.6%의 증가율만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예산에 있어서 고등교육에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필자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법인화 시도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표 9.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 교육 분야	355,551	386,731	414,200	444,000	476,300	7.6
•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307,631	338,712	362,276	387,882	417,427	7.9
• 고등교육부문	41,811	41,840	45,471	49,426	51,937	5.6
• 평생직업교육부문	4,464	4,895	5,092	5,251	5,408	4.9
• 교육일반부문	1,645	1,285	1,361	1,441	1,528	-1.8

출처: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그런데, 서울대의 법인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더 확대시키는 사건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에, 국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그것은 양질의 고등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의 초석을 놓는다.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이 다양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하더라도,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사실 등록금 이외에 재원 확보의 뾰족한 방안은 없다. 2009년 현재 서울대 총수입(기성회계와 일반회계의 합산) 중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1.5%, 55%, 13.6%다. 국고지원이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대는 전체 수입의 1/3을 차지했던 등록금 수입의 증대를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이미 서울대는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계획하면서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내합의를 이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서울대가 법인화되더라도 등록금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등록금 상한제는 사립대학의 위헌소송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준수마저 외면하면서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의 움직임에 서울대가 가세하면 등록금 상한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이미 서울대를 포함한 우리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화란 사실상 국가가 고등교육을 방기하고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근저로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기초, 순수학문의 고사 위기

법인화는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법인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또 다른 경우이다.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은 기업활동이나 국가의 정책적 수요에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고부가가치의 응용학문이 성립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적 실증데이터나 이론적,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학문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운용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들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의 공공적 가치는 매우 크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한 국가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학문사회의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어느 정도로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기능하느냐에 달려있고, 이러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의 발달을 위해서 순수,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전체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립대학이 수행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이들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을 육성, 발전시킴에 있어서 근거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은 그 동안 기초, 순수학문 성장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던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미비는 우리나라에서 기초, 순수학문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었다. 2001년에 우리의 총 연구개발비는 125억불로 51개국 가운데 8위에 해당하며, 이것은 GDP 대비 2.921%로 51개국 가운데 5위에 이른다.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가 탄탄한 현실적 근거를 가진 것임을 이 수치들은 잘 보여준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의 부담, 곧 공공재원의 비율은 26%에 불과하여 여타 선진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뒤지며 GDP 대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에 뒤진다.

대학의 연구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부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대학에 투자된 비율인데, 2001년에 그것은 23.9%에 불과하여 미국(35.1%), 영국(46.7%), 독일(43.9%), 프랑스(41.1%), 일본(37.8%)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비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기업체의 비율(76.2%)이 가장 높고 대학의 비율(10.4)은 가장 낮았다(나머지는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13.4%임). 참고로 나라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가운데 대학이 수혜 받는 비율은 미국(13.6%), 일본(14.8%), 독일(16.1%), 영국(20%), 이탈리아(25.1%) 등이었다. 이렇듯 대학의 연구능력을 키우는데 정부의 지원이 빈약하니 기초연구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역시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의 용처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할 때, 전체 개발연구비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12.6%, 24.3%, 63.1%인 반면에 대학연구비만을 고려하면 그 비율이 각기 42.4%, 30.4%, 27.2%에 이른다. 이는 기초학문을 육성하려면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을 늘려주어야 함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립대학의 존재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법인화는 이미 취약한 기초, 순수학문의 위기를 불러올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약될 상황 속에서

법인화된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학은 당장 대학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기초, 순수학문 보다는 응용학문 중심으로 대학의 재정을 운용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적 재원을 끌어오기에 더욱 힘든 처지에 있는 기초, 순수학문은 고사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본부는 기초, 순수학문을 계속 육성하겠다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기초, 순수학문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화 후 재정운용계획에서도 기초, 순수학문 육성을 위한 재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미 과멸되고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지식공동체의 붕괴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더 나아가 대학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5. 대학민주주의의 파괴와 대학의 자율성 훼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핵심적 요소는 대학지배구조의 변화이다. 서울대는 법인으로 변하면서, 새 법인격의 중심은 학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되며, 총장직선제는 자동 폐기된다.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장이 장악하고, 인사 및 보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가 가진다.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법인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선전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의 자율성이 높아지기는커녕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기재부장관과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차관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9조), 총장은 4년마다 교과부장관과 협의해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교과부장관은 이를 평가해 이행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제32조).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서울대가 제출한 법인화안을 바꾸면서까지 ‘자율’을 제약했다. 2009년 12월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정부는 교과부장관이 추천하는 감사 1명이 상근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며(제5조), 이는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이사회에 교과부차관과 기재부차관이 들어오고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승인 및 추천권을 갖고 있고 또 대학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상근감사가 총장을 옆에서 항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운영이 진정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와 함께 더욱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총장직선제의 폐지이다. 법인화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대학을 이상화하면서 대학의 총장을 선거로 뽑는 한국의 대학을 문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 국립대학에서의 총장 직선제가 80년대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의 결과물이고, 이를 통해 국가권력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수와 직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총장은 그 선출의 민주성 때문에 국가권력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 받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국가권력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순수한 아카데미즘의 전통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법인화로 인해 총장직선제가 폐지되고, 이사회에서 총장이 간선으로 선출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셈이 되어, 대학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저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KBS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의 경우에서 경험적으로 잘 보여지듯이, 법인화로 인

해 공기업화된 서울대에서 이사회가 총장을 뽑는 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총장선출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권력이 바뀔에 따라 서울대 총장자리는 권력자의 논공행상의 결과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한 아카데미즘을 바탕으로 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서울대에서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운영과 조직구성 등에서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법인화 반대 측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율성의 증진이 법인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예산집행, 운영, 조직구성 등에서 자율성을 가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개별 사업별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에서 포괄적 재정지원 방식으로만 바뀌어도 서울대의 자율성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훨씬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과부나 관련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대학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포괄적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굳이 법인화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방법은 매우 많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적인 방법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인화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결론 및 제언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로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1) 법안 제출과 처리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정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2) 법안이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인화 대세론의 허구성, 3)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의 붕괴 촉진으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 가능성, 4) 고등교육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 5) 대학민주주의의 파괴와 대학자율성의 훼손 가능성과 같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비민주적 날치기 처리로 인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 법인화가 폐기된다고 해서, 서울대가 이전과 같은 ‘설치령 체제’로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서울대와 한국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은 법인화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서울대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 동안 붕괴되었던 ‘지식공동체’가 복원되어야 하고,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던 순수한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진작도 대학의 경쟁력 제고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 방법이 법인화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이 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듯이, 고등교육을 살리고 ‘지식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법인화 법안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과 학문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편이 필요하다. 대학사회에 건전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

야 한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OECD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을 대폭 늘려, 고등교육재정이 GDP 대비 1.5% 이상이 지원되도록 늘려야 한다. 국립대의 자율성 강화가 국가재원의 낭비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대학 내부의 민주적 투명성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순수학문과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지식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과 학술활동의 기초 인프라로서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 강사, 연구원들이 마음 편히 학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 교수들이 제자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용역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않게 하고, 대학원생들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 않게 하며, 대학의 많은 강사들과 연구원들이 학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규교원제도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적 대학이 되고 한국의 학문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가장 기본적 출발점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지식공동체의 복원을 이루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화 법안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촉발된 현재의 갈등상황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식과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21세기에 고등교육을 새롭게 살리는 것은 4대강에 수 십조의 돈을 이유 없이 빠뜨리는 것 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과 학문의 방향성, 나아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립대 개혁방안은 특정 경제이데올로기에 경도된 교과부의 관료집단 일부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 밀어붙이기로 처리되어서는 안되고, 보다 넓은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참고문헌

서울대법인화위원회,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 요약본(초안)', 2009년 3월, 26쪽.

서울대법인화위원회,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초안)', 2009년 3월 25일, 5쪽.

서울대학교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2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시사점

서울대학교 前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박 성 현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시사점

2011년 1월 28일

서울대학교 전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성현

1 / 28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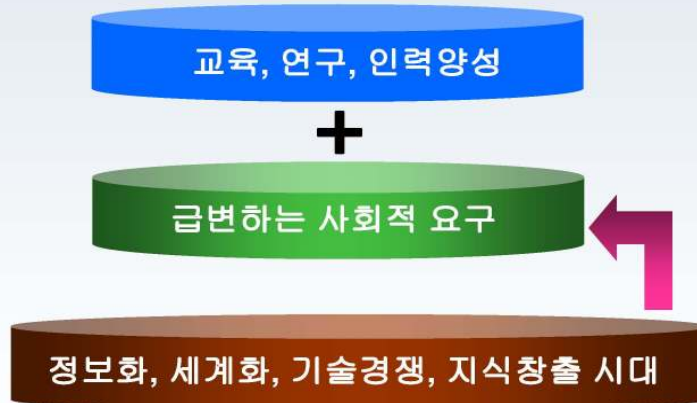
- ❖ I. 대학과 환경변화
- ❖ II. 세계 대학의 개혁
- ❖ III. 법인화 추진과정의 쟁점
 - 1. 운영체제의 쟁점
 - 2. 재정·회계의 쟁점
 - 3. 행정조직 및 인사의 쟁점
 - 4. 교육·연구의 쟁점
 - 5. 캠퍼스·시설의 쟁점
- ❖ IV. 법인화 전후의 주요 변화

2 / 28



I. 대학과 환경변화

1. 대학의 역할 변화



3 / 28



2. 대학 운영의 변화



“대학이 국가 경쟁력이다”

“대학이 바뀌면 사회도 변한다”

4 / 28



3.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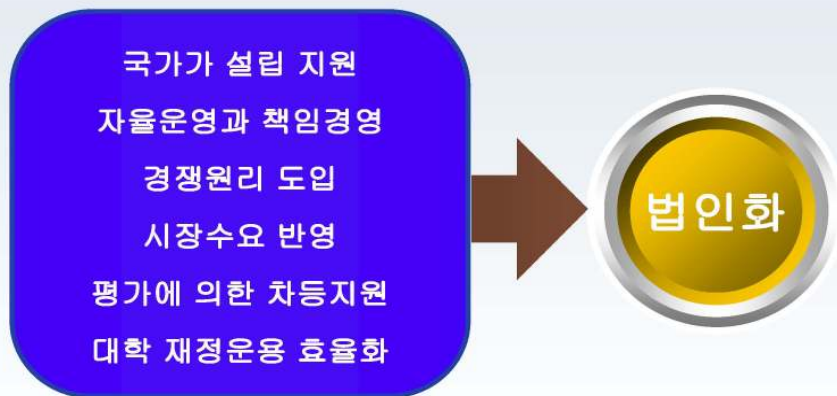
- 대학교육이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급한 대학교육 개선이 요구됨.
- 각종의 **국가경쟁력 보고서**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초,중,고,대학 종합)은 중위권.
국내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하위권.

5 / 28



4. 법인화의 필요성 대두

- 미국 대학의 경쟁력 어디에서 오는가



- 세계 각국에서 고려하기 시작

6 / 28

II. 세계 대학의 개혁



1. 유럽권

-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교황과 왕권으로부터 투쟁으로 획득
- 국가에서 100% 지원. 거의 무상교육. 실업률 증대로 대학진학 증가
- 전반적으로 관료적 비효율과 무경쟁으로 대학 경쟁력 저하

7 / 28

그러나 최근 대학에 자율성 부여하는 법인화 추진이 대세



독일:

- 1990년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으로 세계화 시대에 대학교육의 반성에서 시작
- 대학평가 도입, 등록금 징수, 대학입학제도의 개혁, 엘리트 대학 육성
- 2003년 재단형 법인화 대학으로 전환 (괴팅겐, 하노버대학 등 5개 대학)
- 2008년 프랑크푸르트대학 법인화 전환

프랑스:

- 2007년 7월: 사르코지 대통령 각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대학총장 권한의 강화를 통하여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경쟁을 유도하는 대학개혁 발표

8 / 28



2. 미국 및 캐나다

- 총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
-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 단위의 법인화 주립대학

- 총장 권한을 강화하여 관리운영조직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강력한 리더십 발휘
-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목표달성 실적에 따른 자원배분

3. 아시아권

■말레이시아

- 희망하는 대학을 우선 법인화함. 상위 5개 국립대학 법인화(1998)

■태국

- 재정적으로 견실하고 경영관리 능력이 좋은 4개 대학 법인화

9 / 28



3. 아시아권 (계속)

■싱가포르

- 도시국가 명운을 걸고 대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지
- 국가의 철저한 재정적 지원 뒷받침
- 싱가포르국립대 2006년에 법인화

■일본

- 교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
- 2004년 4월에 전국 89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중국

- 1998년에 대학에 법인격 부여하고, 자율적인 학생선발, 조직개편, 자산운영 등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임 기능 부여
-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각 권역별 산업과 학문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단과대학을 종합대학화

10 / 28



III. 법인화 추진과정의 쟁점


1. 운영체제의 쟁점

- 법인의 형태는 ?
- 이사회와 지배구조는 ?
- 총장 선출 방식은 ?
- 평의원회 구성여부는 ?



● 국내외 주요 법인화 대학의 형태

권역	국가	대학	대학 형태
국내	한국	한국과학기술원	공익 특별법인
	한국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특수법인)
유럽권	영국	캠브리지대학	독립적인 법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공법상의 재단 대학법인
	독일	괴팅겐대학	공법상의 재단 대학법인
	프랑스	파리제1대학	공법상 영조물법인
북미권	미국	미시간대학	주립 법인
	캐나다	맥길대학	주립 법인
	미국	버클리대학	주립 법인
	캐나다	토론토대학	주립 법인
아시아권	일본	도쿄대학	국립대학법인(독립행정법인)
	일본	교토대학	국립대학법인(독립행정법인)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	공익 기업형 법인




운영체제 분야

	KAIST	버클리 대학	캠브리지 대학	피팅겐 대학	도쿄대학	교토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08 The Times 대학평가	95	36	3	166	19	25	30
‘08 상하이 교통대 대학평가	201-302	3	4	90	19	23	101-151
이사회 지배구조	외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내부	외부
총장	간선	간선	간선	간선	직선	직선	간선
이사장	분리	분리	겸직	분리	겸직	겸직	분리
평의원회	○	○	○	○	○	○	× (이사회 흡수)
평가	정부	이사회	제3자	주정부	제3자	제3자	제3자

(주: 북미권, 싱가포르 대학 이사회는 외부로부터 대학에 대한 간섭을 차단해 주고 주정부, 기업, 동창회 등과 같은 대외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13 / 28

- 
- ### 가. 국내 대학 사례
-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 ❖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 :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음**
 - ❖ **교과부 장관이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받음**
- ### 나. 아시아권 대학 사례
- ❖ **도쿄대학 : 총장이 이사 선임. 부총장 5명 포함**
 - ❖ **싱가포르국립대학 : 32개 분야의 목표 및 자체 성과 평가지표를 설정**
 - **매 3년마다 교육부에서 의뢰한 외부 심사기관에 의해서 대학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 14 / 28



다. 북미권 대학 사례

- ❖ ‘사회를 대표하는’ 외부인이 지배하는 이사회가 대학의 최종의사결정을 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 ❖ 총장은 총장선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선임
- ❖ 토론토대학 : 이사회는 내부인사 25명과 외부인사 25명으로 구성함
 - 총장과 주지사가 거의 균등하게 임명

라. 유럽권 대학 사례

- ❖ 캠브리지대학 : 총장은 명예직이고 종신직. 부총장이 총장 역할
- ❖ 파리제1대학 : 총장은 대학 내부 교수 중에서 선임
- ❖ 캠브리지대학, 파리제1대학 : 여러 독립된 단과대학이 합쳐져서 설립된 대학
⇒ 내부자 지배형

15 / 28



운영체제의 쟁점에 대한 결론

- 법인의 형태는 ... 국립대학법인 (특수법인)
- 이사회와 지배구조는 ... 내부와 외부의 중간형
법인 초기에는 총장이 이사장 겸직, 그러나 이사회에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 총장 선출 방식은 ... 간선 (이사회에서 선임)
- 평의회 구성여부는 ... 구성하기로
평의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16 / 28



2. 재정·회계의 쟁점

- 항목별 예산지원 방식은 ?
- 국유재산의 관리권은 ?
- 수익사업은 가능한가 ?
- 회계 시스템은 ?
- 국가의 지원은 ?

17 / 28



재정회계의 쟁점에 대한 결론

- 항목별 예산지원 방식 ... 항목제한 없는 총액 지원 방식
- 국유재산의 관리권은 ... 관리하던 국유재산 무상 양도
- 수익사업은 가능한가 ... 가능하고 학교채도 발행 가능
- 회계 시스템은 ... 현재 국고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
- 국가의 지원은 ... 안정적 재정지원, 지원금 출연을 명시.

18 / 28



3. 행정조직 및 인사의 쟁점

- 교직원의 신분은 ?
- 대학본부 조직의 형태는 ?
- 연금 제도는 ?
- 교직원 평가는 ?

19 / 28



행정조직 및 인사 쟁점의 결론

- 교직원의 신분은 ... 비공무원 (법인 교직원)
- 대학본부 조직의 형태는 ... 부총장 3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사 연구 조직을 설치 운영.
(현재는 서울대 설치령 등에 따라 유연성 없음)
- 연금 제도는 ... 20년간 공무원 연금 적용. 단 신규 교직원은 사학연금으로.
- 교직원 평가는 ... 전면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20 / 28



4. 교육 연구의 쟁점

- 기초학문의 고사여부는 ?
- 외국교수 초빙의 까다로움은 ?
- 학생의 등록금은 인상되는가 ?
- 교수의 구분(연구교수, 교육교수 등)은 가능한가?

21 / 28



교육 연구의 쟁점에 대한 결론

- 기초학문의 고사 ...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은 법으로 보장
- 외국교수 초빙 ... 자유롭게 외국 석학 초빙 가능.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제약을 받음.
- 학생의 등록금 인상 ... 학비 부담 최소화 법으로 보장.
- 교수의 구분(연구교수, 교육교수 등) 가능.

22 / 28



5. 캠퍼스 시설의 쟁점

- 추가적인 국유재산 획득 가능성은 ?
- 캠퍼스의 확장 가능성은 ?


23 / 28



캠퍼스 시설의 쟁점에 대한 결론

- 추가적인 국유재산 획득 가능성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향후에도 무상으로 양도, 대부, 사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 캠퍼스의 확장 가능성 ... 국제캠퍼스, 주거 연계형 캠퍼스 조성, 해외 분교 설치, 복합기능형 도시대학 등 설립 용이.


24 / 28



IV. 법인화 전후의 주요 변화

개혁 분야	법인화 전	법인화 후
대학 운영	정부 교육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 대학 내부자에 의해서 지배됨	총장과 이사장 겸직으로 강력한 대학 개혁 총장 독주 가능.
의식 개혁	지위와 지역에서의 name-value에 안주해 경쟁심이 희박.	외부 민간이사와 경영협의회 위원의 엄격한 지적에 의한 의식개혁 이 일어남.
목표·계획의 설정	증상기적인 목표·계획 없이 대학 운영	중기계획 달성을 위한 행정목표 를 작성하여 대학 운영
대학 평가	평가에 따른 지원 없음	제3자 평가 로 책임 경영과 평가에 따른 지원 차등
대학 재정	정부 지원에 수동적 의존 . 대학수입 국가에 반납 (수익사업 의욕 없음).	수업료 등 대학수입은 대학재정으로 편입 수익사업 활성화와 기부금 증가로 재정 증가 차입/채권 발행 가능(정부보증, 무이자)
민간경영 기법도입	증가일로에 있는 업무량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음.	업무개선 을 실시하고, 이를 진행하는 “업무개선 리더”를 각 부서에 배치.
연구비	국가에서 지급	경쟁 으로 수락. 산학협력 연구비 증가
자산 관리	체계적이지 못함. 필요성 부족	적극적인 자산활용 을 통한 재정 확충 노력 담당 부서 신설 , 전문직원 채용

25 / 28



개혁 분야	법인화 전	법인화 후
교직원 신분	공무원	비공무원
영리 행위	점업, 겸직, 영리행위 금지	점업, 겸직, 영리행위 허용
보수 체계	호봉계 로 획일화	연봉제+성과급제+보너스. 임금 격차 존재
교직원 직급	공무원 직급제로 획일화	임용 형태 다양화 와 자유로운 다단계 직급 가능
교직원 평가	형식적 평가와 평가에 따른 보상 미미 상대 평가	철저한 개인업적 및 업무 평가로 보상체계 마련 정년 심사 강화 및 정년보장 교수도 업적 심사
교육/행정 조직	조직의 설치는 정부에 의한 예산조치가 인정된 경우에만 설치 가능. 부총장 1인 및 처실본부장	Top-down에 의해 순발력 있는 조직의 신설· 통합·폐지·확충 가능. 영역별 복수의 부총장 및 처실국장 설치 자율
대학/학과	신설, 통합, 폐지 어려움	사회 수요에 따른 유연한 신설, 통합, 폐지, 정원조정 가능
연구 지원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한 보너스는 없고, 연구에 쫓기더라고 인원배치 배려 없음	연구슈퍼스타 지원제도의 창설: 임시보너스와 인원상의 지원을 받음.
직원 채용	사무직원은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로부터 채용.	고등전문직의 채용 : 실천적 경험과 자격을 가진 자를 전형을 통해 채용. 영어 소통의 국제감각 직원 자율 채용 가능

26 / 28

개혁 분야	법인화 전	법인화 후
학생 지원	취업, 영어 능력 향상 등 학생 지원 서비스에 소홀	취업 담당 부서 설치. 홈페이지에 학생 의견함을 설치함. 영어 평가 시험, 표현 능력 무료 실시
등록금	매 2년마다 등록금 인상	재정확충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요인 제거
장학금	장학금 제원 불충분	장학금 지원을 확대. 일정소득 이하 면제
외국 학생	유치 노력 소홀	해외 사무소 설치 등으로 유치 적극적
평생 교육 기능	상대적으로 소홀	사회 수요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대학 홍보	정식적인 학교 휘장과 로고마크도 없고 브랜드 전략도 없었음	브랜드 전략 수립에 따라 학교 휘장, 로고마크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섬
주인 의식	국가기관으로서 교직원, 학생, 동문 간 주인 의식 없음	교직원, 학생, 동문간의 주인 의식 증대
학내 정보 유통의 활성화	소극적	적극적

서울대학교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 토론 1 박성현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최갑수
- 토론 2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과 바람직한 대학개혁 방향 박병덕
- 토론 3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쟁점(문제점) 토론문 김필동
- 토론 4 서울대 법인화 관련 토론문 오태석
- 토론 5 서울대 법인화 관련 토론문 이향철

박성현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최갑수

1. 박 교수님의 글은 전체적으로 서울대 법인화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나 ‘법인화 전후의 주요 변화’(발표문 25-27쪽)라는 제목의 표가 보여주듯이 마치 법인화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양, 법인화맹신주의 내지 환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서울대가 결코 행복한 상태는 아니며 박 교수님과과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서울대가 심각한 자기혁신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는 박 배균 교수님의 발표와 견해를 같이합니다. 사실 서울대는 2006년에 건교 60돌을 맞이했는데, 개인 삶이 그렇듯이 서울대는 환갑을 맞이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새로운 60년을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본부는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서울대의 발전에 관한 모종의 합의를 이룩해가기는커녕 법인화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요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박 교수님 역시 법인화 추진과정의 쟁점만을 말할 뿐, 과연 환경변화에 맞춰 추진해야 할 개혁으로서 법인화가 유일한 길이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지 하는 물음은 던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행 국립대학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서울대 개혁을 꾀할 수 있으며, 기왕의 ‘고등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보물이 어디에 숨었는지 미리 알면서 보물찾기를 하는 셈입니다.

2.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박 선생님의 발표에는 ‘대학과 환경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있을 뿐 서울대의 교육과 학문에 대한 진단이 없는데, 과연 현재의 서울대에서 개혁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2) 박 선생님은 6쪽에서 미국 대학의 경쟁력이 법인화에서 온 것처럼 지적하는데, 잘 알다시피 미국의 4,000개에 달하는 모든 대학이 다 법인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동부의 사립명문만이 아니라 가짜 박사학위를 몰래 수여하는 꽤 많은 신학대학들도 똑같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 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 능력에서 천차만별인데, 그런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지요?

3) 외국 대학의 개혁에 대해서는 박배균 교수님의 발표와 김필동 교수님의 토론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저는 토론을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할 것은 각국의 대학의 지배구조, 더 나아가 대학의 성격은 크게 보아 그 나라의 국가형성과정을 밀접하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설사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박 교수님 말대로 독일과 프랑스의 대학 가운데 영국과 미국의 사설업체들이 행하는 세계대학순위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독일과 프랑스의 학문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지요? 이는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가진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학문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며, 서울대 개혁 역시 국립대학체계, 더 나아가

가 우리 고등교육체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4) 16쪽에 ‘운영체제의 쟁점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왜 법인의 형태가 독일 괴팅겐 대학처럼 ‘공법상의 재단’이 아니고 ‘국립대학법인’이어야 하는지, 이사회의 지배구조가 동경대처럼 내부자 위주가 아니라 외부자 위주여야 하는지, 총장선출방식에서 직선제와 법인화가 얼마든지 양립가능한 것인데 간선제여야 하는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과부의 법인화 방안을 추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5) 나머지 쟁점들, 즉 재정·회계, 행정조직 및 인사, 교육 및 연구, 캠퍼스 시설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사실상 법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법인화란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엄격하게 말해 ‘운영체제’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문제들은 기존의 국립대학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 ‘끼워넣기’ 식으로 대학의 지배구조와 항상 같이 운위되고 있음은 법인화가 서울대 본부와 교육당국 사이에 모종의 흥정 내지 거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서울대 법인화는 말이 좋아 대학의 자율성이지 재정책중만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있는 서울대 일부 보직교수들이 교육당국의 ‘선택적 법인화’에 부응한 결과로 추진된 것입니다. 서울대 내에서 추진세력은 2009년 12월 8일에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된 법안(바로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꼭 1년 후인 2010년 12월 8일에 날치기 처리된 것임)에서 당근이 없고 또 대학의 자율성이 너무 후퇴한 것에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2009년 12월 말에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다 라도 적어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다른 국립대학의 간섭 없이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세력만이 아니라 많은 교수들이 법인화가 되면 봉급이 오르리 라고 기대합니다. 법인화가 되면 학문분야에 따라 교수들의 연봉에 차이가 생길 것은 자명합니다만, 이는 결국 등록금의 인상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셈입니다. 제가 법인화를 ‘국립대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6) 나머지 쟁점들이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박 선생님이 말하는 ‘결론들’ 가운데 몇 가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점에서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만,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① 수익사업(18쪽): 미국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가장 재미를 보는 예컨대 버클리대학교조차 그 수익이 대학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남짓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우수대학이 그런데, 아마도 서울대는 수익사업하면 필시 손해볼 가능성이 크며 맹렬하게 기업화될 것입니다.

② 국가의 지원은 안정적이고 지원금 출연을 명시했다고 하는데(18쪽), 이는 서울대가 교과부에 만들어준 원안에서 그럴 뿐,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③ 현재 서울대 설치령은 유연성이 없고 법인화되면 대학본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20쪽), 이는 오직 보직교수들(곧 대학본부)의 자율성을 말합니다. 헌법이 설정한 ‘대학의 자율성’(제31조 4항)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학의 자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④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은 법으로 보장한다(22쪽)고 아무리 명시한다고 하여 기초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대는 그간 국립대였기에 기초학문과 응용학

문의 균형발전이 가능했습니다만, 법인화되면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⑤ 등록금과 관련하여 학비부담 최소화를 법으로 보장한다(22쪽)고 했는데, 만약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과연 등록금 인상 말고 이렇다할만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비(산학협력단), 수익사업, 기부금(발전기금)이 법인화한다고 획기적으로 늘 이유는 없습니다. 국고지원과 기성회회계(등록금)가 그나마 믿을 만한데, 이 양자는 역함수관계입니다. 저는 당장에는 아니지만 한 10년 지나면 서울대 등록금은 수도권 명문 사립대의 수준에 준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서울대 교수들의 정서로 보아 국립대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⑥ 외국교수 초빙 얘기가 나오는데(22쪽), 아니 자유롭게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지 못한다고 법인화를 합니까? 이것 역시 기왕의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추가적인 국유재산 획득 가능성(24쪽) 얘기가 나오는데, 혹 박 교수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셔서 학내사정에 어두운 듯 합니다. 벌써 대학본부가 교과부와 시행령 협상에 들어갔는데, 기획처장께 문의해 보시지요. 현재 서울대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되는지 말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 대학본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신분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산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25-27쪽에 있는 ‘법인화 전후의 주요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방법론에 ‘이상형’(Idealtypus)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어떤 일면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선택된 개별현상들에 통일된 면모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상형’은 현실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인위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유토피아적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현실이란 무한히 다양하기에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박 교수님께서 법인화의 계기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표는 너무도 작위적이고 현실왜곡입니다. ‘법인화 후’에는 희망사항의 모든 것을 끌어 담았으며, ‘법인화 전’에는 현실진단도 없이 ‘법인화 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이 주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것을 보면, 이제껏 교수님이 몸 담았던, 그것도 학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했던 서울대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을 것인지 안쓰러움을 떨칠 수 없는 동시에 혹 법인화에 대해 오히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강박관념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법인화 전’의 진단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주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 ‘대학운영’에서 법인화 전에는 마치 대학 개혁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급하는데, 서울대의 자기개혁능력의 미흡은 ‘대학 내부자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지식공동체’가 부재하여 우리 사회와 인류에 대한 발전전망을 갖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2) 대학재정에 관련하여 ‘정부 지원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수익사업의 의욕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최근 교과부가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록금’을 국립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립대란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국립대의 특징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 원칙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도 못해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결국 서울대를 국립대로 보지 못하고 사립대와 동일시한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 전에 서울 모 사립대학의 총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대학은 사립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연구비를 법인화 전에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법인화 후에는 ‘경쟁으로 수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박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연구비는 국가에서 나오고 지금도 경쟁으로 수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늘지 않는 한 서울대가 법인화된다고 하여 연구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수체계가 법인화 전에는 호봉제로 획일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과급’ 말고도 연구비 실적에 따라 주는 ‘업적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9년에 서울대에서 ‘업적급’으로 최대 4,600만원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의 월급이 호봉제로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이미 연봉이 최대 5,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 대학/학과의 신설, 통폐합, 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며 이 역시 법인화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정운찬 총장은 기초교육원을, 이장무 총장은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학문편제의 문제는 서울대가 우리 학계에서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에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서울대에서 어느 학과를 없앤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학계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법인화를 포함하여 ‘서울대 문제’가 서울대에 국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6) ‘취업, 영어 능력 향상 등 학생 지원 서비스에 소홀’한 것은 근래에 교수들에게 연구능력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교수평가가 주로 연구 성과로 이뤄지니, 법인화하면 교육은 더 소홀해질 것입니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강의는 하지 않고 자기가 받는 연구비로 자기가 강사를 고용하면 어쩔게냐고 신입교수 연찬회에서 처장에게 질문하는 것을 목도하고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이란 그야말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터전이어야 하거늘 사정이 이렇기에 서울대에는 지식공동체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7) 법인화 전에는 국가기관으로서 교직원, 학생, 동문 간 주인의식이 없고 법인화 후에는 주인의식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정반대입니다. 국립대학은 아무리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아도 그 자체가 사단적(社團的) 성격을 갖기에 구성원이 사실상 학교의 주인이며 반대로 법인화된 이사회가 사실상의 주인입니다. 사실 바로 이렇기에 정부가 법인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거의 모든 점에서 저는 박 교수님이 만든 표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견해를 달리합니다.

법인화에 대한 교수들의 태도를 보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화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법인화법안은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교수협의회가 대표합니다. 둘째는 법인화도 찬성하고 법안에도 찬성하는 이들입니다. 대학본부와 대학평의원회가 대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표합니다. 사실 법인화란 워낙 다양한 내용을 가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교수들에게 물었다면, 찬성자가 더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울대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일반 교수들이 많습니다. 이 열망을 대학본부는 참으로 서울대가 우리 고등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현재의 법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다면 저는 반대가 더 많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할 말이 많습시다만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서울대 법인화, 이것이 궁금합니다.1)

1. 법인화추진의 배경과 진행과정
2. 법인화추진의 논리 - 경쟁력강화문제
3. 법인화의 내용 - 사립대와의 차이
4. 법인화의 내용 - 자율성 문제
5. 법인화의 내용 - 재정 및 조직 문제
6. 법인화의 파장 - 공공성 문제
7. 법인화의 대안

[법인화추진의 진행과정과 배경]

질문 1.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나요? 찬성론의 요지와 법안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 법안은 국무회의가 2009년 12월 8일에 정부입법안(C)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지만, 서울대가 원안(A)을 2009년 7월에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교과부가 이를 수정하여 입법예고(B)했습니다. 서울대 본부는 C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09년 12월 말에 국회에 수정안(D)을 제출했습니다.

애초 A안은 내부자 중심의 지배구조와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어 찬성론자들이 원하는 자율성의 제고와 재정 확보를 상당한 수준에서 보장했으나, A안이 B안에서 C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는 외부자 위주로 바뀌고 정부의 통제는 더 강화되고 재정보장책도 확실치 않아 대학본부는 D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8일 국회는 C안을 원안 그대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1) 이 문답집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와 '서울대의 법인화를 걱정하는 동문들'이 함께 만들어 곧 소책자로 나올 것임.

질문 2.

법인화는 서울대가 자청해서 입법을 청원해온 것으로 아는데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입법청원시 의견 반영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요?

◀ 반대하는 의견은 제대로 수렴된 적이 없습니다. 대학본부가 A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아예 없었고, 법인화의 구체적 내용이 2009년 7월까지도 비밀에 부쳐졌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법인화는 찬성하지만 본부와는 다른 법인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책자로도 발행했지만, 이마저도 대학본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2009년 여름부터 대응하여 성명서나 토론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본부에서는 무시하였습니다. 본부는 각 단과대학을 돌면서 공청회를 개최 하였지만, 자신들의 법인화 법안을 홍보하는 자리에 불과했고, 교수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지한 자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확보와 관련된 핵심적 사안에 대한 교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대외비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내에서 법인화 입법이 공식화된 것은 대의기구 지위를 가진 대학평의회에서의 의결을 통해서입니다. 교수들의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법인화를 찬성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의결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본부 측에서 법인화안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된 것이라고 홍보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대학평의회는 대의기구로서의 실질적 자격과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기구입니다.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평의회는 대부분 각 단과대학의 고참 교수들이 차지하고 있고, 평의원들의 선출마저도 엄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의회의 의결이 현재 서울대의 제도와 규정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정당성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어떤 기구가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논의과정과 의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방청도 허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평의회는 법인화 논의 과정에서 서울대 구성원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수는 방청이 가능한 줄 알고 법인화 문제를 의논하는 평의회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강제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평의회의 결정이라는 것도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평의회가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월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서울대 법인화반대 공동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질문 3.

서울대 법인화는 이명박정부에서 통과되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었는데, 어차피 '법인화'라고 하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지 않나요? 통과된 법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 법인화가 대세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립대는 법인화되었지만, 대만은 결국 법인화를 포기했고 중국은 대학개혁이 있었지만 미국대학 식의 지배구조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일부가 법인화되었지만 그것은 별도의 공익형 법인입니다. 문제는 법인화를 하는 정부당국의 의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고등교육의 재원 가운데 국고의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GDP 대비 0.5%), 등록금의 액수가 미국 다음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법인화는 대학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서울대가 60여 년에 걸쳐 쌓아온 교육 및 연구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 문제로는 평준화가 우선이나, 수월성이 우선이나를 놓고 정치세력과 사회주체들이 많은 논쟁을 해 왔지만,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오로지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문제로만 생각해 오다 보니, 입학 이후의 대학 교육이,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세력과 사회주체들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인화가 대세라는 믿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회·정치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이 신자유주의적 믿음을 바탕으로 법인화만이 살 길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유포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대학 교수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주의와 보신주의에 물든 교수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법인화 논리가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수집단의 부정적인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인화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 4.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대의 3대 주체인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교수 집단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화는 찬성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인화법안에는 반대하는 측(교수협의회가 대표함), 통과된 법인화법에 찬성하는 측(대학 본부가 대표함),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측(공대위가 대표함). 하지만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기에 분포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직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60% 정도가, 학생들은 80% 정도가 반대합니다. 사실 법인화와 관련한 논의는 잘 진행되었더라면 서울대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건교 60돌을 맞아 자기점검을 통해 발전의 방향과 계기를 모색하여 학내 구성원 사이에 합의를 만들어 갔더라면 새로운 60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부는 법인화라는 답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논의과정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질문 5.

서울대 법인화에 문제가 많다면 왜 서울대 교수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 대학은 일반 사회와 다릅니다. 사회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파열음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이 주요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등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자치를 위한 소통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 내부에서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학평의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학본부와 한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교수협의회가 임의기구로서 있습니다만, 법인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빠져런 자기반성의 일환으로 덧붙이자면, 근본적으로는 서울대 교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고등교육 전반이나 다른 국립대학의 실상을 고민하지 않은 채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미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급속하게 상실해가고 있음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법인화추진의 논리 - 경쟁력강화 문제]

질문 6.

선진국의 대학 중에서 법인화하여 성공한 곳도 있지 않나요? 미국과 일본의 국립대는 모두 법인이라 들었는데, 그 곳과 서울대는 어떤 환경 차이가 있습니까?

◀ 대학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각국의 국가형성과정을 반영합니다. 유럽과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는 아예 사립대학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에 대학이 법인인 경우 기본적으로 '공익형 재단'의 성격을 갖습니다. 미국에는 국립대학이 없고 모든 대학이 형태는 다르지만 법인입니다. 4천개에 달하는 대학이 모두 법인이지만 교육과 연구 능력에서 천차만별임은 오로지 '법인'이라는 대학지배구조가 대학발전의 관건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또한, 미국의 대학이 모두 법인인 것은 미국의 고등교육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해 왔다는 역사적 과정과 관계가 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미국의 고등교육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국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public university인 주립대학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고,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립대학들이 주립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뉴욕주립대학인 SUNY-Buffalo나 뉴저지주립대학인 Rutgers대학 등이 이러한 과정에서 주립대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즉,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온 미국의 대학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대학들이 법인이나 아니냐 라는 식의 평면적 이해보다는 국가가 공공성의 가치를 고등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4년에 모든 국립대학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법인화되었는데, 대학의 성격이 미국의 그것과 달라 법인화된 이후에도 총장직선제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사회가 내부자 중심입니다. 아마 법인화의 다른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학부생교육 중심이어서 연구력이 매우 떨어지는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아시아의 가장 우수한 연구대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2005년에는 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성공을 법인화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사례를 서울대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의 유일한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여러 국립대학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울대에만 국가가 모든 지원을 몰아주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양자의 차이는 교수사회의 권력구조에서 나타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교수정년이 55세였고, 이것이 대학의 구조조정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젊고 열정 넘치는 교수들이 대학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미 법인화 이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화로 인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대학 내 교수사회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건전한 지식공동체의 생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 외에도 영어권 국가로서 싱가포르가 가지는 문화적 경쟁력 등도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세계화와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인화가 경쟁력 향상의 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은 수박 겉핥기로 현실을 보는 태도입니다.

질문 7.

서울대가 국내 1위이지만, 세계 대학순위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법인화나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서울대의 세계화, 경쟁력 강화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먼저 대학의 순위가 기만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100위 안에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학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두 나라의 학문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서울대가 40위권이라고 하는데, 주어지는 재정에 비한다면 그렇게 나쁜 성적도 아닙니다.

대학의 경쟁력이란 과연 그 대학이 건전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를 바탕으로 학문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과 토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서울대와 한국의 대학사회는 그간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자생적 기반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부생은 우수합니다만, 중간허리, 곧 대학원이 부실합니다. 그러기에 특히 미국대학에 학문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축적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100위권 대학이 거의 없으면서도 독일이나 프랑스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꾸리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학문이 한 대학의 차원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웅변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해외 학술지 출판 논문 편수, 노벨상 개수, 대학의 연구비 수주 액수 등과 같은 지표로 쉽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량적 수치보다도 어떤 대학에서, 혹은 어떤 국가의 대학 사회에서, 건전한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가 살아있는지, 그 지식공동체가 얼마나 역동적인지와 같은 정성적인 요소가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러 언론에서 지적되었듯이, 현재 서울대의 “지식공동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복원이 법인화를 통해 가능할까요? 법인화는 서울대의 교수, 학생, 교직원들을 정치적 로비의 경쟁으로 강하게 내몰아, 지식공동체의 말살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대가 행복한 상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건교 60돌을 지나면서 21세기에 걸맞은 발전의 새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법인화가 유일한 대안인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질문 8.

법인화를 하면 더 이상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공기업처럼 되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 관료적 폐해 등이 개선되는 건 아닐까요?

◀ 흔히 현재 서울대의 교육행정이 비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이것을 경직된 국립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직교수의 수가 너무 많아, 직원들의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가로막고 있는 면이 큼니다. 바꿔 말하면, 일부 교수들의 보직 선호가 학문의 발전과 대학의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서울대 교육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화의 내용 - 사립대와의 차이]

질문 9.

법인화되면 서울대는 다른 사립대하고 같아지나요?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수들 처우가 개선되나요?

◀ 서울대가 법인이 된다고 하여 일반 사립대와 똑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학교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유사한 위치에 놓입니다. 교직원들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품의 소비자가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관되고, 많은 부분에서 '민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국립대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약해집니다.

처우개선이나 등록금 문제는 학교의 재정능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인화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이 당장에 약화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사실상 등록금 인상 이외에는 확실한 방도가 없습니다. 재정보호로는 국고지원, 기성회회계,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이 있는데, 기성회회계를 제외하고 획기적으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질문 10.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교수님들의 신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교수님들의 연봉은 명문 사립대와 비슷해지나요?

◀ 교수들의 경우, 법인화되면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나' 그 이후에는 법인의 피고용인이 됩니다. 연금은 법인화가 된 이후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법'의, 이후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화된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들은 모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원의 경우 공무원은 법인화의 시점에서 서울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법인의 직원이 되고, 기성회직은 법인화와 더불어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승계가 되면 신규 채용되는 셈입니다. 많은 교수들이 법인화되면 봉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나 서울대의 재정구조로 보아 등록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명문 사립대 수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 11.

일반 사립대와 비교하면 서울대 등록금 수준은 어떤가요?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덜게 되는지요?

◀ 현재 서울대의 등록금은 단과대학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명문 사립대에 비해 2/3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에 비하면 이미 연 200만 원 정도 많습니다. 올해 서울대는 등록금을 동결시켰지만, 법인이 되면 장기적으로 등록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학재단은 서울대 법인화의 간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해쳐 기회균등이라는 최소한의 공평성을 무너뜨릴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법인화의 내용 - 자율성 문제]

질문 12.

법인이 되면 의사결정의 최고기구는 이사회일 텐데, 법인화 이전의 학교운영 주체들이 모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립대라는 것은 사단적 성격을 갖기 마련이어서 대학 자치를 보듬는 장치가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재단적 성격을 갖게 되어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이번의 '서울대 법인화법'에는 학생의 참여를 위한 규정은 아예 없고, 교직원의 경우도 주변적입니다. 이는 결국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법인화를 했습니다만 총장직선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질문 13.

지금처럼 교수만 총장 선출에 투표권을 갖고 교직원,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직선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총장선출은 누가 하게 되나요? 이사회가 교수, 교직원, 학생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능력 있는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 현행의 총장직선제에는 교수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성이 낮습니다. 학생은 배제되고 있고요. '서울대 법인화법'에는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7조 1항)고 되어 있습니다. 총장직선제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총장직선제입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총장직선제를 잘 결합시키는 방안 역시 정관을 만들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 14.

법인화를 하면 국가공무원에 관련한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의 구성,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애초 찬성론자들이 법인화를 하면 대학의 자율성이 커진다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총장이 직원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행정의 유연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성은 철저히 대학의 구성원과는 무관한 총장의 자율성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사회에 교과부차관과 기재부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승인 및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는 상황에서 예컨대 그동안 교육부가 파견하던 직책인 사무국장을 과연 총장이 소신있게 인사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참으로 자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지의 문입니다. 또 감사 2명 중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은 상근 감사가 되어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앞의 1번 질문에 대한 답에서 설명했듯이, 서울대 평의위원회가 낸 수정안(D)에서는 교과부 추천의 상근 감사를 없애도록 했으나 결국 반영

되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운영과 조직구성 등에서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법인화 반대 측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율성의 증진이 법인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예산집행, 운영, 조직구성 등에서 자율성을 가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개별 사업별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에서 포괄적 재정지원 방식으로만 바뀌어도 서울대의 자율성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훨씬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과부나 관련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대학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포괄적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15.

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특히 경쟁체제의 도입과 업적주의에 따른 보상이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지배구조의 변경에 있기에 교육 및 연구의 자율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화로 대학에 대한 자본과 기업의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교육 및 학문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여지는 그만큼 커집니다. 대학이 기업과 국가의 도움도 받고 또 국가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대학이 자신의 독자성을 지킬 때 가능하며 대학은 그 자체로 존립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경쟁체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효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마련임을 보여줍니다. 대학은 ‘철밥통’이기는커녕 이미 경쟁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과 업적주의에 따른 보상은 교수를 긴장하게 만들고 학문과 교육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시장적 방식의 경쟁을 통해 학문과 교육의 상품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인화로 인해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학문과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각종 재원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적 로비의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의 법인화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법인화 이후 일본의 대학 교수들은 연구 활동보다 각종 보고서 및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학 사회에서 경쟁이 높아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어떠한 경쟁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법인화가 우리 대학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혁할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우리 대학사회를 쪼먹었던 부정적인 모습의 경쟁을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인화의 내용 - 재정 및 조직 문제]

질문 16.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학재정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화된다면

정부지원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대학재정에서 정부지원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이 GDP 대비 1.0%이나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의 여력이 충분하며, 국가의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그런 투자를 기피하고 국립대의 법인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40개에 달하는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인화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기는 대학은 기껏 몇 개에 불과합니다.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사실 등록금 이외에 재원 확보의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

질문 17.

서울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타 국립대에 비해 월등했던 것으로 아는데 법인화 반대는 국가 지원이라는 바람막이가 없어지리라는 불안감 때문이 아닌지요?

◀ 다른 국립대에 비해 서울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립대학체계 전반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고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뿐 아니라, 여러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그 자체는 더욱더 늘어나야 합니다.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일부 특권층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서울대의 우월적 지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법인화 추진론자들은 내심 법인화하면 정부의 재정적 특혜가 주어지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을 보면 법인화 이전과 이후에 재정지원 면에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법인화된다고 하여 재정지원의 어떤 두드러진 추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 18.

법인화가 되면 재정을 확보하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당장에 학내의 여러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수와 특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수익사업에도 열을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수익사업에서 목돈을 마련한 예는 미국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대학에 이렇다 할 수익은 가져다주지 못하면서도 대학을 기업화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인화의 파장-공공성 문제]

질문 19.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서울대가 누렸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서는 아닌가요? 날치기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무력감과 자포자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높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 집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이며 공감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질 높은 대학 교육이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회적 무력감과 자포자기가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력감은 특히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사회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방기가 매우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기여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고등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에, 국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그것은 양질의 고등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의 초석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화란 사실상 국가가 고등교육을 방기하고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근저로부터 무너뜨릴 것입니다.

질문 20.

산학협동 등 기업이 대학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학재정은 물론 산학협력도 강화되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물론 기업은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대학 역시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대학에는 산학협동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독자성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일입니다. 대학의 존재이유는 근본적으로 학문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 사회의 자기성찰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지성은 자본이나 권력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존재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력이 발휘될 때 미연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우회적이지만 기업 못지않게 확실한 방식으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질문 21.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이 곧 법인화의 길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화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서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학 간에 차별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요?

◀ 정부는 ‘선택적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나마 여건이 낫다는 9개 거점대학 가운데 많아야 4개 정도가 추진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는 당장에는 해당 대학에 엄청난 갈등을 부를 것입니다. 국고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법인화 대학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인화 대학들 역시 등록금을 올리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시장구조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지도 미지수지만, 지방 국립대는 참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법인화의 대안]

질문 22.

미국과 일본의 교육 체제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모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럽의 대학들 중 우리가 따라 배울만한 모범적 모형은 없는지요?

◀ 미국에서는 모든 대학이 다 법인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사립대와 같은 특정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천박한 대학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컨대 인디애나 주의 퍼듀 대학처럼 오히려 주가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학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04년에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했습니다만, 대학의 지배구조는 굳건하게 내부자 중심입니다.

유럽에는 사립대학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독일의 괴팅겐 대학처럼 기본적으로 ‘공익형 재단’입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근 등록금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그 액수가 일 년에 기껏 몇십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괴팅겐대학을 중심으로 주정부의 직접적 관할에서 벗어나서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 보장 등 국립대학의 지위를 유지하는 공법상의 재단대학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를 모범적 모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 23.

법인화를 반대한다면 그 대안으로 현재의 서울대법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체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서울대 법인화가 폐기된다면, 서울대가 이전의 ‘설치령 체제’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국립대학, 특히 우수한 거점 국립대와와의 연계를 통해 국립대학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동입시안을 꾸려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원의 강화를 통해 지식공동체의 재건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보직의 수를 과감히 줄여 ‘연구대학’에 걸맞은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학문의 독자적 재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수충원에서 서울대 출신의 비율을 대폭 낮추고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 학풍을 일신해야 합니다. 서울대는 철저한 자기혁신의 기반 위에서 국민에게 대학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4.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 날치기 통과는 좋은 목적을 위해 약간 무리한 수단을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를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비지성적이고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흠결입니다. 한 기관의 성격과 정체성, 그 기관 구성원들의 법적 신분을 결정하는 문제를 날치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 기관과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구나 대학의 문제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이고 비지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좋다고 공공연히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그 법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었기에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질문 25.

서울대 동문들이 법인화 반대운동에 어떤 지원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 ‘대학 문제’하면 주로 입시나 취업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추세인 듯 보입니다. 법인화가 대학의 기업화, 기초학문의 약화, 지방 국립대의 고사, 노동유연화, 등록금의 인상, 교육공공성의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 거의 명백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면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본질적인 문제에 바짝 다가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일반에 서울대문제의 본질을 알리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과 바람직한 대학개혁 방향

전북대 교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박 병 덕

2010년 12월 8일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국립 서울대학교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을 날치기로 처리한 치욕스런 날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서울대법인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로 처리하는 폭거를 목도하면서 경악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해 예산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법안을 이처럼 무도한 방식으로 밀어붙인 데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을 극심한 경쟁 상태로 몰아가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통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깡그리 무시된 채 처리된 서울대법인화법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원천무효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정당성을 상실한 서울대법인화법을 스스로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국격(國格)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스스로도 서울대법인화법의 날치기 처리를 부끄러워하면서, 법안 통과와 불인정 운동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민교협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님들,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총학생회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서울대 구성원들이 법인화를 저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면 서울대법인화법을 폐기하는 일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교련도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다른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려는 그 어떤 기도에도 단호히 맞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대학의 질적인 발전 없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대학이 제 기능과 본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개혁에의 요청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책무를 더 크게 지닌 기관이므로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립대학 법인화는 그 해답이 아닙니다.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8년 11월 인천대학교, 2009년 6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위한 법안을 보면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장간선제를 도입한다.

- 대학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명, 교과부차관 1명, 기재부차관 1명 등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이 4년 단위의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교과부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법인화가 대학 자율성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법인화 추진의 주요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법인화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화는 오히려 교과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80년대 대학민주화 이래로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인 총장직선제를 폐기하고 총장간선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대학 구성원의 여러 부분을 대변하는 선출평의원들이 참여하는 현행 평의원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재단법인 이사회에 준하는 기구입니다. 이 경우 대학은, 한편에서는 교과부에 의해 감독·통제 당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사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당하는 이중적 통제·지배 체제에 놓이게 됩니다. 대학 외부 인사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고, 교과부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서 들어오며, 이사 선임이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는 결국 대학 운영과 대학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학 내부의 정부 대변 기구’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학 운영에 대한 정부의 발언권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대학은 이전보다 정부의 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기구 대신에 이사회가 대학을 지배함으로써 대학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초학문, 기초과학기술이 소외당하는 반면 응용학문과 실용학문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해짐으로써 기초학문의 육성이라는 국립대학 본연의 임무는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의무가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됨으로써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이라는 국립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교련이 거듭 천명해온 것처럼,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공교육을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에 내맡겨버리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결국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학문 연구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될 ‘국립대학 후진화 방안’입니다.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면 일본 국립대학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이 제고되기커녕 오히려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교련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서울대학 법인화를 필두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무리하게 줄속 추진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학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대학 개혁에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 고등교육예산에 투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0.4%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폭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않는 국가는 경쟁력을 잃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을 바란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국립대학 법인화만이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억지 주장을 버리고 국립대학 법인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학에 최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구조가 자율적,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낮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학 운영의 의사결정구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학운영의 의사결정구조가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대학의사결정체계의 기본 장치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 등도 대학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가칭)대학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교수는 물론이고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하는 직원, 그리고 의사결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대학의 의사결정구조는 국가·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개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총장과 교수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거나 상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창회, 지역 인사 등 외부인사도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요정책에 자문 역할을 하는 (가칭)대학발전위원회를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외부인사를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개적 의사결정체제는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장직선제를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은 대학자치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개인의 자유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도로서의 대학 자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자치란 대학이 본질적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대학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법제화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총장을 교원의 합의에 따른 방식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권한은 대학자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당해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임용후보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또는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립대학의 경우 80년대 민주화운동 이래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총장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열 선거운동, 파벌 형성 등으로 대학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학의 권위와 학문적 풍토를 훼손시키는 부작용 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총장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코 과거의 임명제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다하여 민주적인 직접선출방식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선거, 임명제 역시 그 부작용과 폐해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도 부작용과 폐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거제도를 폐지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하지만 총장직선제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는 총장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해 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선 총장도 견제와 균형 시스템 없이는 임명제 총장과 마찬가지로 대학구성원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학을 전횡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교수회의 법제화입니다. 교수회는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집행기구의 대학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은 교과부의 요구 또는 지시사항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대학 구성원 위에 군림하여 전횡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교수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대학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교과부는 이제까지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그 정책을 도입할 경우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정책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리고 대학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요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만을 거친 채 졸속하게 정책을 결정한 다음, 겉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원 차등 정책 등 파행적 유인책을 통해 그 정책의 시행을 강요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학과제의 학부제로의 강제 전환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독한 소모적 논쟁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결국은 다시 학과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처럼 대학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은 결코 졸속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개혁은 무조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당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원칙과 당위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개혁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여 구성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끈기 있는 설득 작업을 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의 시각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지식 생산, 비판적 지성의 함양,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의 육성 등을 통해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진취적인 미래 개척을 위한 토대구실을 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오직 취업을 위해 도구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현재의 교육 풍토를 일신하고,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인간성과 협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 교수 상호간에 무한 경쟁하도록 하는 체제를 도입하거나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 구성원들을 비롯한 고등교육관련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아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사이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고, 우리의 학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학개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의 진정한 경쟁력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립대학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대폭 부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학운영에 있어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도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은 어처구니없게도 그 법적 지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입 일체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현행의 법령체계야말로 국립대학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국교련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도·감독’에 관한 제5조를 ‘학교의 자율성과 감독’이라는 제목 아래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에서 모든 학교는 교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에 관한 제5조의 2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위상에 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이 추구하는 자율적 국립대학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인 동시에 법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의 장 및 대학자치기구 등 ‘국립대학의 운영기관’에 관한 제5조의 3을 신설해야 합니다. 대학의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총장 선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학자치기구 설치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장의 선출, 그리고 자치기구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식은 대학의 형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넷째,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제5조의 4를 신설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이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국립대학의 의욕 저하로 직결되고 있으며, 수입금을 대학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편법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정주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34조 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대학입학전형에 관해 「고등교육법」 등 법률은 구체적인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백지위임식 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4조를 개정하여 대학의 장의 대학입학계획 작성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자치의 기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학운영을 하는 데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

도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개혁을 위해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대학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대학의 주체인 교수들이 대학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대학은 인간과 사회, 자연의 본질과 구조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자, 전공지식과 기술, 일반교양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하고 양심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다른 한편 대학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기관이기도 한데, 봉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학협동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봉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대학은 비판적 지식인 집단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무도 지닙니다. 이는 피상적으로 보면 기존사회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지닌 파괴적 저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존속시키려는 협조와 봉사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말살 당하고 획일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물질 차원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이보다더 그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더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주된 관심사가 무엇보다도 인간 그 자체인 인문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등 인간과 관련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 천착하면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문학의 이런 노력은 얼핏 보면 실용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질적 부와 소유의 증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결코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적 부와 소유의 증대를 마치 삶의 목적처럼 오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물질적 부와 소유의 증대만을 추구할 경우 극악무도한 범죄의 증대, 양극화의 심화 등 갖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데도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역할이야말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모든 문제를 대학 외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현재 대학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실천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회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묵묵히 연구와 교육에만 임해 왔던 교수도 이제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대학이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수가 지식인에게 부과된 비판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죄악입니다.

법인화 찬성 입장을 밝힌 박성현 전 서울대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께서 발제하신 내용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법인화 전에는 정부교육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대학내부자에 의해 지배되지만, 법인화 후에는 총장과 이사장 겸직으로 강력한 대학개혁이 이루어지고 총장 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이 이사장을 계속 겸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총장과 이사장이 겸직하면 강력한 대학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총장 독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신 것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신 것입니까?

2) 보수체제와 관련하여 법인화 전에는 호봉제로 획일화되어 있지만, 법인화 후에는 연봉제+성과급제+보너스 체제로 임금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1. 현행 교수 급여 체계에도 성과급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으며 교수 사이에 급여 차이가 생겨나고,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임금 격차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임금 격차가 커지면 과연 어떤 성과유발 효과가 생길 수 있는지요?

2. 물론 교수 사회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원자화된 경쟁력보다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의 경쟁력 향상이 더 필요하며,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 교수 상호간에 불공정한 무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3.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교원 보수 수준이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교과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인센티브를 통해 총액을 늘리려는 커녕 보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제로섬(zero-sum)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성과연봉제는 오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에서조차도 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양한 학문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채 대학 교수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5. 성과연봉제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고 교수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불러일으키며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해 결국 국가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법인화 전에는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한 보너스는 없고 연구에 쫓기더라도 인원배치 배려가 없지만, 법인화 후에는 연구 슈퍼스타 지원제도의 창설로 임시 보너스와 인원상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 보셨습니다.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도 우수한 연구로 인정된 업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너스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전북대학의 경우 <Cell>, <Science>, <Nature> 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면 1편당 1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정도의 포상금으로는 연구 슈퍼스타 지원제도라고 볼 수 없는지요? 연구 슈퍼스타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너스를 주어야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등록금 및 장학금과 관련하여 법인화 전에는 매 2년마다 등록금이 인상되고, 장학금 재원이 불충분하지만, 법인화 후에는 재정 확충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이 제거되고, 장학금 지원율이 확대되어 일정소득 이하는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현재 상당수 국립대학의 경우 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사실을 아시는지요? 법인화 후 등록금의 인상 외에 과연 어떤 획기적인 재정 확충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주인의식과 관련하여, 법인화 전에는 국가 기관으로서 교직원, 학생, 동문 간 주인의식이 없지만, 법인화 후에는 교직원, 학생, 동문 간의 주인의식이 증대한다고 보셨습니다.

주인의식이란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느끼는 의식 아닌가요? 주인이 노예나 하인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의 강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이 법인화 되면 대학 외부, 특히 교과부와 기재부 등 정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인의식이 증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쟁점(문제점) 토론문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수회장 김 필 동

1.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제기하는 문제점(쟁점)과 의의

- 서울대학교의 향후 발전방향은 물론, 국립대학 나아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대학교가 갖는 독특한 위상 때문)
- 법안의 ‘날치기 처리’라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법인화 이행. 서울대 법인화는 물론, ‘법인화’ 자체를 ‘이슈’로 더욱 크게 부각시킴.
- 나아가 교과부의 ‘정책적 정당성’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됨.

2. 날치기 처리 유감

- 이런 중요성에 비춰보면, ‘날치기 처리’는 매우 불행한 일.
- 서울대학교의 경우 : 개교 65년만에 법인으로 설립형태가 바뀌는 중요한 변화가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 서울대 및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에 영원한 ‘상흔’으로 남을 것. (서울대 ‘연혁’에 어떻게 기록될까?)
 - * 서울대학교의 도덕적·지도적 위상(명성)에 손상을 가져옴
 - 특히 서울대가 명분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집단으로 비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 집행부가 이를 주도. 양자의 도덕성·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학문)’의 주무 부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선택했다. 과연 불가피했나?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교과부와 서울대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점.
 -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전혀 교육적이지 않음)
 - 과학(학문)은 이론적·실증적 근거에 따라 토론·증명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이런 과정이 결여(태부족)되었다면 학문적으로도 실패한 것.

3.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처리의 메카니즘

- 정부(교과부)의 공작적 정책 추진. 국회(여당)의 공조.
- 서울대 집행부의 욕망. 이례적인 로비.
- 경제계의 대학에 대한 요구가 배경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연구에 대한 욕망)
- 서울대 교수들의 잠재적 욕망 (처우 개선)
- 언론은 교과부 논리에 (소극적) 지지. 객관적 입장에서 이슈를 주도하지는 못함.
- 시민사회, 학부모의 침묵(상대적 무관심)

교과부의 의도(숨은, 더 중요한 목표)

- 대학을 '국가경쟁력'의 직접적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의도
아울러 대학사회의 비판 정신·활동을 억제하려는 것
- '경쟁'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의 방법론 점화 (과거의 정책실패에 대한 사후 처방)
-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실현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포장)
- 상징성 높은 '서울대법인화'를 기어이 실현시켜 정부 의지를 관철하고, 법인화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실적주의, 한탕주의

서울대학교(집행부)의 의도

- 정부로부터 자율성 획득
행정절차상의 제약 완화 내지 탈피 (여러 긍정적 효과 포함)
교직원 처우(보수) 개선 욕망 충족
- 법인화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발미로 국고 지원 확대 (단기적)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특혜 획득의 문제로. (나쁜 선례로, 향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 개별대학 법인화법 만들 때 반복될 문제)
- 사회(경제계)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것.
수탁연구비, 발전기금, 교육(연수) 산업화, 기타 수익사업(브랜드상품)
- 국유재산의 양도를 통한 재정자립의 기초 마련

4. 교과부의 의도(명분)는 정당한 것인가? 법인화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교과부의 명분(이유)

- 구호: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경쟁력 제고, 책무성 확보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 “자율성 확보를 통한 (국립대학) 경쟁력의 향상”
- 구호 각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자율성의 문제: 법인화하면 자율성이 확보되는가?

-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 옳은 얘기. 그러나 단순논리.
- 교과부의 ‘자율성’ 개념은 오도·왜곡된 것(명실이 상부하지 않음).
대학구성원(교수)의 자율적 의사결정 및 자율적 활동과는 배치되는 것.
-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대학운영의 ‘독립성’ ‘효율성’과 ‘창의성’ 발휘에 있음. 그러나 법인화는 효율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독립성은 해결되지 않고, 창의성 발휘는 저해할 소지가 많다.
- 법인화에 의한 자율성은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과 학문(영역)의 자율성이 아니라, ‘총장’의 자율성만 강화할 것. 그것도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부(파견이사)의 통제하에서.
교과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는 한 현재보다도 오히려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 대학 구성원과 학문(영역)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으면, 대학의 활력이 될 교육 및 학문 활동의 ‘창의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운영 ‘효율성’을 위한 창의성만 강조될 것.

경쟁력의 문제: 법인화 하면 경쟁력이 신장될 것인가?

- 법인화 하면 대학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기대도 의문.
- ‘경쟁력 강화’는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가? 또 시대 변화에 따른 사명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 법인화가 만능키는 아니다. (‘양날의 검’)
- 현재 교과부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취업률 상승, 기업의 요구에 직접 부응하는 인재 배출 정도 등으로 생각. 교육경쟁력은 대학졸업-1차취업만이 아니라, 대학 졸업자가 평생 직업선택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느냐의 문제. 교과부는(또 기업은)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을 구별 못하는 측면이 있다.
- 연구경쟁력: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나누어볼 때, 법인화는 응용·개발연구에 더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구=학문적 연구는 위축될 가능성.

5. 법인화 후 경쟁력은 향상될 것인가? : 실증적 검토

법인화 후 6년이 지난 일본의 경우:

- 국고지원금(운영비교부금)은 2004-2009 사이에 6% 정도 감소했다. (일본적 특수성 반영)
 -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재정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 교직원의 수와 보수(인건비)가 줄어들었다. (격차 심화)
 - 명목 연구비가 늘어났지만, 학술논문수는 감소하고 있다. ([부표] 3)
- 예산 삭감으로 ‘기본연구비’가 삭감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경쟁적 연구비 취득과 수탁연구 획득에 매달리게 되면서, 기초연구, 학문적 연구는 등한시하고, 연구에 투입하는 절대 시간이 줄어든 데서 기인.
- 수익사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나,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법인화와 세계대학랭킹

- 세계대학 랭킹으로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도 있음. 그러나 교과부가 이를 신봉하므로 자료 활용, 간접적으로 검증. (Times, 상해교통대)
 - 최근 법인화한 대학들의 세계랭킹을 보면, 법인화의 영향이 별로 없거나(약간 상승하는 경우 포함) 법인화 후 랭킹이 떨어지기도. (* [부표] 참조)
 - 일본의 경우: 부침/약간 상승(Times), 다소 하락 추세(상해교통대)
 - 독일 대학의 사례 (괴팅겐대학과 다른 주요 대학 비교)
 - 한편, 대만의 대학들의 랭킹이 상승하거나, 200대 대학 안에 새로 들어왔음. (흥미로운 사례)
- 대만은 2005-2010년 사이에 500억 타이완달러(약 2조원)을 10개 국립대에 특별지원하면서 법인화를 독려했으나(법인화 전제로 선정), 사업이 끝난 현재 법인화 논의 사실상 중단됨. 그러나 지원의 결과, 그리고 실질적 개혁의 결과 랭킹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화 자체와 무관)
- 이상의 사례들은 법인화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별로 근거가 없음을 보여줌.
 - 한편 한국의 대학들은 이 기간 중 법인화와 관계없이 상승. (서울대)

6. 다른 국립대학에 미치는 영향

- 서울대 법인화는 다른 국립대에 영향을 미침. 특히 교과부가 이를 공언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는 직접 권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4개 대학 총장이 법인화 추진. 교수회는 강력히 반대(교직원 대다수도).
- 법인화 추진 이유는 법인화를 통한 특혜에 대한 기대 때문(법인화의 제도적 장점에 대한 고민은 적거나 실종되어 있는 상태). 대학 집행부는 이번에 법인화를 안 하면, ‘2류, 3류대학’으로 전락한다는 담론을 유포시키고 있음.

- 서울대가 법인화 추진을 통해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는(받을 거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교과부도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의 본말이 전도된 상황. 서울대 법인화에 나타난 ‘교육 및 학문 도덕성의 상실’이 다른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일부 거점국립대의 법인화 추진은 다른 국립대에 긴장감을 유발, 역량 소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법인화를 추진중인 몇 개 대학의 경우는 법인화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소모를 겪고 있어, 이 자체가 대학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대도 법인화의 제도적 장점보다는 법인화를 통해 얻을 이익(특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비치고 있음. 이렇게 되면, 또 법인화를 통해 교과부가 선택적 ‘당근정책’을 편다면, 고등교육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지방 국립대학의 재정자립 여건은 서울대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함.
- 만일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구조의 개혁(다른 OECD 국가에 비길 만한) 없이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법인화를 특혜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고등교육의 격차구조를 심화시켜, 고등교육 전반의 실패로 이어질 것임. 만일 전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이 부분은 당연한 미래예측을 무시한 정치권 및 교과부에 책임이 있지만), 이 문제는 교과부가 별도의 정책을 통해 솔직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7. 법인화 정책의 수정 또는 대안

-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정부의 ‘법인화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 또는 ‘대안’ 마련으로 나아가야 함.
-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도, 법인화의 제도적 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결여된 상태에서 제도가 급조된 데서 오는 문제점.

법인화를 수정 추진할 경우

- ‘국립대 법인화’를 국립대 개혁을 위해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법인화 모델에 대한 개방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 나라별 사정(배경)이 다름과 여러 모형의 제도적 장단점과 역사적 배경이 다름을 인정하고,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했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 그에 앞서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고등교육재정의 확대가 그 핵심.
- ‘법인화’가 그 자체 좋은 제도라면, 그 자체로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화 하면 특혜를 준다는 식의 당근정책을 병행하지는 말아야.
- 현재와 같이 ‘개별대학별 입법’도 재고해야 함. 법안 만들 때마다 쓸 데 없는 진통과 역량 소모를 겪음. (해당대학, 교과부, 국회 등 모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와의 협상력’ ‘눈치 보기’ ‘특혜 시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 법인화는 하나의 수단인 만큼, 장점이 있는 제도라면, 법인화 모델을 ‘통칙법(공통법)’ 형태로 제정하고, 이 모형을 수용할지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다른 정책, 혜택과 연계하지 말고). 이를 수용하는 대학들은 ‘정관’을 통해 각 대학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을 것임.

- 교과부가 현재 상태에서도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 그래야 ‘법인화 정책’도 설득력이 있을 것. 그러나 교과부는 이런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예) 등록금 동결 유도(사실상 강제), 많은 정책 또는 지원을 다른 정책과 연계시켜 이를 조건부로 하는 경우 많음. 기타 많은 규제 여전함.
- 이를 위해서도 서울대 법인화법의 폐기 또는 근본적 수정이 필요.

법인화의 대안

- 법인화를 추진하는 대신, 또는 법인화를 장기 과제로 해 두고,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정부(교과부)의 의도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욱 현실적)
 -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발표에도 있으므로, 중복 설명은 생략)
 - 고등교육법의 개정은 ‘법인화 과제(개혁)’와 반드시 충돌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막고 있는 제약들을 해소하면, 교과부로서도 법인화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향후 바람직한 법인화 모델로 이행할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국교련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 교과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입법화)이 요망됨.
-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구체적인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창의적인 개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질 향상적인 과제. 법인화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화 논쟁’이 이를 자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부 표]

1. 독일 주요 대학의 세계랭킹 변화

대학명	랭킹자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괴팅겐대학**	Times	85	114	156	168	166	186	43
	상해교통대	79	84	85	87	90	90	93
하이델베르크 대학	Times	47	45	58	60	57	57	83
	상해교통대	64	71	66	65	67	63	63
뮌헨대학	Times	99	55	98	80	93	98	61
	상해교통대	51	51	51	53	55	55	52

* 2010년부터 Times지의 랭킹산정방식이 달라졌음. 이전년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

** 괴팅겐대학은 2003년 법인화(국립재단형법인)되었고, 다른 대학은 국립대학.

2. 일본·대만 주요 대학의 세계랭킹 변화

대학명	랭킹자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본 동경대학	Times	12	16	19	17	19	22	26	
	상해교통대	14	20	19	20	19	20	20	
교토대학	Times	29	31	29	25	25	25	57	
	상해교통대	21	22	22	22	23	24	24	
오사카 대학	Times	69	105	70	46	44	43	130	
	상해교통대	54	62	61	67	68	71	75	
나고야 대학	Times	167	129	128	112	120	92	200+	
	상해교통대	97	114	98	94	111	82	79	
대만	대만대학	Times	102	114	108	102	124		115
		상해교통대	163	163	158	162	161	109	108
	칭화대학	Times							107
	중산대학	Times							163
	교통대학	Times							181

* 2010년부터 Times지의 랭킹산정방식이 달라졌음. 이전년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

3. 일본 학술논문의 수

2004년 59,758편에서 2005년 63,066편으로 늘었다가, 2009년에는 56,735편으로 격감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학술논문 국가랭킹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토론 4

서울대 법인화 관련 토론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장 오태석

1. 서론

- 서울대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박성현 전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발제 내용에 의견을 같이 함
- 아울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박배균 서울대 교수와 의견을 같이함
 - 다만, 발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밝힘

2.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평가

-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
 - 일부에서는 부정적 평가만을 근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서 ‘기초학문의 위축’과 ‘국립대학 간 격차 심화’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추진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즉 일본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함께 재정지원을 축소하였고, 일시에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인 전환 후에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여건이 되는 대학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수 있음
 - 2010년 5월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국립대학 법인화 후 6년,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라는 제하의 중간정리안에서는
 - 전체 총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법인화가 교육활동의 활성화, 연구활동의 활성화, 사회공헌활동의 확충, 학생지원의 활성화,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각각 61.4%, 56%, 70.6%, 54.7%, 66.6%였음
- 발제자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등록금이 5배까지 폭등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 KEDI 정책연구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연구(2010)’에 따르면 일본 전체 국립대학의 학

생납부금 수익이 전체 경상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4.6%(3,568억엔)에서 2008년에는 13.0%(3,495억엔)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3. 국립대학의 경쟁력

-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이 조직·인사·재정 운영 등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이는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을 때 교육·연구 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임
 - 다만, 정부는 대학운영의 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교육·연구 활동의 질 제고 등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서울대 법인화법 제32조에 근거한 대학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검해 나갈 것임

4. 고등교육의 공공성

- 등록금 인상 우려
 -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법인 전환 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서울대 법인화법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국가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원금의 규모는 ‘중전의 서울대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되지 않고 최소한 중전의 서울대 예산 이상은 지원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서울대 법인으로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오히려 수익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자체 재원이 다양해지면 현재보다 등록금 인상 요인은 적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서울대 법인화법 제31조에서는 서울대에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초학문 위축 우려
 - 기초학문 위축에 대한 우려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를 전제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기초학문 위축 우려는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서울대 법인화법 제31조에서는 서울대에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대가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학문 지원·육성’ 등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지를 서울대 법인화법 제32조에 근거한 대학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검해 나갈 것임

5. 국립대학법인의 자율성

- 현 국립대학은 정부조직으로서 조직·인사·재정 운영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발전이 정체되어 있음
 - 조직의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처·실, 처·실·국 및 부속 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 범위까지 결정함
 - 구체적으로 교직원 정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교수와 직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통제하고 있고, 총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임용권을 행사하며, 교직원의 보수는 정부가 정한 보수표에 의해 결정됨
 -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의 회계 중 국고 부분은 정부예산의 일부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의 일률적 적용을 받음
 - 이상과 같은 조직·인사·재정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는 부분적으로 자율권 확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전체 정부조직의 운영 원리를 고려할 때 국립대가 정부조직으로 유지되는 한 본질적인 자율권 확대는 가능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법에서 이사회에 정부인사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법인 전환 후에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관련 부처 인사(총 15명의 이사 중 2명)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을 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학이 해당 부처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법인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6. 고등교육 지원 규모 및 운영의 자율성

- 발제자가 주장하듯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교과부가 지난해에 마련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투자비율을 2020년까지 1%까지 확대할 예정임
- 그러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와 함께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도 중요함
 - 이를 위해 2008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제정이 시급함

7. 결론

- 서울대 법인화법이 지난해 12월에 제정되면서 서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법인화가 되었다고 해서 서울대의 경쟁력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닐 것임
 - 앞으로 서울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체 교직원이 혁신 마인드로 재무장하여 새로

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임

-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오늘 토론회에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지만, 둘 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대학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이 아닌 이상, 국가·사회적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대학 관계자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의 의의가 크다고 봄
- 정부는 서울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실제 운영과정에서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대학 법인화의 선도모델을 창출할 것임

토 론 문

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이 향 철

I. 국회의 책임 방기와 서울대법인화 추진의 비민주성

박배균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대법인화 법을 끼어 넣어 통과시킨 데 대해 공적 조직의 재정경영 문제를 전공분야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국립대법인화에 다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본 토론자로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에 근대대학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대의 고등교육개혁안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해당 상임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가 뜬금없는 집권여당의 날치기 통과로 결착을 보게 되는 현실을 접하고 한국정치의 현 주소와 국회 그 자체의 존재 의미를 자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토론자는 서울대법인화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전문성을 있지만 대표성이 없는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와 경제적 합리주의 관점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넓게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철저하게 논쟁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랐다.

국립대학 관계자들이 법인화의 반대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학자치의 말살, 고등교육의 공공성 훼손, 국가의 대학재정책임 방기, 교육비부담의 증가, 대학교육의 빈익빈부익 부현상 심화, 기초학문의 배제, 교직원 신분불안정 등을 찬찬히 뜯어보면 법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대 법인화가 비독립영조물인 국립대학에 대한 단순한 법인격 부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대학관리운영체제의 변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있는 국립대학 관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며 법인화 이후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거나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립대법인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립대학 관계자, 나아가 정파간의 대립이 첨예했던 일본의 경우, 중의원(2003년 5월 16일)과 참의원(2003년 7월 8일)에서 국립대학법인법의 통과에 즈음하여 법률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국립대학 관계자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제대로 된 국가에서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회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자료 1. 국립대학법인법의 시행에 즈음한 중의원 교육과학위원회 부대의견

(2003년 5월 16일)

정부 및 관계자는 본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특단의 배려를 해야 한다.

1. 국립대학법인화에 즈음하여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나 대학자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특성에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주적·자율적 운영의 확보에 노력할 것.
1. 국립대학의 운영은 총장, 이사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 등이 각각의 역할·기능을 충분히 다하는 동시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자주적·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또한 교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할 것.
1. 임원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탁월한 식견을 소지하고 당해 대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1. 문부과학대신은 중기계획의 작성 및 중기계획의 인가에 있어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서서 적절하게 실행할 것.
1. 국립대학의 평가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시행함과 동시에 기초적인 학문분야의 계승발전이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 문화, 산업 등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에도 충분히 배려할 것. 또한 중기목표 등의 업적평가와 자원배분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서서 신중한 운용에 노력할 것. 나아가 평가에 관련된 업무가 교직원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국립대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대해 높은 식견을 소지한 자를 선임할 것.
1. 운영비교부금 등의 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동시에, 법인화 이전의 예산투입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운영비교부금 등을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학생납부금은 경제상황에 의해 학생의 진학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금액이 되도록 노력할 것.
1. 정부는 고등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공사립 전체를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충실에 노력할 것. 또한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의 수준 향상과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으로부터 지방대학의 정비, 충실에 노력할 것.
1. 교직원의 신분이 비공무원이 됨에 따른 근무조건 등의 정비에 대해 교육연구의 특성에 배려하여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대학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운용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배려할 것.

자료2. 국립대학법인법의 시행에 즈음한 참의원 문부과학위원회의 부대의견
(2003년 7월 8일)

정부 및 관계자는 국립대학법인화가 일본의 고등교육 준립형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감안하여 본 법률의 시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특단의 배려를 해야 한다.

1. 국립대학법인화에 즈음하여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나 대학자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특성에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주적·자율적 운영의 확보에 노력할 것.
1. 국립대학의 운영은 총장, 이사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 등이 각각의 역할·기능을 충분히 다하는 동시에, 대학 전체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형성에 노력할 것. 또한 교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할 것.

1. 임원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탁월한 식견을 소지하고 당해 대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는 동시에, 선임이유를 공표할 것. 또한 정부나 타 법인 출신의 임원을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도 있게 대응할 것. 감사의 임명은 대학의 의향을 반영할 것.
1. 총장선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현직 총장이 위원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히 운용할 것.
1. 중기계획의 실제 작성주체가 법인임을 감안하여 문부과학대신이 중기목표·중기계획의 원안을 변경했을 경우의 이유 및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의 의견공표 등을 통하여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안의 변경은 재정상의 이유 등 정당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할 것.
1. 국립대학법인에 요구하는 중기계획·중기계획에 관련된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극력 간소화를 도모할 것. 또한 평가에 관련된 업무가 교직원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1. 국립대학의 평가는, 기초적인 학문분야의 계승발전이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 문화, 산업 등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에도 충분히 배려할 것. 또한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대학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률에 명기하고 평가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할 것.
1. 국립대학법인법에 의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와 자원배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운용에 노력하는 동시에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1. 국립대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대해 높은 식견을 소지한 자를 선임할 것. 평가위원회 임원의 이름이나 경력은 물론 회의의 회의록을 공표하는 동시에 회의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것.
1.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을 준용할 때는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및 국립대학법인의 관계에 있어 대학의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립대학법인과 독립행정법인의 차이를 충분히 유의할 것.
1. 운영비교부금 등의 산정은 산정기준 및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공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법인의 규모 등 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산정방법이 되도록 공리할 것. 또한 법인화 이전의 예산투입액을 바탕으로 총래 이상으로 각 국립대학이 교육연구를 확실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요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1. 학생납부금은 경제상황에 의해 학생의 진학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장래에 걸쳐 적정한 금액,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업료 등의 감면제도의 충실, 독자적인 장학금의 창설 등 법인에 의한 학생지원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것.
1. 국립대학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조직은 대학의 기본적 조직의 하나로 학술연구의 중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평가를 엄격히 경계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충실에 노력할 것. 또한 각 연구조직의 설치·개폐 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각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수법의 차이를 충분히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
1. 국립대법인화에 따른 노사관계법규 등에 대한 대응은 법인의 성립 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또한 법인으로의 이행 이후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 고용보험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운영비교부금 등을 통해 확실하

게 조치할 것.

1.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은 진척상황, 과제 등을 명확히 하여 참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 보고할 것.
1.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인증평가제도의 발전을 통해 국립대학 등이 다양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 일본의 대학평가 전체의 신뢰성 향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자금의 확보, 기타 필요한 원조에 노력할 것.
1. 정부는 고등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공사립 전체를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충실에 노력할 것. 또한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의 수준 향상과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지방대학의 정비, 충실에 노력할 것.
1. 교직원의 신분이 비공무원이 됨에 따른 근무조건 등의 정비에 대해 교육연구의 특성에 배려하여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대학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운용에 있어서는 선택적, 한정적 임기제라는 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교육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교원 등의 신분보장에 충분히 유의할 것.
1. 법인으로의 이행에 즈음하여 「양호한 노동관계」라는 관점에서 관계직원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것.
1. 고등교육의 그랜드디자인 검토에 있어 생애학습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전체에 대해 관계부서, 지방공공단체 등과 협조하면서 광범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

II. 서울대 법인화법의 산적한 과제

국립대법인화라는 국가시설형 대학의 설치형태 개혁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화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는 관리운영체제에 자기완결성이 있고 완만하게 결합된 수평적인 인적조직의 특성을 갖는 대학사회와 대학인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에 부합되느냐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대학의 설치형태 개혁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국립대법인화를 개념정리하면 “정부조직의 일부인 대학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부의 중장기 학술정책, 인재육성정책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교육연구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책정하여 학생납부금, 부속병원수입 등의 자기수입과 이와 연계된 재정지원으로 자기책임 아래 대학을 관리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책무성·사회적 설명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대 법인화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제자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짚어본다.

1) 고등교육기관의 기능별 분화 및 사명의 다양화

박성현 교수님께서서는 대학의 역할 변화를 국립대법인화 추진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종래 대학의 기능은 새로운 학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의 전수(교육)에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교육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교양교육, 고도의 전문직업인 양성, 건전한 시민의 직업교육, 특정전문분야의 교육연구, 지역의 생애학습거점, 지역공헌 및 산학협력 등 사회공헌의 전당 등으로 그 기능이 분화되고 사명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설치형태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립대법인화로 상징되는 대학설치형태 및 관리운영체제의 개혁은 대학-국가-사회 관계의 재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고등교육의 대중화, 정보화, 시장화, 세계화라는 미증유의 환경변화와 지식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극단적 확대에 따라 지금까지 사회를 미성숙한 것으로 치부하고 국가가 사회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대학을 지도육성해오던 독점적인 매개기능이 판탄한 데에 다른 정책적 처방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법은 이러한 사회의 성숙과 교육수요의 증대와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기능별 분화 및 사명의 다양화라는 관점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

2) 법인화 이후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가의 “고등교육위임” 계약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은 형식적으로 국가의 독점적인 사업인 고등교육을 위임받은 공익단체로서 법률적 계약의 성격을 지닌 법인계획을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정지원을 받는 형태가 된다. 그것은 국가의 중장기 학술정책과 인재육성정책에 입각하여 서울대학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책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청사진이 전

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재정재무지원체제의 미비

서울대학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게 되면 다른 정부조직의 예산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세분화된 정책목적에 따라 적산되는 종래의 항목별 예산(line-item budgets)으로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재정지원의 성격이 정부조직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출에서 국가로부터 교육연구기능을 위임받은 공익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금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예산지원규모를 토대로 학문분야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가를 역산하고 여기에 학생수를 곱하고 매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포물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4) 하나의 국가로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

그 외에 새로이 출범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의 전도에는 교육연구·관리운영 등에 대한 평가체제 미비, 목표관리·경영체제의 미구축, 서울대학 부속병원 문제의 방치, 내부조직의 재구축, 리스크관리체제의 미비 등 문제가 산적하고 있어 스스로 하나의 국가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Ⅲ. 발제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들

1) 박성현 교수님 : 독일대학은 공법상 단체라는 영조물법인이며, 1998년 8월 고등교육기본법(HRG)의 개정에 의해 “공법상 단체이며 국가기구” 외에 “다른 법적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대학이 “재단형 대학”으로 전환한 사례는 법인화라는 표현보다는 비국유화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사회지배구조는 현재로는 내부자가 많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외부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외부자 혼합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장선출방식은 사전의향조사의 형태로 기존의 총장직선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굳이 말하자면 총장은 총장선고회의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분야와 수준별로 자체평가, 정부평가, 교육연구평가, 제3자인증평가로 분화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박배균 교수님 : 법인화 이후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대학의 예산은 조금씩 증가해 오고 있다. 기간적 교육연구비를 제외한 교육연구비 등을 매년 1% 효율화 대상으로 삼고 부속병원수입을 매년 2% 경영개선대상으로 삼아 비용을 삭감하는 대신에 경쟁적, 차별적 지원예산이 특별연구경비를 두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자금 획득을 수입사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표현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외

부자금의 거의 대부분은 과학연구비, 21세기 COE(세계최고수준 연구거점지원프로그램) 자금, GP(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 프로그램)자금과 같은 정부자금이고 나머지는 기업공동연구, 수탁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끝으로 법인화 이후 2-3년 사이에 등록금이 5배까지 폭등했다는 지적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 일본국립대학법인의 재정재무체제에 대한 정보 내지 지식 부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믿고 싶다.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수업료(등록금)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대학별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고 표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만큼 정부의 운영비교부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대학은 무리해서 올릴 이유가 없다. 참고로 법인화 이행 이후 처음으로 수업료를 책정한 2005년도에 정부가 제시한 표준액은 연간 53만 5,800엔이며 이는 2010년까지 변함이 없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도 전국의 86개 국립대학 가운데 81개 대학이 표준액과 같은 액수의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고 나머지 5개 대학이 표준액보다 1만 5000엔 낮은 52만 800엔을 징수하고 있다.